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최성민 예산분석관  
김윤성 예산분석관  
김용오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지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최보경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 기획재정위원회 】

2022. 10.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증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0

#### II. 주요 현안 분석

-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적용 필요 ..... 17
- 2.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용도 전출금 편성 개선 필요 ... 25
- 3.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현 회계연도 집행내역 제출 필요 ..... 30
- 4.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자금 확보 적정성 검토 필요 ..... 36
- 5.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 예산 감액 필요 ..... 44

#### III. 개별 사업 분석

- 1. 기후대응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7%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 52
-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획재정부)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 57



# CONTENTS

|   |     |
|---|-----|
| 3.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출연금 조정 검토 필요 .....  | 61  |
| 4.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예산 조정 필요 .....  | 65  |
| 5. 국유재산관리기금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 공사비 등 조정 검토 필요 ..                             | 67  |
| 6.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출연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 71  |
| 7.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증액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 75  |
| 8.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고려한<br>조정 검토 필요 .....                 | 80  |
| 9.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 증액 검토 필요 .....  | 84  |
| 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세종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 증액<br>검토 필요 .....                    | 89  |
| 11.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 중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규모의<br>적정성 검토 필요 .....               | 93  |
| 12. 공공자금관리기금 장애인자립자금 용자사업 집행 관리필요 .....                                 | 97  |
| 13. 기후대응기금(금융위)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자금 인출 스케줄<br>고려한 계획안 감액 검토 필요 .....       | 100 |
| 14. 기후대응기금(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의<br>실효성 제고 필요 .....                  | 107 |
| 15. 기후대응기금(산업부)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의 점진적 사업<br>확대 필요 .....                   | 115 |
| 16. 기후대응기금(산업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의<br>수소버스에 대한 이중보조 등 적절성 검토 필요 ..... | 120 |



# CONTENTS

|  |     |
|--|-----|
| 17. 기후대응기금(중기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설계공사일정<br>고려한 계획액 조정 필요 .....          | 125 |
| 18. 기후대응기금(고용부)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저조한 수요를 감안하여<br>예산 감액 필요 .....            | 129 |
| 19. 기후대응기금(환경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효과성<br>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등 ..... | 133 |
| 20. 기후대응기금(환경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투자여력을 고려하여<br>확대된 펀드 조성 규모 검토 필요 .....    | 145 |
| 21. 기후대응기금(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br>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 149 |
| 22. 기후대응기금(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예산 규모 및<br>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 156 |

## [국세청]

### 1. 예산안 개요

|                         |     |
|-------------------------|-----|
| 1. 현 황 .....            | 163 |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 164 |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 165 |

## II. 주요 현안 분석

1. 세제 도입·시행 관련 법률의 개정 추이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 필요 .. 166

## III. 개별 사업 분석

1. 청원심의회 개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70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 ..... 174
3. 청사 재건축 공사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 필요 ..... 180

## [관세청]

###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 187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8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189

## II. 주요 현안 분석

1. 드론 운용대수 감축을 통한 관련 비용 절감 필요 ..... 191

### Ⅲ. 개별 사업 분석

1. 통합검사장 완공 지연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감액 필요 ..... 197
2. 모바일 신고대 도입 지연에 따른 유지보수비 일부 감액 필요 ..... 200

### [조달청]

#### Ⅰ. 예산안 개요

1. 현 황 ..... 20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10

#### Ⅱ. 주요 현안 분석

1.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확대 필요 ..... 212
  - 1-1. 비축물자 사업수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 필요 ..... 212
  - 1-2. 당초 예산편성 목적인 요소수 구매 외 사용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 215

#### Ⅲ. 개별 사업 분석

1.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19
2. 배상금 예산의 적정 수준 편성 필요 ..... 223

## [통계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23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32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33

### II. 개별 사업 분석

- 1.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234
-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의 연례적 과소 계상 문제 ..... 240



기획재정부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5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05조 8,557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8,553억원(0.2%)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92조 6,62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 2,151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5,421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9,34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2,739억원, 복권기금 6조 8,274억원, 기후대응기금 4,009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341,299,835 | 341,648,220        | 397,185,125 | 395,877,239    | △1,307,886 | △0.3    |
| - 일반회계       | 338,626,457 | 337,910,820        | 393,447,725 | 392,662,139    | △785,586   | △0.2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673,378   | 3,737,400          | 3,737,400   | 3,215,100      | △522,300   | △14.0   |
| 기 금          | 9,058,157   | 9,525,912          | 9,525,912   | 9,978,482      | 452,570    | 4.8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1,497,881   | 686,371            | 686,371     | 542,143        | △144,228   | △21.0   |
| - 국유재산관리기금   | 1,311,757   | 1,345,158          | 1,345,158   | 1,934,161      | 589,003    | 43.8    |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4,770     | 265,708            | 265,708     | 273,925        | 8,217      | 3.1     |
| - 복권기금       | 6,023,749   | 6,498,091          | 6,498,091   | 6,827,357      | 329,266    | 5.1     |
| - 기후대응기금     | -           | 730,584            | 730,584     | 400,896        | △329,688   | △45.1   |
| 합 계          | 350,357,991 | 351,174,132        | 406,711,037 | 405,855,721    | △855,316   | △0.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4조 9,72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조 444억원(13.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7,68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9조 2,283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 531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5,585억원, 복권기금 4조 9,322억원, 기후대응기금 2조 4,317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 산        | 2,154,770  | 4,503,689          | 6,100,237  | 5,768,640      | △331,597  | △5.4    |
| - 일반회계     | 2,153,770  | 4,503,689          | 6,100,237  | 5,768,640      | △331,597  | △5.4    |
| 기 금        | 21,929,832 | 30,162,265         | 29,868,722 | 34,809,958     | 4,941,236 | 16.5    |
| - 공공자금관리기금 | 15,346,050 | 15,687,474         | 15,687,474 | 19,228,295     | 3,540,821 | 22.6    |
| - 국유재산관리기금 | 932,338    | 1,037,153          | 926,277    | 1,053,145      | 126,868   | 13.7    |
| - 대외경제협력기금 | 1,260,941  | 1,384,415          | 1,281,548  | 1,558,472      | 276,924   | 21.6    |
| - 복권기금     | 4,390,503  | 4,656,026          | 4,671,026  | 4,932,161      | 261,135   | 5.6     |
| - 기후대응기금   | -          | 2,356,173          | 2,261,373  | 2,431,666      | 170,293   | 7.5     |
| 합 계        | 24,083,602 | 29,624,930         | 30,927,935 | 34,972,379     | 4,044,444 | 13.1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 나.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450조 9,32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7조 8,478억원(10.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8조 8,676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조 648억원이다.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430,070,250 | 414,252,797        | 488,069,251 | 438,867,603    | △49,201,648 | △11.2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9,585,547   | 10,678,993         | 10,710,887  | 12,064,764     | 1,353,877   | 11.2    |
| 합 계        | 439,655,797 | 424,931,790        | 498,780,138 | 450,932,367    | △47,847,771 | △10.6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8조 6,07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5,790억원(5.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조 4,23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40억원이다.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17,811,140 | 22,794,029         | 26,473,108 | 28,423,247     | 1,950,139 | 7.4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97,372    | 555,112            | 555,112    | 184,008        | △371,104  | △66.9   |
| 합 계        | 18,108,512 | 23,349,141         | 27,028,220 | 28,607,255     | 1,579,035 | 5.8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다.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후대응기금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36조 2,673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67조 8,187억원(18.4%)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284조 3,145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조 5,81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6,211억원, 복권기금 7조 8,194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701억원, 외국환평형기금 136조 6,745억원, 기후대응기금 2조 4,867억원이다.

[2022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공공자금관리기금   | 268,255,257 | 243,342,438        | 267,769,966 | 284,314,457    | 16,544,491 | 6.2     |
| 국유재산관리기금   | 1,659,711   | 1,937,532          | 1,941,183   | 2,580,994      | 639,811    | 33.0    |
| 대외경제협력기금   | 1,312,603   | 1,450,241          | 1,347,374   | 1,621,131      | 273,757    | 20.3    |
| 복권기금       | 7,194,146   | 7,756,434          | 7,756,434   | 7,819,352      | 62,918     | 0.8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744,348     | 691,700            | 691,700     | 770,138        | 78,438     | 11.3    |
| 외국환평형기금    | 91,421,817  | 86,577,267         | 86,577,267  | 136,674,466    | 50,097,199 | 57.9    |
| 기후대응기금     | -           | 2,459,423          | 2,364,623   | 2,486,723      | 122,100    | 5.2     |
| 합 계        | 370,587,882 | 344,215,035        | 368,448,547 | 436,267,261    | 67,818,714 | 18.4    |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6조 368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9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8,873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100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2,223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14조 4,891억원을 상환하며,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으로부터 1,988억원을 전입받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2조 6,022억원을 전입받는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46조 66억원, 외국환평형기금으로 55조 3,019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4,171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2,726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13조 8,917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 2조 2,410억원을 예탁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4,516억원, 복권기금으로 3,037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4조 4,529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 7조 5,972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282억원, 복권기금으로 34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2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6,324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 1,999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복권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910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조 463억원을 각각 전출하고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609억원의 전입을 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835억원을 예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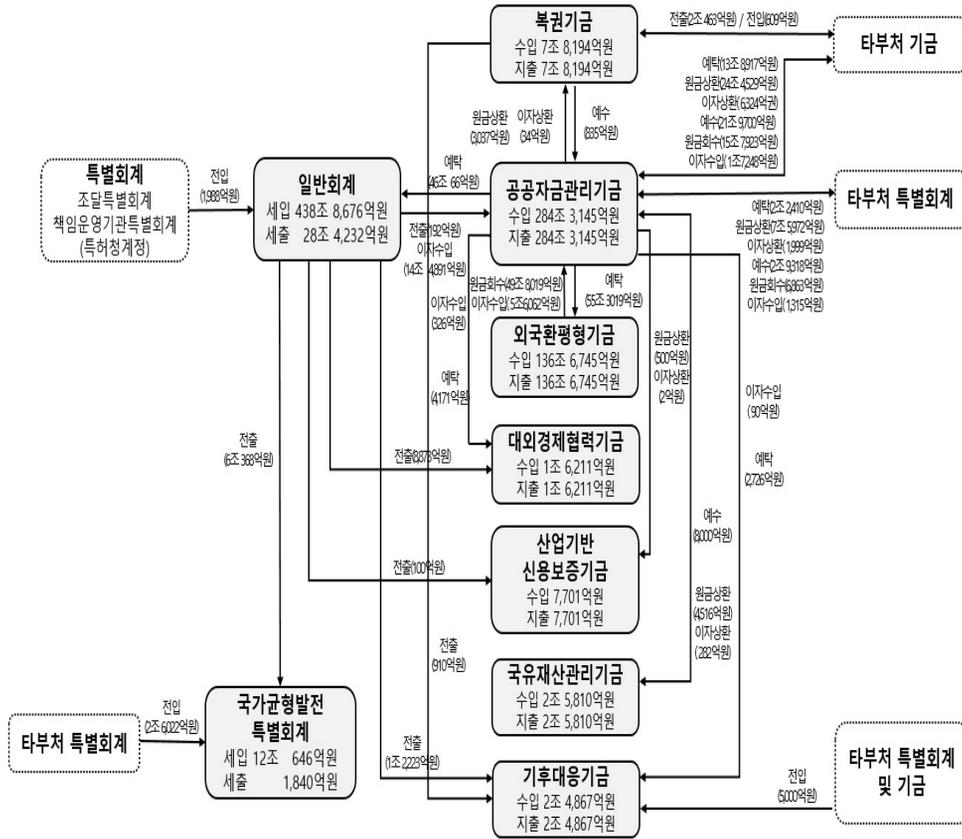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49조 8,019억원을, 예수이자 5조 6,062억원을 상환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326억원을 상환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8,000억원을 예탁한다.

기후대응기금은 타부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5,000억원을 전입 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90억원을 상환한다.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재정구조도]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제2회 추경 대비 47조 8,478억원(10.6%) 감소하였고(2022년 제2회 추경 498조 7,801억원 → 2023년 450조 9,324억원), ②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4,867억원으로 전년 제2회 추경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3,474억원으로 전년 제2회 추경 대비 2,738억원(20.3%) 증가하였고, ④ 예비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000억원(33.3%) 증액되고 제2회 추경 대비 3,000억원(5.5%)이 감액된 5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21년 및 2022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각각 75.0%, 87.5%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적용을 통해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규모와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2020~202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예비비 예산은 편성·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현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2021회계연도에 집행이 부진했던 내역사업이 2023년도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차관 등 구체적 용도가 미정인 차관 예산이 1,12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 및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37개 사업, 2,26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팬데믹 대응기금 지원(ODA)은 세계은행에 설치 추진 중인 팬데믹 대응기금에 총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운영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지원을 위해 2022년 3월 신설된 공급망기획단의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에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는 정부 부처 관련 청사 등의 신축 및 재건축을 위한 17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하여 17개의 세부사업이 신설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일반회계<br>(2개)          | 팬데믹 대응기금 지원(ODA)   | 12,900 |
|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운영       | 95     |
| 복권기금<br>(1개)          | 기후대응기금 전출          | 90,975 |
| 국유재산<br>관리기금<br>(17개) | 대법원 청주지법 총주지원 신축   | 1,278  |
|                       |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 49,746 |
|                       |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  | 2,462  |
|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 1,610  |
|                       |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신축      | 779    |
|                       | 국세청 김해세무서 청사 재건축   | 826    |
|                       | 국세청 북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 815    |
|                       | 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 412    |
|                       | 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 699    |
|                       | 경찰청 종합교육훈련센터 신축    | 260    |
|                       | 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 신축     | 475    |
|                       | 경찰청 부산동부경찰서 신축     | 289    |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 경찰청 경남 남해경찰서 신축                 | 313    |
|                 | 경찰청 강원청 수사동 신축                  | 246    |
|                 | 경찰청 경기남부청 사건기록관 신축              | 198    |
|                 |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 1,280  |
|                 | 소방청 소방심신수련원 신축                  | 1,252  |
| 기후대응기금<br>(17개)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재부)                | 2,500  |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산업부)                | 6,350  |
|                 |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 2,200  |
|                 |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4,500  |
|                 | 수소연료전지시스템구매지원시범사업               | 7,000  |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 10,350 |
|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설치사업          | 1,000  |
|                 | 탄소저장물 생산지원                      | 500    |
|                 |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 1,600  |
|                 | 고용상태영향조사                        | 470    |
|                 |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R&D)         | 3,400  |
|                 | 탄소중립 수송부문 감축전략 고도화 기술개발(R&D)    | 4,000  |
|                 | 수소전기 기반 소방자동차 동력전달 모듈 개발        | 500    |
|                 | 사업재편탄소중립기술개발(R&D)               | 5,250  |
|                 | 해양CCS중규모실증을위한 해양환경              | 3,000  |
|                 | 평가·감시체계및기반기술개발(R&D)             | 6,004  |
|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D) | 876    |
| 합 계             | 226,410                         |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 사업(일반회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복권기금), 국고채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경찰청 거제 경찰서 신축(국유재산관리기금),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기후대응기금) 등이 있다.

①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 사업은 내년 5월 총회 개최를 앞두고 행사기획, 개최 용역비 등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홍보비를 중심으로 반영되었던 '22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이 확대(의료비 부담 기준 하향 15→10%, 재산기준 완화 5.4→7억원 이하 등)됨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③ 국고채이자상환은 '23년도 신규 발행분에 대한 편성금리 상승(4.0%, +1.4%p)으로 '22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다.

④ 경찰청 거제경찰서 신축은 '23년 이후 토지보상 절차 등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건설보상비 반영 등의 사유로 '22년 대비 증액되었고, ⑤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은 '23년부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Post-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신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2년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 반영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r>(B) | 증 감       |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 일반<br>회계<br>(9개)             | 소비자물가관리                  | 782                | 782        | 1,035              | 253       | 32.4    |      |
|                              |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수립       | 115                | 115        | 305                | 190       | 165.2   |      |
|                              | 경제구조개혁전략 기획<br>및 이행기반 구축 | 493                | 477        | 656                | 179       | 37.5    |      |
|                              | ADB 연차총회 준비 및 개최 사업      | 310                | 310        | 8,633              | 8,323     | 2,684.8 |      |
|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 27,438             | 27,438     | 42,905             | 15,467    | 56.4    |      |
|                              | 경제협력기구활동                 | 229                | 229        | 409                | 180       | 78.6    |      |
|                              | 총액인건비 대상<br>기본경비(재정관리국)  | 88                 | 88         | 149                | 61        | 69.3    |      |
|                              | 총액인건비 비대상<br>기본경비(재정관리국) | 609                | 597        | 816                | 219       | 36.7    |      |
|                              | 경제교육지원                   | 3,521              | 3,521      | 6,177              | 2,656     | 75.4    |      |
|                              | 복권<br>기금<br>(4개)         | 기금관리비              | 1,077      | 1,077              | 1,999     | 922     | 85.6 |
|                              | 복권사업비                    | 3,788,501          | 3,788,501  | 4,003,172          | 214,671   | 5.7     |      |
| 지방자치단체지원                     | 152,750                  | 152,750            | 176,062    | 23,312             | 15.3      |         |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39,975                   | 39,975             | 56,754     | 16,779             | 42.0      |         |      |
| 공공자금<br>관리기금<br>(1개)         | 국고채이자상환                  | 20,707,047         | 20,707,047 | 24,813,349         | 4,106,302 | 19.8    |      |
| 대외<br>경제<br>협력<br>기금<br>(5개) | 아시아차관(용자)(ODA)           | 639,379            | 604,699    | 705,400            | 100,701   | 16.7    |      |
|                              | 아프리카차관(용자)(ODA)          | 319,980            | 277,621    | 304,852            | 27,231    | 9.8     |      |
|                              | 중동-CIS차관(용자)(ODA)        | 79,531             | 56,219     | 131,972            | 75,753    | 134.7   |      |
|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용자)(ODA)     | 247,362            | 247,362    | 324,356            | 76,994    | 31.1    |      |
|                              | 사업심사평가연구(ODA)            | 3,263              | 3,263      | 4,342              | 1,079     | 33.1    |      |
| 외국환<br>평형기금<br>(1개)          | 국공채 이자상환                 | 292,434            | 292,434    | 380,859            | 88,425    | 30.2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r>(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국유<br>재산<br>관리<br>기금<br>(60개) | 대법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 8,802              | 5,802  | 21,050             | 15,248 | 262.8   |
|                               | 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 2,769              | 2,769  | 7,277              | 4,508  | 162.8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         | 9,442              | 9,442  | 15,490             | 6,048  | 64.1    |
|                               | 감사원 제1별관 재건축              | 1,229              | 1,229  | 9,459              | 8,230  | 669.7   |
|                               | 대통령경호처 기타시설 신축            | 1,126              | 1,107  | 5,437              | 4,330  | 391.1   |
|                               |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 301                | 320    | 1,914              | 1,594  | 498.1   |
|                               |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 6,838              | 6,838  | 11,586             | 4,748  | 69.4    |
|                               | 법무부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 674                | 674    | 1,176              | 502    | 74.5    |
|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 4,282              | 282    | 7,691              | 7,409  | 2,627.3 |
|                               | 법무부 전주지검남원지청신축            | 559                | 559    | 2,609              | 2,050  | 366.7   |
|                               |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            | 8,802              | 8,802  | 16,936             | 8,134  | 92.4    |
|                               | 법무부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 11,477             | 1,377  | 3,360              | 1,983  | 144.0   |
|                               |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증축             | 1,030              | 1,030  | 4,005              | 2,975  | 288.8   |
|                               | 법무부 기타 교정시설 취득            | 4,884              | 4,884  | 8,093              | 3,209  | 65.7    |
|                               | 법무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 1,107              | 1,107  | 1,720              | 613    | 55.4    |
|                               | 법무부 춘천소년원 재건축             | 3,918              | 3,918  | 7,639              | 3,721  | 95.0    |
|                               |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 1,130              | 1,130  | 5,803              | 4,673  | 413.5   |
|                               |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br>생활관 신축 | 14,094             | 7,094  | 24,446             | 17,352 | 244.6   |
|                               | 법무부 태백교정시설 신축             | 400                | 400    | 4,525              | 4,125  | 1,031.3 |
|                               | 법무부 남원교도소 신축              | 1,177              | 1,177  | 2,036              | 859    | 73.0    |
|                               |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 6,344              | 6,344  | 10,882             | 4,538  | 71.5    |
|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 민원동 신축         | 8,008              | 8,008  | 14,565             | 6,557  | 81.9    |
|                               |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              | 260                | 260    | 657                | 397    | 152.7   |
|                               | 국민소통광장(민원동) 증축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          | 197                | 197    | 2,165              | 1,968  | 999.0   |
|                               |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신축           | 2,141              | 2,141  | 3,495              | 1,354  | 63.2    |
|                               |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 826                | 826    | 1,625              | 799    | 96.7    |
|                               |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               | 26,227             | 22,227 | 57,862             | 35,635 | 160.3   |
|                               | 통계청 기타시설 취득               | 2,945              | 2,945  | 4,661              | 1,716  | 58.3    |
|                               |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 382                | 382    | 3,409              | 3,027  | 792.4   |
|                               | 경찰청 인천남동 경찰서 신축           | 3,842              | 3,842  | 5,188              | 1,346  | 35.0    |
|                               |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청사시설 취득       | 1,195              | 1,195  | 4,287              | 3,092  | 258.7   |
|                               |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 2,481              | 2,481  | 7,706              | 5,225  | 210.6   |
|                               | 경찰청 별관동 증축                | 1,386              | 1,386  | 3,821              | 2,435  | 175.7   |
|                               |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              | 1,000              | 1,000  | 8,671              | 7,671  | 767.1   |
|                               | 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신축            | 4,233              | 4,233  | 6,203              | 1,970  | 46.5    |
|                               |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              | 115                | 115    | 839                | 724    | 629.6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r>(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        | 423                | 423     | 815                | 392    | 92.7    |
|                         | 경찰청 거제경찰서 신축        | 368                | 368     | 7,185              | 6,817  | 1,852.4 |
|                         | 경찰청 울릉경찰서 이전신축      | 455                | 455     | 2,464              | 2,009  | 441.5   |
|                         | 경찰청 충북 제천경찰서 재건축    | 321                | 321     | 826                | 505    | 157.3   |
|                         | 경찰청 광주 중부경찰서 신설 신축  | 1,000              | 1,000   | 3,000              | 2,000  | 200.0   |
|                         | 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신축      | 1,444              | 1,444   | 12,622             | 11,178 | 774.1   |
|                         | 경찰청 여주경찰서 신축        | 7,997              | 4,897   | 7,775              | 2,878  | 58.8    |
|                         | 경찰청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 197                | 197     | 1,552              | 1,355  | 687.8   |
|                         | 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 304                | 304     | 573                | 269    | 88.5    |
|                         |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 2,340              | 2,340   | 13,261             | 10,921 | 466.7   |
|                         | DMZ 산림항공관리소 신설      | 3,985              | 3,985   | 8,151              | 4,166  | 104.5   |
|                         |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         | 3,817              | 3,817   | 11,643             | 7,826  | 205.0   |
|                         | 소방청 기타청사시설 취득       | 3,042              | 3,042   | 5,438              | 2,396  | 78.8    |
|                         |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 557                | 557     | 1,166              | 609    | 109.3   |
|                         |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 2,536              | 2,536   | 3,349              | 813    | 32.1    |
|                         | 해양경찰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    | 2,006              | 2,006   | 3,014              | 1,008  | 50.2    |
|                         | 해양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 2,257              | 2,257   | 4,906              | 2,649  | 117.4   |
|                         |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 1,961              | 1,961   | 4,836              | 2,875  | 146.6   |
|                         | 수원 통합청사 신축          | 4,800              | 4,800   | 7,816              | 3,016  | 62.8    |
|                         | 천안통합청사 신축           | 344                | 344     | 1,363              | 1,019  | 296.2   |
|                         | 대전통합청사 신축           | 5,998              | 2,498   | 19,222             | 16,724 | 669.5   |
|                         | 관악복합관사 신축           | 412                | 412     | 1,004              | 592    | 143.7   |
|                         | 정책연수원 신축            | 1,842              | 5,655   | 19,260             | 13,605 | 240.6   |
| 기후<br>대응<br>기금<br>(48개) |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 6,000              | 6,000   | 11,700             | 5,700  | 95.0    |
|                         | 기후변화협약대응            | 12,114             | 12,114  | 16,112             | 3,998  | 33.0    |
|                         |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 43,000             | 43,000  | 61,400             | 18,400 | 42.8    |
|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1,000              | 1,000   | 1,800              | 800    | 80.0    |
|                         |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 122,050            | 122,050 | 161,655            | 39,605 | 32.4    |
|                         | 스마트생태공장구축           | 60,600             | 60,600  | 90,900             | 30,300 | 50.0    |
|                         |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 3,176              | 3,176   | 5,215              | 2,039  | 64.2    |
|                         | 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     | 200                | 200     | 5,000              | 4,800  | 2,400.0 |
|                         | 국립공원탄소흡수원구축         | 3,500              | 3,500   | 4,930              | 1,430  | 40.9    |
|                         | 산림특성화대형원지원을 통한 탄소양성 | 150                | 150     | 450                | 300    | 200.0   |
|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 15,500             | 15,500  | 29,503             | 14,003 | 90.3    |
|                         |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 150,000            | 91,200  | 147,000            | 55,800 | 61.2    |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20,000             | 20,000  | 45,000             | 25,000 | 125.0   |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 14,250             | 14,250  | 24,250             | 10,000 | 70.2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r>(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 친환경설비투자                            | 50,000             | 50,000 | 100,000            | 50,000 | 100.0   |
|    |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 3,992              | 3,992  | 11,892             | 7,900  | 197.9   |
|    |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 36,500             | 500    | 37,132             | 36,632 | 7,326.4 |
|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 32,786             | 32,786 | 45,547             | 12,761 | 38.9    |
|    | 친환경소비생활및저탄소<br>생산기반구축지원            | 15,096             | 15,096 | 23,988             | 8,892  | 58.9    |
|    | CCU3050(R&D)                       | 9,000              | 9,000  | 13,000             | 4,000  | 44.4    |
|    |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br>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 2,000              | 2,000  | 4,000              | 2,000  | 100.0   |
|    | DNA활용탄소중립에너지<br>효율화핵심기술개발(R&D)     | 6,000              | 6,000  | 10,100             | 4,100  | 68.3    |
|    | RE100기반의수소시범단지<br>인프라기술개발(R&D)     | 3,442              | 3,442  | 7,125              | 3,683  | 107.0   |
|    | 공기액화기반에너지저장 및<br>활용시스템기술개발(R&D)    | 3,000              | 3,000  | 4,875              | 1,875  | 62.5    |
|    |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br>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    | 5,734              | 5,734  | 8,000              | 2,266  | 39.5    |
|    | 반도체디스플레이온실가스<br>감축공정기술개발(R&D)      | 2,162              | 2,162  | 2,882              | 720    | 33.3    |
|    | 탄소저감형중대형이차전지<br>혁신제조기술개발(R&D)      | 3,600              | 3,600  | 6,050              | 2,450  | 68.1    |
|    | 산업연계형저탄소공정전환<br>핵심기술개발(R&D)        | 3,291              | 3,291  | 4,848              | 1,557  | 47.3    |
|    | 탄소저감모델연계디지털<br>엔지니어링설계기술개발(R&D)    | 5,345              | 5,345  | 11,700             | 6,355  | 118.9   |
|    | 재생자원의저탄소산업<br>원료화기술개발(R&D)         | 4,285              | 4,285  | 6,500              | 2,215  | 51.7    |
|    |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br>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 3,663              | 3,663  | 5,672              | 2,009  | 54.8    |
|    | 저열화성노후전력기자재재<br>제조기술개발(R&D)        | 3,425              | 3,425  | 4,965              | 1,540  | 45.0    |
|    | EV, ESS사용후배터리응용<br>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 2,612              | 2,612  | 4,629              | 2,017  | 77.2    |
|    |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br>자원화기술개발(R&D)         | 3,391              | 3,391  | 6,087              | 2,696  | 79.5    |
|    | 저탄소고부가전극재<br>제조혁신기술개발(R&D)         | 2,765              | 2,765  | 4,806              | 2,041  | 73.8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r>(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R&D)               | 3,840              | 3,840  | 6,875              | 3,035  | 79.0    |
|    | 창업성장기술개발(R&D)                  | 15,613             | 15,613 | 20,325             | 4,712  | 30.2    |
|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 5,000              | 5,000  | 8,333              | 3,333  | 66.7    |
|    | 중소기업 Net-Zero<br>기술혁신개발사업(R&D) | 7,000              | 7,000  | 10,294             | 3,294  | 47.1    |
|    | 블루카본기반기후변화적응형<br>해안조성기술개발(R&D) | 5,800              | 5,800  | 11,220             | 5,420  | 93.4    |
|    | 신기후체제대응<br>환경기술개발사업(R&D)       | 10,435             | 10,435 | 13,786             | 3,351  | 32.1    |
|    | 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br>기술개발사업(R&D)   | 5,200              | 5,200  | 7,650              | 2,450  | 47.1    |
|    | 폐자원활용에너지전환<br>실증기술개발사업(R&D)    | 3,600              | 3,600  | 6,300              | 2,700  | 75.0    |
|    | 건물수송부문배출권<br>거래제외부사업           | 900                | 900    | 1,275              | 375    | 41.7    |
|    | 목표관리제(교통)                      | 230                | 230    | 530                | 300    | 130.4   |
|    |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 3,948              | 3,948  | 21,815             | 17,867 | 452.6   |
|    | 인건비                            | 1,312              | 1,312  | 1,926              | 614    | 46.8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적용 필요

가. 현 황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sup>1)</sup> 사업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등 조세지출예산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700만원(△4.7%)이 감액된 15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 1,878      | 1,654              | 1,654 | 1,577          | △77 | △4.7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국세감면액을 의미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sup>3)</sup>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131-30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1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57조 248억원의 실적을 보였고, 국세감면율은 13.5%를 기록하였다. 또한 2022년(제2회 추경예산 기준)과 2023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각각 63조 5,776억원, 69조 3,155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각각 13.1%, 13.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추이(2021~2023)]

(단위: 억원, %)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국세감면액 (A)                | 570,248   | 100.0 | 635,776                 | 100.0 | 693,155                 | 100.0 |
| ·소득법상 조세지출                | 303,535   | 53.2  | 350,815                 | 55.1  | 387,718                 | 55.8  |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 250,188   | 43.9  | 281,382                 | 44.3  | 302,802                 | 43.8  |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 16,526    | 2.9   | 3,579                   | 0.6   | 2,635                   | 0.4   |
| ◦국세수입총액 <sup>1)</sup> (B) | 3,639,730 |       | 4,212,889 <sup>2)</sup> |       | 4,286,370 <sup>2)</sup> |       |
| ◦국세감면율 [A/(A+B)] (①)      | 13.5      |       | 13.1                    |       | 13.9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sup>3)</sup> | 14.3      |       | 14.6                    |       | 14.3                    |       |

주: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월), 2023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주요 증가항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전년 대비 9,911억원(16.7%),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이 전년 대비 7,557억원(16.8%),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이 전년 대비 1,104억원(22.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주요 증가 항목]

(단위: 억원, %)

| 항목                                  | 2022년<br>(실적) | 2023<br>(전망) | 증감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 59,392        | 69,303       | 9,911 | 16.7 |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 44,895        | 52,452       | 7,557 | 16.8 |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 4,937         | 6,041        | 1,104 | 22.4 |

자료: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나. 분석의견

2021년 및 2022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각각 75.0%, 87.5%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적용을 통해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규모와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조세지출규모는 2018년 43조 9,533억원, 2019년 49조 5,700억원, 2020년 52조 9,357억원, 2021년 57조 248억원, 2022년(전망) 63조 5,776억원, 2023년(전망) 69조 3,1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 2019년 13.9%, 2020년 14.8%, 2021년 13.5%,<sup>4)</sup> 2022년(전망) 13.1%로 2020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13.9%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 2021년 국세감면율이 2020년보다 크게(1.3%p)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국세 수입총액에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정확한 국세감면율을 산출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의견(‘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2020.5.26.)을 반영하여 2020년 6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국세 수입총액에 지방소비세액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 기준보다 국세 수입총액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2018년 이후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수입액 실적과 전망치]

(단위: 억원, %)

| 구 분    | 2018<br>실적 | 2019<br>실적 | 2020<br>실적 | 2021<br>실적 | 2022<br>전망 <sup>1)</sup> | 2023<br>전망 |
|--------|------------|------------|------------|------------|--------------------------|------------|
| 조세지출규모 | 439,533    | 495,700    | 529,357    | 570,248    | 635,776                  | 693,155    |
| 국세수입액  | 2,935,704  | 3,066,963  | 3,036,717  | 3,639,730  | 4,212,889                | 4,286,370  |
| 국세감면율  | 13.0       | 13.9       | 14.8       | 13.5       | 13.1                     | 13.9       |
| 법정상한   | 14.0       | 13.3       | 13.6       | 14.3       | 14.6                     | 14.3       |

주: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규모 증가 및 국세감면율 상승은 총수입 증가폭을 줄여 재정수지 적자 확대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로 귀결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채무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134.8조원(GDP 대비 49.8%)로 전망되며, 국가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55.7%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63.6%로 전망된다.

[2018년 이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br>예산        | 2023<br>예산안       |
|-----------------------|-----------------|-----------------|-----------------|-----------------|-------------------|-------------------|
| 통합재정수지                | 31.2            | △12.0           | △71.2           | △90.3           | △70.4             | △13.1             |
| 관리재정수지                | △10.3           | △54.4           | △112.0          | △126.6          | △110.8            | △58.2             |
| 국가채무<br>(GDP 대비 %)    | 680.5<br>(35.9) | 723.2<br>(37.7) | 846.6<br>(43.8) | 967.2<br>(47.0) | 1,068.8<br>(49.7) | 1,134.8<br>(49.8) |
| 적자성 채무<br>(국가채무 중 비율) | 379.2<br>(55.7) | 407.6<br>(56.4) | 512.7<br>(60.6) | 594.1<br>(61.4) | 678.2<br>(63.5)   | 721.5<br>(63.6)   |

주: 2018~2021년 수치는 결산 기준, 2022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02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감면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제5항<sup>5)</sup>에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5)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의 지속 여부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특례 신설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건의 조세특례 신설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3건이 조세특례 신설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0~2022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 연도   | 과제명                                   | 수행기관 | 평가기간          | 평가결과     |
|------|---------------------------------------|------|---------------|----------|
| 2020 |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조세연  | '20.2.~'20.9. | 타당성 낮음   |
| 2020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KDI  | '20.2.~'20.9. | 타당성 낮음   |
| 2020 |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 KDI  | '20.2.~'20.9. | 일부 도입 타당 |
| 2021 |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방안                       | 조세연  | '21.2.~'21.9. | 도입 타당    |
| 2022 | 선박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KDI  | '22.1.~'22.9. | 타당성 낮음   |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 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현황을 보면,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인 반면,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건수는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7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건수가 실시건수보다 많았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비율이 각각 75.0%, 87.5%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2018년 이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및 면제 현황]

(단위: 건, %)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예비타당성평가대상(A)  | 10             | 5    | 5    | 4    | 8    |
|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 1              | 2    | 3    | 1    | 1    |
| 예비타당성평가 면제(B) | 9              | 3    | 2    | 3    | 7    |
| 면제사유          | 법 제142조제5항 제1호 |      |      |      |      |
| 면제 비율(B/A)    | 90.0           | 60.0 | 40.0 | 75.0 | 87.5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규정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는 i)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제1호), ii)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제2호), iii)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3호), iv)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제4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면제사유 중 제1호는 제2호·제3호·제4호와 비교할 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라고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1호에 따른 면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8년 이후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건은 모두 제1호가 적용되었다.

2022년 면제된 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는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각 신속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였으나, 노후소득 보장과 저출산 문제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재정현안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임에도 신속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았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에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 7건 중 4건의 2023년 세수효과는 △1조 2,179억원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3건 중 1건은 추정 곤란하며, 2건은 2024년 이후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용 및 사유]

(단위: 억원)

| 조세특례 항목                    | 내용  | 면제 사유                             | '23 세수효과   |
|----------------------------|---|-----------------------------------|------------|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                         |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투자 유도(1호)         | 추정곤란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1호)        | '24년 이후 발생 |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약 10%수준 인상 | 경제여건 악화로 저소득층 지원 시급(1호)           | △9,557     |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                                   | △1,252     |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퇴직연금계좌 포함시 900만원으로 확대                                      | 노후소득 확대를 위해 신속대응 필요(1호)           | '24년 이후 발생 |
|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승용차 구입시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감면                            |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속추진 필요(1호)    | △603       |
|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세제지원 조치 필요(1호) | △767       |

자료: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고 홍보하였으며, 이와 함께 재정준칙 도입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6)</sup>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i) 면제요건 구체화 및 엄격한 적용, ii)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확대 실시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이 불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 역시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비상경제장관회의(2022.9.13.)

7)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같은 항 제1호(공공청사) 및 제8호(법령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가. 현 황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sup>1)</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다.<sup>2)</sup>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서 전출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법정배분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2023년도 복권기금의 복권수익금 100분의 35에 대한 배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01억 5,800만원(5.1%) 증액된 1조 345억 5,900만원으로, 2022년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감액된 반면, 나머지 3개 기금 전출금과 5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증액되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또한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복권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법정배분액과 사행심 억제와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도 복권기금의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94,176     | 130,527              | 130,527              | 109,957        | △20,570 | △15.8   |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88,565     | 93,814               | 93,814               | 91,450         | △2,364  | △2.5    |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53,227     | 59,758 <sup>2)</sup> | 59,758 <sup>2)</sup> | 64,400         | 4,642   | 7.8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 63,711     | 74,666               | 74,666               | 78,907         | 4,241   | 5.7     |
|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 92,947     | 140,643              | 140,643              | 158,339        | 17,696  | 12.6    |
| 지방자치단체지원       | 141,508    | 152,750              | 152,750              | 176,062        | 23,312  | 15.3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128,817    | 167,851              | 167,851              | 176,999        | 9,148   | 5.5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 51,466     | 55,253               | 55,253               | 58,664         | 3,411   | 6.2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 38,420     | 40,082               | 40,082               | 47,205         | 7,123   | 17.8    |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 57,477     | 69,057               | 69,057               | 72,576         | 3,519   | 5.1     |
| 합 계            | 810,314    | 948,401              | 948,401              | 1,034,559      | 50,158  | 5.1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2) 코로나피해 고용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 용자를 위한 공익사업목적 전출금 1,000억원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2021년부터 매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에 여유자금 운용이 포함돼 있으나, 복권수익금의 효율적인 배분·운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축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사업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고, 중기적으로는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복권수익금 중 1,099억 5,700만원을 전출할 계획이다. 복권기금 전입금을 활용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복권기금 전입금 1,099억 5,700만원 중 870억 4,700만원(79.2%)은 과학영재양성 등 사업수행에 사용하고 229억 1,000만원(20.8%)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3회계연도 연속으로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중 일부를 여유재원 명목으로 편성하였다.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사용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 복권기금 전출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전입금 활용계획 |         |
|---------|----------|--------------------|---------|
|         |          | 사업소요               | 여유자금 소요 |
| 2021    | 116,159  | 94,176             | 21,983  |
| 2022    | 130,527  | 101,244            | 29,283  |
| 2023(안) | 109,957  | 87,047             | 22,910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계획안 산출근거를 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배분비율을 적용한 기본배분액 1,202억 3,300만원에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진흥기금 자금소요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감조정분<sup>3)</sup> △211억 4,100만원, 2021년도 법정배분액 정산금 108억 6,500만원을 각각 더하여 1,099억 5,700만원이 책정되었다.

[2023년도 복권기금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계획안 산출근거]

|   |
|---|
| ① 기본 배분: '23년 복권수익금*(2,730,061백만원)의 35% 중 12.583%인 120,233백만원<br>* 복권수익금 = 복권판매수입 - 복권판매사업비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 ② 가감조정: △21,141백만원*<br>*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자금소요 등을 감안  |
| ③ '21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10,865백만원<br>* 정산금 = ('21년 결산상 복권수익금-기 배분한 복권수익금) × 35% × '21년 과학기술진흥기금 배분비율(가감조정 반영) |
| ④ 전출금(109,957백만원) = 기본 배분(120,233백만원) + 가감조정(△21,141백만원) + '21년 법정배분액 정산금(10,865백만원)                      |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2023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에 따라 기본 배분액 1,202억 3,300만원보다 감액된 금액이 편성되었음에도 2023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비 소요금액이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보다 작아 복권기금 전입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단서는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법정배분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각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20%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각 기금 및 기관별 기본 배분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자금소요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배분비율의 20% 범위에서<sup>4)</sup> 감액조정을 하였음에도 지출소요가 많지 않아 불가피하게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전출금이 일부 편성되었으며, 향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소요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자금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복권수익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적립분까지 지원하는 경우 복권수익금 배분·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해당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계획규모가 2020년 327억 2,800만원, 2021년 480억 4,100만원, 2022년 616억 9,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계획안은 2022년 대비 150억 4,300만원 증가한 767억 3,500만원이다.<sup>5)6)</sup>

[과학기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 2020<br>수정계획 | 2021<br>수정계획 | 2022<br>수정계획(A) | 2023<br>계획안(B) | 증감(B-A)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32,728       | 48,041       | 61,692          | 76,735         | 15,043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2021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향후 기금 자금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1년 이후 부채가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 순자산 규모가 2021년 결산 기준 402억 1,600만원에서 2023년 1,288억 8,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 과학기술진흥기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는 기금 수입(비통화금융기관 예치 포함)에서 주요사업비와 기금운용비 및 정부내부지출 예산을 각각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6)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2년 9월 26일 기준 여유자금 운용잔액은 221억 8,000만원으로, 2022년에 복권기금 전입금 중 여유자금 운용액(293억원)이 추가로 편입되면 2022년 말 기준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연 도      | 2021결산 | 2022추정 | 2023추정  |
|----------|--------|--------|---------|
| 자산(A)    | 40,216 | 91,576 | 128,880 |
| 부채(B)    | -      | -      | -       |
| 순자산(A-B) | 40,216 | 91,576 | 128,88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권수익금 배분·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중기적으로는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sup>7)</sup> 일반회계에 편성된 과학기술 진흥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감소시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줄이는 한편,<sup>8)</sup>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복권수익금 일부를 여유자금에 적립하지 않고 주요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sup>9)</sup>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이후 17년 이상 기본 배분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나,<sup>10)</sup> 각 기금 및 기관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복권수익금 기본 배분비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규모는 2018년 300.4조원, 2020년 437.5조원, 2022년(전망) 610.8조원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8)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 진흥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되어 있다.

9)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에 편성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지원사업'(189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여유자금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 2004년 법 시행 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 추가에 따른 변경 외에 동일한 상황이다.

### 가. 현 황

예비비<sup>1)</sup>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자금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sup>2)</sup> 및 「국가재정법」 제22조<sup>3)</sup>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과목이다. 이러한 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000억원(33.3%) 증액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00억원(△5.5%)이 감액된 5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예비비   | 9,272,100  | 3,900,000          | 5,500,000 | 5,200,000      | △300,000 | △5.5    |
| 일반예비비 | 7,871,300  | 2,100,000          | 3,700,000 | 3,400,000      | △300,000 | △8.1    |
| 목적예비비 | 1,400,800  | 1,800,000          | 1,800,000 | 1,800,000      | 0        | 0.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3069-300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지정할 수 없다.

예비비는 예산총칙 등에 미리 사용목적을 규정해 놓은 목적예비비와 그 외의 일반예비비로 구성되며,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에는 목적예비비 3.4조 원, 일반예비비 1.8조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 나. 분석의견

**첫째,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2020~202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예비비 예산은 편성·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2018년 3조 500억원, 2019년 3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3조원 내외의 규모였으나, 2020년에 5조 6,100억원, 2021년에는 9조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 3조 9,000억원, 제2회 추경예산 기준 5조 5,000억원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감소하였다.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 2018<br>예산 | 2019<br>예산 | 2020<br>예산 | 2021<br>예산 | 2022   |        | 2023<br>예산안 |
|-------|------------|------------|------------|------------|--------|--------|-------------|
|       |            |            |            |            | 본예산    | 추경     |             |
| 합계    | 30,500     | 30,000     | 56,100     | 97,000     | 39,000 | 55,000 | 52,000      |
| 목적예비비 | 18,500     | 18,000     | 42,100     | 81,000     | 21,000 | 37,000 | 34,000      |
| 일반예비비 | 12,000     | 12,000     | 14,000     | 16,000     | 18,000 | 18,000 | 18,000      |

주: 2018~2021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5조 2,000억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비비 규모(추경예산 기준)보다는 감소한 것이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 및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규모이다.

또한 총지출 대비 예비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예비비 비중이 0.6~0.7%수준이었으나, 2020년 추경예산 및 2021년 예산 기준으로는 1.0~1.6%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 기준은 0.64%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예비비 비중이 0.81%로 증가하였다.

[2018년 이후 총지출 대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비중]

(단위: 조원, %)

| 연도               |     | 2018<br>예산 | 2019<br>예산 | 2020<br>예산 | 2021<br>예산 | 2022<br>예산 | 2023<br>예산안 |
|------------------|-----|------------|------------|------------|------------|------------|-------------|
| 본예산              | 총지출 | 428.8      | 469.6      | 512.3      | 558.0      | 604.4      | 639.0       |
|                  | 예비비 | 3.00       | 3.00       | 3.40       | 8.60       | 3.90       | 5.20        |
|                  | 비율  | 0.70       | 0.64       | 0.66       | 1.54       | 0.64       | 0.81        |
| 추경 <sup>1)</sup> | 총지출 | 432.7      | 475.4      | 554.7      | 604.9      | 679.5      | -           |
|                  | 예비비 | 3.05       | 3.00       | 5.61       | 9.70       | 5.50       | -           |
|                  | 비율  | 0.70       | 0.63       | 1.01       | 1.60       | 0.81       | -           |

주: 1) 각 연도의 마지막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예산안의 총지출 대비 예비비 비중은 0.81%로 2022년 추경예산 기준과 동일하고, 코로나19 이전과 2022년 본예산 기준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과 비슷한 규모의 예비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년 4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어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 등 예측하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소요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코로나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제기<sup>4)</sup>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방역보강 재원소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지난 9월 14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주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적었다면서 팬데믹이 전환점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9월 16일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를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일반사업 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만을 심의하고 집행내역을 사후 승인하고 있어 일반예산보다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국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일반 예산사업 증액으로 예비 재원 소요가 감소하였다는 판단 하에 목적예비비 예산을 1.1조원 감액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과정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4,000억원을 감액의 결한 바 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경안 목적예비비 국회 심의결과]

(단위: 억원)

| 구분               | 목적예비비  |        |         | 예비비 감액사유   |
|------------------|--------|--------|---------|--|
|                  | 정부안    | 국회확정   | 증감      |  |
| 2022년도<br>본예산    | 32,000 | 21,000 | △11,000 |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br>일반사업 예산 증액으로 예비<br>재원 소요 감소 |
| 2022년도<br>제1회 추경 | 31,000 | 27,000 | △4,000  | 일반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예<br>비 재원 소요 감소                   |

자료: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2023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예비재원 소요가 2020~2022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본예산 기준 총지출 대비 예비비 비중 추이, 예비비 예산은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sup>

**둘째, 정부는 국회에서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예비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 회계연도의 예비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만약 예비비 감액 후 2023년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예비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전용이나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sup>6)</sup>은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52조<sup>7)</sup>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에 국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2022년 5월 31일에, 2022년 예비비사용 현황은 2023년 5월에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조항이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예비비 사용 총괄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승인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해당 조항들이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정보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예산안 심사 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가 현 회계연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문제제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예비비가 제외되어야 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되나, 예비비 사용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정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사업으로 배정되면 집행단계에서는 일반사업 예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에도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일반예산과 달리 예비비는 국회의 총액심의만을 받고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이 없는 특성상 현 회계연도의 집행현황과 집행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는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

---

6)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정 시점 기준의 현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sup>8)</sup>

---

8) 참고로, 국회의원이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집행실적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41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028)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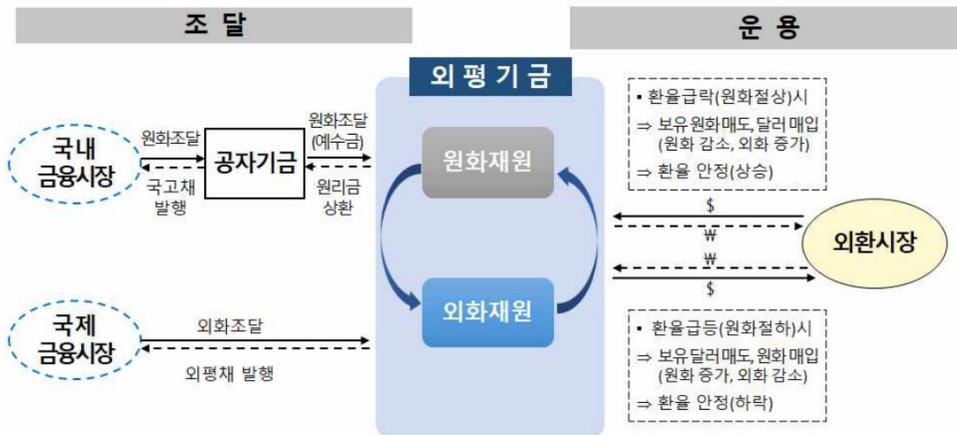
#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자금 확보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1)에 따라 설치되었다.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여 자금을 확보한다.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입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매도하고 외화를 매입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2023년 외평기금의 조달 부문 중 외화 확보를 위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2023년 정부안에 외화표시 외평채 신규발행<sup>2)</sup> 30억달러(3조 8,700억원) 규모를 편성하여 외화자금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2022년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수입 계획]

(단위: 백만원)

|        | 2021 결산   | 2022년     |           | 2023년(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 국공채 수입 | 1,558,883 | 1,131,000 | 1,131,000 | 3,870,000 | 2,739,000 | 242.2 |

자료: 기획재정부

외평기금은 2023년에 미달러화 표시 외평채 30억달러를 발행할 계획이며, 만기도래할 1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차환할 계획이다.

[외화표시 외평채 잔액 및 통화별 잔액]

(단위: 억달러)

| 연도   | 외평채 잔액 |    |     | 통화별 잔액 |    |     |     |    |    |     |    |    |
|------|--------|----|-----|--------|----|-----|-----|----|----|-----|----|----|
|      |        |    |     | 미달러화   |    |     | 유로화 |    |    | 위안화 |    |    |
|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발행  | 상환 | 잔액 |
| 2015 | 5      | 5  | 64  | -      | -  | 44  | -   | -  | 15 | 5   | -  | 5  |
| 2016 | -      | 5  | 59  | -      | 5  | 39  | -   | -  | 15 | -   | -  | 5  |
| 2017 | 10     | -  | 69  | 10     | -  | 49  | -   | -  | 15 | -   | -  | 5  |
| 2018 | 10     | 5  | 74  | 10     | -  | 59  | -   | -  | 15 | -   | 5  | -  |
| 2019 | 15     | 15 | 72  | 15     | 15 | 59  | -   | -  | 13 | -   | -  | -  |
| 2020 | 15     | -  | 87  | 7      | -  | 66  | 8   | -  | 21 | -   | -  | -  |
| 2021 | 13     | 4  | 96  | 5      | -  | 71  | 8   | 4  | 25 | -   | -  | -  |
| 2022 | 10     | -  | 106 | 10     | -  | 81  | -   | -  | 25 | -   | -  | -  |
| 2023 | 30     | 10 | 126 | 30     | 10 | 101 | -   | -  | 25 | -   | -  | -  |
| 2024 | 10     | 14 | 122 | 10     | 5  | 106 | -   | 9  | 16 | -   | -  | -  |
| 2025 | 10     | 12 | 120 | 10     | 4  | 112 | -   | 8  | 8  | -   | -  | -  |
| 2026 | 10     | 8  | 122 | 10     | -  | 122 | -   | 8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2)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81-811

2023년 외평기금의 조달 부문 중 원화 확보를 위한 공공지금기금 예수금은 55조 3,018억 5,000만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지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sup>3)</sup>은 49조 8,018억 5,000만원, 예수이자상환<sup>4)</sup>은 5조 6,062억 1,900만원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외평기금의 신규예수금(예수이자상환 포함)은 5.5조원 규모이다.

[2023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예수금 및 예수원금상환 및 예수이자상환 계획]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 결산    | 2022년      |            | 2023년(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공자에서 외평으로 예수금   | 39,685,926 | 32,681,460 | 32,681,460 | 55,301,850 | 22,620,390 | 69.2    |
| 외평에서 공자로 예수원금상환 | 33,893,026 | 26,681,460 | 26,681,460 | 49,801,850 | 23,120,390 | 86.7    |
| 외평에서 공자로 예수이자상환 | 4,878,053  | 5,041,024  | 5,041,024  | 5,606,219  | 565,195    | 11.2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첫째, 2023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확보하는 신규 원화 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시 2021년 이후 외환시장 안정조치로 지속적으로 외화를 매도하여 원화를 확보한 점을 감안하여 원화 재원에 대한 추가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평기금은 원화재원의 경우 국고채 발행을 통해 공자기금에서 예수금을 차입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원화 재원을 조달하며,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위한 외화재원의 경우 외화 외평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 이 중 원화 재원과 관련하여 2016~2021년 결산을 살펴보면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을 포함하여 매년 8 ~ 12조원의 신규 예수금을 차입해오다가 2021년에는 5.8조원을 신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2023년 정부안에 따른 신규 예수금은 5.5조원 규모이다.

3)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9110-910

4) 코드: 외국환평형기금 9201-920

[2016~2021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예수금 및 예수원금상환 및 예수이자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 결산    | 2017 결산    | 2018 결산    | 2019 결산    | 2020 결산    | 2021 결산    |
|-----------------------|------------|------------|------------|------------|------------|------------|
| 공자에서<br>외평으로<br>예수금   | 48,600,000 | 40,722,700 | 26,400,000 | 35,359,800 | 42,271,320 | 39,685,926 |
| 외평에서<br>공자로<br>예수원금상환 | 36,600,000 | 28,722,700 | 14,700,000 | 23,359,800 | 34,308,200 | 33,893,026 |
| 외평에서<br>공자로<br>예수이자상환 | 6,840,436  | 5,774,857  | 5,580,049  | 5,623,323  | 5,402,037  | 4,878,053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에 대해 외평기금의 신규예수금 5.5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환 당국이 2020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외화를 순매도하여 원화를 확보한 점과, 환율 변동에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등으로 추가적인 원화 확보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 규모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환시장 개입 결과 확보한 원화와 관련하여 외환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이 공개한 외환 순거래 내역에 따르면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2021년 이후 외환 순거래액은 2021년 1/4분기 △1.03억달러, 2021년 3/4분기 △71.42억달러, 2021년 4/4분기 △68.85억달러, 2022년 1/4분기 △83.11억달러, 2022년 2/4분기 △154.09억달러로, 2021년 이후 총 △378.5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상의 거래에서 외평기금 및 한국은행의 정확한 원화/외환 거래 규모는 비공개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sup>6)</sup> 일부는 외평기금에서 원화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 추세 및 그로 인한 외환시장 개입 결과에 따른 원화 확보 외에도, 기재부가 외화예산 환전제도<sup>7)</sup> 등 자체적인 원화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5) 2022년의 경우에는 외평기금측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결산 이후 정보를 공개한다.

6)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결산 이후 등 사후적으로라도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외평기금의 외환시장 개입 결과와 관련된 원화 자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확보하는 신규 예수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일 환율 변동 추이 및 외환순거래액]

(단위: 달러)



자료: 한국은행

둘째,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되었던 2024년 이후 공자기금 예수금 감축 계획이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다시 2023년부터 매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5.5조원씩 신규 예수받는 것으로 변경된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이후 중기적인 시각에서 공자기금을 통한 외평기금의 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전년도 대비 중기 계획 변동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외화예산환전제도는 정부예산 등이 외화로 환전되어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각 부처가 시중 은행을 통해 환전하도록 하는 대신 외국환평행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환전해주는 제도이다. 2008년에 첫 시행 후 금융기관 역마진 등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2014년부터 2019년말까지 시행되었다가 2021년 9월 다시 재개되어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5.9억달러 규모의 환전실적(그에 따른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수입 9,085억원 발생)이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약 40억달러 규모의 환전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수입은 예산편성환율('22년 1,130원/달러, '23년 1,290원/달러)을 고려하여 각각 45,200억원('22) 과 51,600억원('23)으로 편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외평기금의 자금운용방향과 관련하여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계획을 살펴보면 공자기금 예수금과 관련하여 2018~2022년 동안 매년 12조원의 자원 예수 계획(「2018~2022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이 2021~2023년 동안 매년 6조원 규모의 예수금 계획(「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2020~2024년동안 매년 6조원을 예수받는 것으로 계획(「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되었다.

이후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서 예수받는 금액이 2021~2023년 동안 매년 6조원 규모로 제시되었다. 반면, 2024~2025년에는 반대로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 4조원씩 예수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약 4조원씩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원화자산을 감축시킬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자기금 예수금 감축 계획은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다시 2023년부터 매년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5.5조원씩 신규로 예수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공자기금예수금) 계획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2018<br>계획 | 예수 | 26.4  | 35.4  | 46.6  | 45.9  | 38.7  |       |       |       |       |
|            | 상환 | 14.4  | 23.4  | 34.6  | 33.9  | 26.7  |       |       |       |       |
|            | 잔액 | 227.2 | 239.2 | 251.2 | 263.2 | 275.2 |       |       |       |       |
| 2019<br>계획 | 예수 |       | 35.4  | 46.3  | 39.9  | 32.7  | 55.8  |       |       |       |
|            | 상환 |       | 23.4  | 34.3  | 33.9  | 26.7  | 49.8  |       |       |       |
|            | 잔액 |       | 238.9 | 250.9 | 256.9 | 262.9 | 268.9 |       |       |       |
| 2020<br>계획 | 예수 |       |       | 42.3  | 39.9  | 32.7  | 55.8  | 44.1  |       |       |
|            | 상환 |       |       | 34.3  | 33.9  | 26.7  | 49.8  | 38.1  |       |       |
|            | 잔액 |       |       | 246.8 | 252.8 | 258.8 | 264.8 | 270.8 |       |       |
| 2021<br>계획 | 예수 |       |       |       | 39.7  | 32.7  | 55.8  | 44.1  | 31.9  |       |
|            | 상환 |       |       |       | 33.9  | 26.7  | 49.8  | 48.1  | 35.9  |       |
|            | 잔액 |       |       |       | 252.6 | 258.6 | 264.6 | 260.6 | 256.6 |       |
| 2022<br>계획 | 예수 |       |       |       |       | 32.7  | 55.3  | 56.6  | 41.4  | 45.6  |
|            | 상환 |       |       |       |       | 26.7  | 49.8  | 51.1  | 35.9  | 40.1  |
|            | 잔액 |       |       |       |       | 258.6 | 264.1 | 269.6 | 275.1 | 280.6 |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변동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외환보유액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중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경우 ① 전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것에 비해 2023년 뿐만 아니라 2024~202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②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국가채무관리 계획 중에서 전체적인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제시<sup>8)</sup>된 것에 비해 해당 채무에 대한 증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기 관리계획 변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시한 환율 추이 예상 및 외화 외평채 발행 규모 확대('22년 15억 달러 → '23년 정부안 기준 30억달러)를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 계획을 감안하면, 이러한 중기 계획변경은 중기적으로 외화 자원 뿐만 아니라 원화 자원 규모도 동시에 증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2~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중에서도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 자체만으로 국가채무에 평균적으로 약 22.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공자기금 예수금 감축 계획이 예수금 증가 방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2022~2026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전망 중 외평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연평균 증가율 | 국가채무 기여도           |
|-----------------|----------|----------|----------|----------|----------|---------|--------------------|
| 국가채무            | 1,068.80 | 1,134.80 | 1,201.20 | 1,271.90 | 1,343.90 | 5.9     | 100                |
| 공자에서 외평으로 예수금잔액 | 258.6    | 264.1    | 269.6    | 275.1    | 280.6    | 2.1     | 22.5 <sup>1)</sup> |

주 1) 2022~2026년 동안 공자에서 외평으로 예수금 잔액의 국가채무 기여도 평균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8)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2023~2026년 국가채무 전망의 경우 국가 채무비율을 2026년 5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또한 2023년 이후 2022년 대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 유동적임을 고려하되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자기금을 통한 외평기금의 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계획 변경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외평기금 관련 외환시장 안정용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ODA<sup>1)</sup>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되고,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증여)와 유상원조(양허성 차관)으로 나누어진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는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및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잠정통계 기준 총 ODA 규모는 4조 425억원으로 양자간 원조는 이 중 79.7%인 3조 2,199억원이며, 다자간 원조는 전체 ODA 규모의 20.3%인 8,226억원 규모이다. 무상원조는 양자간 원조 중 58.6%인 1조 8,865억원, 유상원조는 양자간 원조 중 41.1%인 1조 3,334억원 규모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이다. EDCF의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은 지역별로 6개 세부사업(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태평양, 민간·국제기구협력)으로 구분된다. 2023년 EDCF의 대개도국차관<sup>2)</sup> 계획안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695억 5,300만원(2022년 2차 추경 대비 2,724억원) 증액된 1조 5,029억 7,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ODA의 총괄 및 조정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이다.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기관이다.

2) 코드: 대외경제협력기금 3331-301

[2023년 대개도국차관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결산   | 2022년     |           | 2023년(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     |
| 대개도국차관          | 1,226,658 | 1,333,423 | 1,230,556 | 1,502,976 | 272,420 | 22.1  |
| 아시아차관           | 391,110   | 639,379   | 604,699   | 705,400   | 100,701 | 16.7  |
| 아프리카차관          | 275,586   | 319,980   | 277,621   | 304,852   | 27,231  | 9.8   |
| 중동-CIS차관        | 16,111    | 79,531    | 56,219    | 131,972   | 75,753  | 134.7 |
| 중남미차관           | 15,161    | 47,171    | 44,655    | 36,396    | △8,259  | △18.5 |
| 민간·국제기구<br>협력차관 | 528,690   | 247,362   | 247,362   | 324,356   | 76,994  | 31.1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첫째, 2023년도 예산안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고는 하나 2021회계연도에 집행이 부진했던 내역사업이 2023년도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차관 등 구체적 용도가 미정인 차관 예산이 1,12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점 등을 감안하여 대개도국 차관 예산 규모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원국 상황에 따른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EDCF의 대개도국 차관 사업은 ①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② 후보 사업 발굴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심사 및 승인, 정부 간 협정 및 차관공여계약 체결 등 대개도국 사업 진행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 부진이 반복되었다.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아시아차관(△80억원), 아프리카차관(△40억원), 중동-CIS차관(△40억원), 중남미차관(△40억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600억원)이 감액되었다.

그럼에도 2023년 예산안에서 2022년 당초예산대비 1,695억 5,300만원(2022년 2차 추경 대비 2,724억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기준 집행이 부진했던 아시아차관과 중동-CIS차관, 중남미 차관 등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집행이 부진했던 내역사업이 2023년도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아시아 차관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당초 예산액 대비 49.6%의 집행률을 보였다. 2021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0%였던 내역사업은 총 34개에 달하며, 해당 내역사업에서 2023년 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은 아시아차관 전체 예산의 32.6%인 2,299억 900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2022년 9월 기준 아시아차관의 전체 집행률은 48.1%에 그친다.

중동-CIS 차관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당초 예산액 대비 20.7%의 집행률을 보였다. 2021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0%였던 내역사업은 6개에 달하며, 해당 내역사업에서 2023년 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은 전체 중동-CIS 차관 예산의 46.5%인 614억 1,500만원 규모이다. 2022년 9월 기준 중동-CIS 차관의 전체 집행률은 11.4%에 그치고 있다.

중남미 차관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당초 예산액 대비 32.2%의 집행률을 보였다. 2021회계연도 기준 집행률이 0%였던 내역사업은 4개이며, 해당 내역사업에서 2023년 예산안에 요구한 금액은 전체 중남미 차관 예산의 10%인 36억 3,800만원이다. 2022년 9월 기준 중남미 차관의 전체 집행률은 36.6%이다.

[아시아, 중동-CIS, 중남미 차관 2021회계연도 집행 부진(집행률 0%) 내역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 지역  | 국가    | 내역사업명             | 2021년도 |   | 2023<br>계획 |
|-----|-------|-------------------|--------|---|------------|
|     |       |                   | 계획     | 부진 사유                                     |            |
| 아시아 | 라오스   |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사업   | 8,591  |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본구매 계약자 선정 지연           | 21,620     |
|     | 몽골    | 바양골린암 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 | 16,576 | 코로나19 로 인한 인력투입 제한 및 수원국 행정처리 지연          | 24,622     |
|     | 스리랑카  | 캔디터널 건설사업         | 21,670 | 수원국 정부의 차관공여계약 체결 행정절차 지연으로 차관 집행 지연      | 17,569     |
|     | 인도네시아 | 항로표지시설 개선사업       | 1,682  |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컨설턴트 고용지연     | 5,961      |
|     | 파키스탄  | 카라치 IT파크 건설사업     | 1,287  |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컨설턴트 고용 지연              | 17,044     |
|     | 필리핀   | 사업준비차관            | 6,959  | 세부 프로젝트 확정 등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컨설턴트 고용 지연 | 10,662     |

| 지역         | 국가             | 내역사업명                       | 2021년도 |                                | 2023<br>계획 |
|------------|----------------|-----------------------------|--------|--------------------------------|------------|
|            |                |                             | 계획     | 부진 사유                          |            |
| 중동<br>-CIS | 우즈<br>베키<br>스탄 | 지방의료기관<br>의료기자재<br>공급사업     | 19,976 | 기자재 공급 관련 수원국 행정<br>절차 지연      | 15,565     |
|            | 요르단            | 암만 남부<br>하수처리<br>사업(2차)     | 3,406  | 수원국 TOC 발급지연으로 인<br>한 잔금 집행 지연 | 289        |
|            | 키르<br>기즈<br>스탄 | 국립 감염병원<br>개선사업             | 8,945  |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br>차관계약 지연     | 12,072     |
| 중남미        | 니카<br>라과       | 마나과 대중교통<br>현대화사업           | 566    | 정부간 협정 체결 지연                   | 1,200      |
|            | 볼리<br>비아       | 오루로 종합병원<br>건립사업            | 1,128  |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br>차관계약 지연     | 1,170      |
|            | 니카<br>라과       | 지방태양광<br>에너지<br>공급사업(2차)    | 213    | 정부간 협정 체결 지연                   | 649        |
|            | 니카<br>라과       | 콘아일랜드<br>태양광에너지<br>시스템 구축사업 | 223    | 정부간 협정 체결 지연                   | 619        |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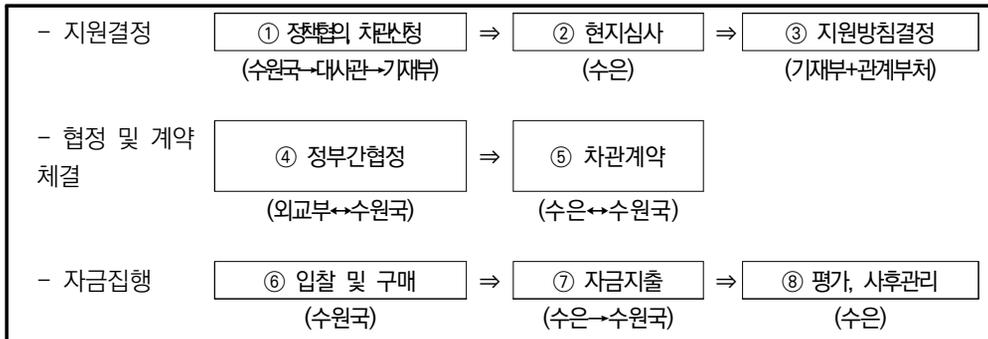
이는 정부간 협정 등 총 8개 단계로 이루어지는 대개도국차관 사업 절차<sup>3)</sup> 및 그에 따른 집행 부진 사유를 감안하면, 2023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더라도 당시 제기된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sup>4)</sup>

또한 2022년 7월말 기준 대개도국차관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중동-CIS차관의 경우 6.2%, 민간·국제기구협력 차관의 경우 1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의 경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전년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 중동-CIS 차관의 경우 757억 5,300만원(134.7%)이 증액되었고, 민간·국제기구협력 차관의 경우 769억 9,400만원(31.1%)이 증액되었다.

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증액은 정부의 ODA 규모 확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개도국과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ODA 규모의 지속 확대<sup>5)</sup>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보고서에서 ODA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과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sup>6)</sup> 그럼에도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집행률

3) 대개도국차관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은 8단계로 이루어지며 3단계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대개도국 차관 사업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4)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원국에 피해가 집중되어 수원국의 행정 여력 부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수원국 협의 지연 및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사태가 급증하여 일부 사업 진행속도가 둔화된 측면이 있으나, 개도국 정부의 권한 및 책임하에 수행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특성상 상반기 개도국 사업시행절차 준비 등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실적이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에서 ODA 확대 목표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ODA 총예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2019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전체 ODA 예산을 2030년 6.4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현저하게 낮은 세부사업의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점은 국회의 대개도국차관 사업 집행 관리 및 집행률 제고에 대한 지적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보기 어렵다.

한편, 2023년 예산안 대개도국 차관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긴급차관’의 명목으로 2023년 예산안 기준 1,1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 차관<sup>7)</sup> 등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차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이후 바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다.<sup>8)</sup>

그러나 긴급차관과 같이 세부 집행 계획이 결여된 차관 예산이 전년 대비 전체 증액 규모의 약 41.4%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된 점은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권한을 증대하게 제한하며,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안관련 국회 예결위검토보고서에서 미확정 차관 사업을 위한 대개도국 차관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2023년 예산안에서 해당 명목으로 1,129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6)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2021.09. pp.81~84.

7) 프로그램 차관은 개별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부문별 또는 종합적 경제개발 및 자본투자를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패키지 형태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021년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 감염병 대응 조직 체계구축 등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 차관 수요가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8) 그러나 해당 경우에 대해서도 EDCF는 지출예정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별도의 여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통화금융기관예치 118억 3,0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82억 5,100만원 등 300억 8,100만원 규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방식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9)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프로그램차관 600억원, 긴급차관 200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2021~2023 대개도국 차관 사업별 프로그램 차관 및 긴급차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대개도국차관  | 사업별 프로그램 차관 |        |          |       |       | 민간·국제기구<br>협력차관 |
|------|---------|-------------|--------|----------|-------|-------|-----------------|
|      |         | 아시아차관       | 아프리카차관 | 중동-CIS차관 | 중남미차관 | 기타    |                 |
| 2021 | 40,000  | -           | -      | -        | -     | -     | 40,000          |
| 2022 | 145,000 | 10,000      | 5,000  | 5,000    | 5,000 | 5,000 | 120,000         |
| 2023 | 112,900 | 4,000       | 2,000  | 2,000    | 2,000 | 2,000 | 102,900         |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는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되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을 반영하며 긴급차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결여된 예산을 감액하는 등 2023년 대개도국차관 예산 규모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개도국 차관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자기금 예수금 등 EDCF의 정부 내부거래수입 편성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DCF의 수입재원은 자체수입(용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과 정부 내부거래 수입(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분된다. 자체수입은 용자원리금 회수액으로 주로 구성되고,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자체수입 비중은 2014년 20.2%에서 2015년 14.7%로 하락한 이후 계속 10%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하 “공자기금 예수금”)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 비중은 16.9%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sup>10)</sup>.

10)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ODA 규모 확대 기초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어 기금 자체재원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외 재원 다양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재원 및 대개도국 차관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자체 수입(A) | 비중 (=A/B)   | 내부거래     |          |        | 여유자금 회수 | 수입 합계 (B) |
|------|----------|-------------|----------|----------|--------|---------|-----------|
|      |          |             | 일반회계 전입금 | 공자기금 예수금 | 소 계    |         |           |
| 2014 | 1,417    | <b>20.2</b> | 4,590    | 0        | 4,590  | 995     | 7,001     |
| 2015 | 1,378    | <b>14.7</b> | 7,664    | 0        | 7,664  | 350     | 9,392     |
| 2016 | 1,326    | <b>14.6</b> | 6,100    | 0        | 6,100  | 1,661   | 9,087     |
| 2017 | 1,454    | <b>16.9</b> | 5,900    | 0        | 5,900  | 1,229   | 8,583     |
| 2018 | 1,674    | <b>18.1</b> | 6,713    | 120      | 6,833  | 717     | 9,225     |
| 2019 | 2,027    | <b>15.9</b> | 7,800    | 2,720    | 10,520 | 233     | 12,780    |
| 2020 | 1,978    | <b>17.3</b> | 5,881    | 3,250    | 9,131  | 318     | 11,427    |
| 2021 | 2,248    | <b>17.1</b> | 7,529    | 3,000    | 10,529 | 349     | 13,126    |
| 2022 | 2,657    | <b>18.3</b> | 6,623    | 3,745    | 11,396 | 440     | 14,493    |
| 2023 | 2,739    | <b>16.9</b> | 8,873    | 4,171    | 13,044 | 429     | 16,212    |

주: 2014~2021년은 결산 기준, 2022년은 계획 기준, 2023년은 계획안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EDCF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은 8,873억원('22년 6,623억원 대비 34% 증가)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공자기금 예수금 또한 4,171억원('22년 3,745억원 대비 11.4% 증가) 규모로 편성되었다.

EDCF 수입 중 자체수입이 아닌 정부 내부거래 수입이 대규모로 증액되어 편성된 것은 해당 재원의 타 사업 예산 활용이나 국가채무를 줄이는 등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ODA 규모 확대 기초를 감안하면 규모 확대와 더불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자체수입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내부거래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 등 EDCF 정부 내부거래수입의 예산편성 규모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1

### 기후대응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7%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황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sup>1)</sup>은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에 필요한 자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수입과목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4,591억 100만원(60.2%) 증액된 1조 2,22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과목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 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일반회계전입금 | -          | 1,076,635          | 763,154 | 1,222,255      | 459,101 | 60.2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을 보면, 수입과목('목' 단위)은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금예수금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전입금이 전체 수입계획안의 49.2%로 가장 많고, 이어 기타경상이전수입,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기금예수금 순이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기후대응기금 91-911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총 계      | 2,459,423          | 2,364,623 | 2,486,723      | 122,100  | 5.2     |
| 기타경상이전수입 | 730,584            | 730,584   | 400,896        | △329,688 | △45.1   |
| 일반회계전입금  | 1,076,635          | 763,154   | 1,222,255      | 459,101  | 60.2    |
| 특별회계전입금  | 300,000            | 300,000   | 300,000        | 0        | 0.0     |
| 기금전입금    | 200,000            | 200,000   | 290,975        | 90,975   | 45.5    |
| 기금예수금    | 152,204            | 370,885   | 272,597        | △98,288  | △26.5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수입과목별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2023년도 계획안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기금예수금은 다른 재원확보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계획규모 감소로 각각 전년 대비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과 기금전입금은 각각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확대, 복권기금 전입금 신설로 증액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과목별 개요 및 증감사유]

(단위: 백만원)

| 구 분      | 수입 개요                                 | 전년 대비 증감사유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                  | (감) 배출권 가격하락 등  |
| 일반회계전입금  | 기금 지출재원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 (증) 일반회계 지원확대   |
| 특별회계전입금  | 기금 지출재원 일부를 다른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    | 전년과 동일          |
| 기금전입금    | 기금 지출재원 일부를 타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에서 지원 | (증) 복권기금 전입금 신설 |
| 기금예수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                       | (감) 차입계획규모 감소   |

주: 전년 대비 증감사유는 2022년도 수정계획 대비 2023년도 계획안의 증감사유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7,802억 9,700만원<sup>2)</sup>과 기후대응기금 지출재원 부족분 4,419억 5,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 구성]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일반회계전입금        | 1,076,635 | 763,154 | 1,222,255      | 459,101 | 60.2    |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 1,076,635 | 763,154 | 780,297        | 17,143  | 2.2     |
| 지출재원 부족분 총당    | -         | -       | 441,958        | 441,958 | 순증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sup>3)</sup>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후대응기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안에는 지출재원 부족분을 총당한다는 명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을 초과하여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2항제3호<sup>4)</sup>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

2)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예산안은 11조 1,471억원이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에 근거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을 초과한 금액을 반영하였으며,<sup>5)</sup> 2023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중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 회계전입금 추가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편성 근거를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6)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은 기본적으로 i)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 ii)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iii)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으로 편성하 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

-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5) 또한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회계·기금과 달리 일반회계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보전하고 있어 여유재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련되어 있는 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대응기금이 지출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을 초과한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69조제2항제4호에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기준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편성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sup>7)</sup> 제71조에 따른 기준 외에 일반회계전입금을 추가 편성하는 것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8)</sup>

---

7)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 규모는 2018년 300.4조원, 2020년 437.5조원, 2022년(전망) 610.8조원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8)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70을 초과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조정하는 한편, 그에 맞추어 기금 지출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다른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sup>1)</sup>은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발굴, 국제감축사업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이며 계획안은 25억원이다.

[2023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       | 2023<br>계획안(B) | 증 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    | -     | 2,500          | 2,500 | 순증      |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의 예산과목은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목)로서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예산을 교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도 계획안은 국제감축사업 발굴 19억원, 전담기관 운영비 4억원, 구매방식 지원모델 개발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3<br>계획안 | 산출근거  |
|--------------|-------------|---|
| 감축사업 발굴      | 1,900       | (대규모 사업) 4개 사업 × 400백만원<br>(소규모 사업) 2개 사업 × 150백만원                  |
| 전담기관 운영비     | 400         | 일반수용비 24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50백만원 등<br>-국내외 기관 역량강화 교육<br>-기술검토 및 법률 검토 등 |
| 구매방식 지원모델 개발 | 200         | 구매방식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300

## 나. 분석의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관장부처 외에 기획재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의 전문성 부족이나 부처 간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관으로 각각 신규 편성되어 있고, 2023년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사업이 25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63억 5,000만원, 환경부 사업이 103억 5,000만원이다.

[2023년도 부처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주요내용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기후대응기금)   |  |  |
|--------------|---|--|--|
|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 사업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실적 확보   |  |  |
| 사업내용         |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조성, 감축사업지원, 금융지원·ODA 사업과 연계   | 산업·에너지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감축사업 지원                                | 폐기물 등 환경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감축사업 지원  |
| 전담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에너지공단, KOTRA   | 한국환경공단   |
| '23~'26 투자계획 | 28,000  | 73,400   | 101,400  |
| '23계획안       | 2,500   | 6,350  | 10,350   |
| 계획안 산출내역     | ·사업발굴(19억원)<br>-대규모사업 16억원<br>-소규모사업 3억원<br>·전담기관 운영비(4억원)<br>·국내외기관 역량강화교육 등<br>·구매방식 지원모델 개발(2억원) | ·감축실적 확보(60억원)<br>-감축사업 60억원<br>·국제감축 기반조성(3.5억원)<br>-사업발굴, 협약체결 등 | ·감축실적 확보(100억원)<br>-감축사업 84억원<br>-타당성조사 16억원<br>·국제감축 기반조성(3.5억원)<br>-사업발굴, 협약체결 등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사업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실적 확보로 동일하고, ②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기반 조성, 감축사업 지원으로 유사하나, 산업통상자원

부 사업은 산업·에너지분야, 환경부 사업은 폐기물 등 환경분야, 기획재정부 사업은 분야를 제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또한 ③ 전담기관은 기획재정부 사업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 환경부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며, ④ 2023~2026년 투자계획은 기획재정부 사업이 28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734억원, 환경부 사업이 1,014억원으로 환경부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2023년 계획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환경부 사업은 감축사업 지원예산이 각각 60억원, 84억원이 포함된 반면, 기획재정부 사업은 사업발굴이 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외에 기획재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2030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sup>2)</su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관장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사업을 시행하여 감축실적을 늘릴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ODA사업 인프라 및 금융지원방식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사업시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향후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처에 이관함으로써 부처 간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부문별 관장부처가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국제적 사업 네트워크 측면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있어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ODA사업 인프라와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기술과 전문성·경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이라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함에도 부문별 관장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당초 1,620만톤이었으나, 2021년 12월에 국제 탄소시장 관련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3,350만톤으로 상향한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하였다.

부처 간 중복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감축분야에 따라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감축분야가 아니라 ‘ODA인프라 및 금융지원과의 연계’라는 사업방식의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어 사업영역과 지원대상 기업범위의 중복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sup>3)</sup>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부문별 감축기술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다른 부처사업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3)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굴한 감축사업이라도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부문별 관장 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 검토절차가 이원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 가. 현 황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사업<sup>1)</sup>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sup>2)</sup>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9,400만원(6.4%) 증액된 365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 29,331     | 34,399             | 34,399 | 36,593         | 2,194 | 6.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2억 6,200만원(4.5%) 증액된 294억 9,700만원, 운영비는 전년보다 9억 3,200만원(15.1%) 증액된 7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22예산  | '23예산안 | 증감    | 세부내역  |
|-----|--------|--------|-------|---|
| 인건비 | 28,235 | 29,497 | 1,262 | 2023년 정원 326명에 대한 인건비   |
| 운영비 | 6,164  | 7,096  | 932   | ·사무실 임차료: 4,273백만원(전년 대비 1,035백만원 증)<br>·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고도화: 776백만원(전년 동)<br>·사무실 SW라이선스: 109백만원(전년 동)<br>·기타운영비: 1,938백만원(전년 대비 △103백만원 감)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3-504

2)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분석의견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출연금 중 인건비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높지 않고 편성단가가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이후 연도별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출연금 중 인건비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 예산 204억 3300만원 중 181억 9400만원(89.0%)을 집행하고 22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 235억 4700만원 중 219억 4200만원(93.2%)을 집행하고 16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에는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82억 400만원으로 예산액의 6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추이를 고려하면 2022년 집행률은 90% 미만, 불용액은 2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2년 한국재정정보원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률(B/A) | 불용액   |
|---------|--------|--------|----------|-------|
| 2020    | 20,433 | 18,194 | 89.0     | 2,239 |
| 2021    | 23,547 | 21,942 | 93.2     | 1,605 |
| 2022.9. | 28,235 | 18,204 | 64.5     | -     |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한국재정정보원 인건비 집행률은 매년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으로 높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상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 편성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정원이 299명이었으나 2022년 상반기에 27명을 증원하여 정원이 326명으로 조정되었고, 2022년 8월 말 기준 현원은 309.5명<sup>3)</sup>으로 정원 대비 16.5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5급이 2022년 신규채용 확대에 따라 정원보다 현원이 14명 많은 반면, 그 외의 직급에서는 퇴직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충원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다.

3) 0.5명은 시간제 근로자

[한국재정정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 2021정원 | 2022정원(A) | 2022현원(B) | 결원(A-B) |
|-----|----------|--------|-----------|-----------|---------|
| 합 계 |          | 299    | 326       | 309.5     | 16.5    |
| 임원  | 원장/상임이사  | 2      | 2         | 2         | 0       |
| 일반직 | 1급       | 6      | 6         | 5         | 1       |
|     | 2급       | 20     | 21        | 18        | 3       |
|     | 3급       | 47     | 51        | 45        | 6       |
|     | 4급       | 99     | 109       | 92        | 17      |
|     | 5급       | 83     | 92        | 106       | △14     |
| 연구직 | 연구위원     | 14     | 17        | 13        | 4       |
|     | 연구원      | 9      | 9         | 9         | 0       |
| 운영직 | 책임/전임/주임 | 19     | 19        | 19.5      | △0.5    |

주: 2022년 정원과 현원은 8월 말 기준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한국재정정보원 인건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기존 인력(정원 기준) 297명과 2022년 신규채용 인력(27명)의 1인 평균 인건비 모두 8,657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신규채용 인력은 통상적으로 기존 인력보다 직급이 낮고 근무기간이 짧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예산상 1인 평균 인건비를 기존 인력과 동일하게 책정하였다.<sup>4)</sup>

[2023년 한국재정정보원 인건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  | 인원수 | 1인 평균 인건비 | 예산     |
|------------------------------|--|-----|-----------|--------|
| 임원                           | 원장 및 상임이사                                | 2   | -         | 328    |
| 직원                           | 기존 인력(297명) 인건비                          | 297 | 86.57     | 25,710 |
|                              | '22년 증원(27명 12개월) 인건비<br>*정기 24명 + 수시 3명 | 27  | 86.57     | 2,337  |
| 소 계                          |  |     |           | 28,375 |
| 경영평가 성과급(B등급 기준)             |  |     |           | 628    |
| 인건비 총계(인건비 상승률 미반영)          |  |     |           | 29,003 |
| 인건비 총계('23년 인건비 상승률 1.7% 반영) |  |     |           | 29,497 |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4)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2022년 1/4분기(예산 기준) 한국재정정보원 신입 정규직 직원의 초임은 연 4,171만원이고 전체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596만원으로, 약 2,4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인건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90%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2022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예산상 인건비 편성단가가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출연금 중 인건비를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사업<sup>1)</sup>은 대통령의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이며 계획안은 497억 4,600만원이다.

[2023년도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       | 2023<br>계획안(B) | 증 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 -    | -     | 49,746         | 49,746 | 순증      |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878억 6,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2023년에 497억 4,600만원, 2024년에 38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계획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21억 800만원, 실시설계비 22억 5,800만원, 공사비 432억원, 감리비 20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1,000만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2110-300

## 나. 분석의견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계획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늘리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청와대의 영빈관과 같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부지 내에 외빈 접견,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부속시설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9월 17일에 정부는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계획을 철회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이 사업의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예산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나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늘리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국유재산관리기금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 공사비 등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sup>1)</sup>은 청사 노후화, 검사 증원 등에 따라 대구고·지검 청사를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1억 3,400만원(121.7%) 증액된 169억 3,600만원이다.

[2023년도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 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 | -          | 8,802              | 6,681 | 16,936         | 8,134 | 121.7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86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건설보상비가 1,462억 원, 설계비 56억 1,600만원, 공사비 1,292억 6,500만원, 감리비 등 기타 53억 3,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현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이나 2027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         |       |         |       | 사업기간                          |
|---------|---------|-------|---------|-------|-------------------------------|
| 합계      | 건설보상비   | 설계비   | 공사비     | 기타    |                               |
| 286,419 | 146,200 | 5,616 | 129,265 | 5,338 | 2020~2024년<br>(2027년까지로 연장예정)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2431-431

## 나. 분석의견

이 사업은 2023년 12월 착공을 전제로 공사비 등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설계와 공사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고 유사규모 사업 사례에 비추어 볼 때, 2024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등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의 2023년도 계획안을 비목별로 보면, 건설보상비 89억 4,100만원, 설계비(기본조사) 26억 3,000만원, 공사비 50억원, 감리비 3억 5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건설보상비와 설계비(실시설계) 예산은 2022년에도 편성되었으나 부지매입 등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 7월말까지 집행액이 없는 상황이다.

[2023년도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 계획안 비목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합계      | 건설보상비 | 설계비   | 공사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
| 2023계획안 | 16,936  | 8,941 | 2,630 | 5,000 | 305 | 60    |
| 2022    | 수정계획    | 6,681 | 5,816 | 865   | -   | -     |
|         | 집행(7월말) | 0     | 0     | 0     | -   | -     |

자료: 기획재정부

당초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2023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공사비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9월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2022년 11월에 완료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며, 2023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진행경과  |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사업부지내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지연)   |
| 향후 계획 |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완료 : 2022. 11.<br>- 기본설계: 2022.11. ~ 2023.5.<br>- 실시설계: 2023.5. ~ 2023.11.<br>- 착공: 2023년 12월<br>- 준공: 2027년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공사비 규모(1,292억 6,500만원)를 감안하면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각각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의 발주 및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각각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12월에 착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2)</sup>

공사비 규모가 8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의 사례를 보면,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설계기간이 6년 이상, 설계완료 후 착공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고, 법무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설계기간이 4년 6개월, 행정안전부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사업은 설계기간이 약 4년 소요되었으며, 대전통합청사 신축사업은 2년 여의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9월 말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소요기간 사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공사비 규모  | 기본설계기간          | 실시설계기간          | 공사기간           |
|----------------------|---------|-----------------|-----------------|----------------|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 125,115 | '15.11.~'16.4.  | '16.4.~'21.12.  | '22.6.~'25.10. |
| 법무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 114,680 | '18.7.~'19.12.  | '19.12.~'22.12. | 미체결            |
| 행정안전부<br>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 | 104,269 | '18.10.~'19.11. | '19.12.~'22.9.  | 미체결            |
| 대전통합청사 신축            | 80,494  | '19.12.~'20.9.  | '20.10.~'21.12. | 미체결            |

주: 공사비 규모가 800억원 이상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 또한 설계 완료 후 또는 설계 중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와 공사의 발주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규모 사업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2024년 이후에 공사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50억원과 감리비 3억 5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sup>

---

3) 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나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늘리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재정사업 심층평가<sup>1)</sup> 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 1,223      | 1,547              | 1,533 | 1,793          | 260 | 17.0    |
| 재정사업 심층평가      | 784        | 818                | 818   | 818            | 0   | 0.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2<sup>2)</sup>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i)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712-301의 내역사업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ii)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iii)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iv)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2022년 심층평가 신규과제가 10월 현재까지 선정되지 않았고 연내에 신규과제가 선정되어도 2023년 4~6월까지 수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반복되는 신규과제 하반기 선정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신규과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예산안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출연 7억 5,800만원, 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관리비용 출연 3,000만원, 심층평가 자체 운영경비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도에 7개 과제를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정사업 심층평가 출연: 758백만원 = 6개 과제×115백만원 + 1개 과제×68백만원</li> <li>② 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관리비용 출연: 30백만원</li> <li>③ 심층평가 자체 운영경비: 30백만원(보고서발간, 관계기관 협의, 외국사례조사 등)</li> </ul> |
|--|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5년 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현황을 보면, 2018년 6건, 2019년 6건, 2020년 8건, 2021년 6건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7개 과제를 신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예산안과 동일한 8억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10월 현재까지 신규 과제 선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현황]

| 연도       | 평가대상(사업/정책/회계 등) | 평가 수행기관   | 평가기간           |
|----------|------------------|-----------|----------------|
| 2018     | 미세먼지 저감대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18.8.~'18.12. |
|          | BK21플러스          | 한국재정학회    | '18.9.~'18.12. |
|          | 모태펀드             | 금융연구원     | '18.9.~'18.12. |
|          | 재직자 교육훈련         | 숙명여대      | '18.9.~'18.12. |
|          | R&D출연연운영효율화      | 한국정책학회    | '18.9.~'18.12. |
|          | 창업 지원사업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18.9.~'18.12. |
| 2019     | 외국인 체류관리사업군      | 한국노동연구원   | '19.6.~'19.11. |
|          | 산학연협력사업군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6.~'19.11. |
|          | 다자개발협력사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6.~'19.11. |
|          | 실업자재취업 사업군       | 서울대       | '19.6.~'19.11. |
|          | 아동돌봄사업군          | 보건사회연구원   | '19.6.~'19.11.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한국재정학회    | '19.6.~'19.11. |
| 2020     | 국립대재정지원사업군       | 충북대       | '20.3.~'20.9.  |
|          | 노인의료지원사업군        | 한림대       | '20.3.~'20.10. |
|          | 전자정부 지원체계        | 서울대       | '20.3.~'20.12. |
|          | 스마트시티            | 국토연구원     | '20.3.~'20.8.  |
|          |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 건국대       | '20.12.~'21.6. |
|          | 농어업정책보험 사업군      | KDI       | '20.12.~'21.5. |
|          |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군     | 서울대       | '20.12.~'21.5. |
|          | 정책펀드 사업군         | 자본시장연구원   | '20.12.~'21.6. |
| 2021     | 어촌뉴딜300          | 한국정책학회    | '21.11.~'22.4. |
|          | 창업지원사업군          | 경상대       | '21.11.~'22.4. |
|          | 직접일자리 사업군        | 건국대       | '21.11.~'22.4. |
|          | ICT기금 사업군        | 건국대       | '21.11.~'22.4. |
|          |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업군     | 카이스트      | '21.11.~'22.4. |
|          | 군간부주거지원 사업군      | 국토연구원     | '21.11.~'22.4. |
| 2022.10. | 미정               | 미정        | 미정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실시한 심층평가 과제 6건이 2022년 4월에 완료되어 평가결과 검토 및 환류방안 모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고, 심층평가제도 담당부서 조정을 포함한 내부 직제 검토에 따라 2022년 신규 과제 선정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직제가 개정되면 연내에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년 10월 현재까지 직제가 개정되지 않고 있고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에 1~2개월이 필요하므로<sup>3)</sup> 10월 중에 직제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2022년 11~12월에 신규과제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며, 과제별 평가기간이 통상 5~7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4~6월 중에 평가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2년 신규과제가 사실상 2023년에 대부분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과제의 추진절차도 순연되어 2023년 하반기에 신규과제 선정 후 2024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평가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도 2024년도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제2항<sup>4)</sup>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최근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의 하반기 선정과 평가기관에 교부한 출연금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연례적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 하반기 선정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2022년 신규과제가 2023년 상반기까지 수행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2023년 신규과제로 볼 수 있는 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신규과제 이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신규과제 수행을 위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sup>

---

3) 신규과제 선정과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4)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② 기획재정부장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경우 선정 시기에 관계없이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5) 참고로 신규과제를 매년 하반기에 착수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다른 재정사업평가는 매년 특정 시기에 평가가 완료되어 평가결과를 예산안 요구 시 반영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신규과제의 착수 및 완료시기가 매년 불규칙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다른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비교할 때 평가결과 환류절차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가. 현 황

기후대응기금 인건비<sup>1)</sup>는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억 1,400만원(46.8%) 증액된 19억 2,600만원이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 감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 1,312              | 1,312 | 1,926          | 614 | 46.8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계획안 산출내역을 보면, 한국환경공단의 기후 대응기금 사업수행인원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계획상 사업수행인원 16명보다 11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  | 2023년도 |  |
|--------|--|--------|--|
| 계획     | 산출내역                                     | 계획안    | 산출내역                                     |
| 1,312  | 사업수행인원 16명 인건비<br>1,312백만원 = 16명 × 82백만원 | 1,926  | 사업수행인원 27명 인건비<br>1,926백만원 = 27명 × 71백만원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기후대응기금 7177-101

##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 인건비가 전년 대비 6억 1,400만원(46.8%) 증액되었으나, 기후대응기금은 기본적으로 개별 부처에서 사업수행과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환경공단의 실질적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21명의 인력으로 기금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원(27명)과 인건비 증액규모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의결 당시(2021년 12월 2일)에는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다른 기금 수탁기관의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16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2021년 12월 17일에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 정원이 27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도 인건비 계획안은 정원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sup>2)</sup> 및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제4조제1항<sup>3)</sup>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수탁된 업무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자산운용,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2022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센터에서 21명의 인원이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의 자산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4호의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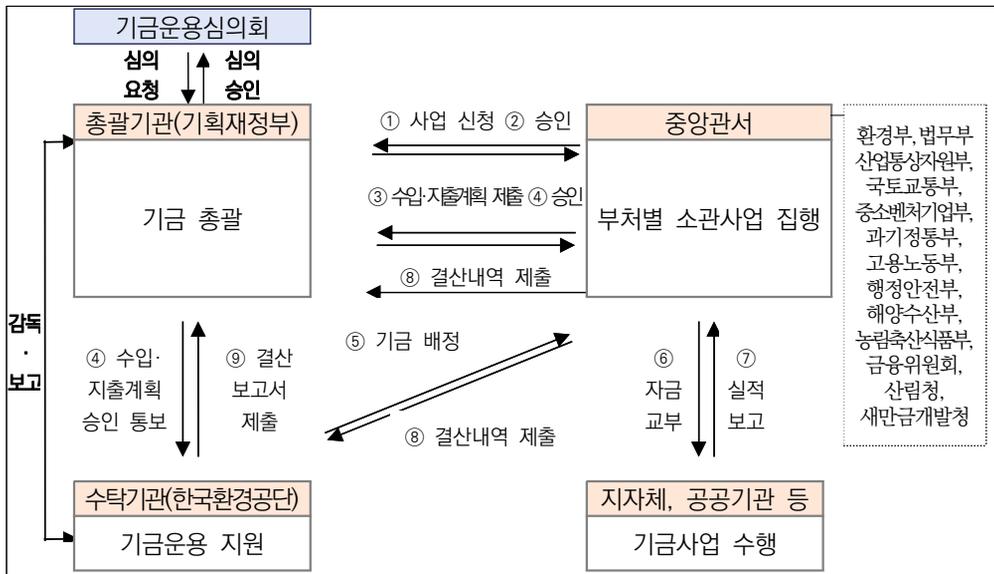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기후대응기금 담당 인력별 업무분장]

| 구분                | 직책(급)  | 분장업무  |
|-------------------|--------|---|
| 센터                | 센터장    | ◦ 기후대응기금센터 업무 총괄  |
| 기금<br>기획부<br>(7명) | 부장     | ◦ 기금기획부 업무 총괄   |
|                   | 차장(2명) | ◦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지원(산업부, 환경부)<br>◦ 관련 규정·지침 제·개정 지원<br>◦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                   | 과장(2명) | ◦ 기재부 정책지원<br>◦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지원(녹색금융 및 기타 부처)<br>◦ 센터(자체) 예산인력 관리, 경영평가 대응                                |
|                   | 대리(2명) | ◦ 기금운용심의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br>◦ 기금운용계획(안) 통계작성<br>◦ 부서 지출 및 실적(교육 등)관리 및 행정업무                                |
| 기금<br>사업부<br>(8명) | 부장     | ◦ 기금사업부 업무 총괄   |
|                   | 차장(1명) | ◦ 기금사업 성과관리·평가관리 지침 등 대·내외 대응<br>◦ 기금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토·분석(해수부, 농림부)   |
|                   | 과장(3명) | ◦ 기금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지침 관리<br>◦ 기금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토·분석(산업부, 환경부, 국토부)<br>◦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대응(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
|                   | 대리(2명) | ◦ 기금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토·분석(녹색금융 및 기타 부처)<br>◦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대응(녹색금융 및 기타 부처)                                |
|                   | 주임(1명) | ◦ 기금사업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토·분석(산림청, 새만금)<br>◦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서 작성 대응(산림청, 새만금)  |
| 기금<br>운용부<br>(5명) | 부장     | ◦ 기금운용부 업무 총괄   |
|                   | 차장(2명) | ◦ 기금 자산운용 지원<br>◦ 기금 수입·지출 집행 관리·분석, 자금 배정 업무(산업부)<br>◦ 집행 관련 규정·지침 제·개정 지원                               |
|                   | 과장(1명) | ◦ 기금 수입·지출 집행 관리, 자금 배정 업무(환경부)<br>◦ 기금 자산운용 지원(자산운용 공시 등)<br>◦ 기금 사업비 정산,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
|                   | 주임(1명) | ◦ 기금 수입·지출 집행 관리, 자금 배정 업무(녹색금융 및 기타 부처)<br>◦ 디브레인(dBrain) 자료 입력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개별 부처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초안 작성과 사업수행 및 성과분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후대응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자산운용,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의 성과관리 등은 대부분 소관 부처 및 기관에서 1차적으로 수행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총괄·취합하는 등의 역할로서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한국환경공단의 실질적인 역할 및 업무량에 비해 정원(27명)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sup>

[기후대응기금 기본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2022년도에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될 당시 정부는 다른 기금 수탁기관의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기금 운용·관리인력을 16명, 인건비를 13억 1,200만원으로 책정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는 국회 의결 후 2주 만에 예산 기준 인원보다 11명이 많은 27명을 정원으로 확정하여 2023년 인건비를 전년 대비 6억 1,400만원(46.8%) 증액 편성하였다.

4) 해당 사업들은 2022년도에 기후대응기금이 설치·운용되기 전부터 소관 부처와 수행기관에서 운영 및 관리해 왔다.

아울러, 2022년 10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21명의 인력이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에 이보다 6명이 많은 27명의 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한국환경공단 기금 운용인력의 정원 및 인건비 증액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sup>

---

5) 참고로, 기후대응기금과 유사하게 다른 부처 수행사업 비중이 높으면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3년 인건비 계획안은 17억 6,900만원이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정원은 18명이다.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고려한 조정 검토 필요

### 가. 현황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sup>1)</sup>은 정부 재정운용에 관하여 분야별 재정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9,000만원(2.9%) 감액된 30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 2,044      | 3,290              | 3,151 | 3,061          | △90 | △2.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sup>2)</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sup>3)</sup>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2445-401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21회계연도 평가)에 따르면 자율평가 대상 단위사업 수가 10개 이상 부처는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흡사업은 예산규모 기준(5% 이상)도 준수하여야 한다.<sup>4)</sup>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등급 사업 내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sup>5)</sup>

## 나. 분석의견

**이 사업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공사비 등 자연감소분 외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성과목표 달성도’와 ‘집행률 제고노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미흡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요구 시 2022년도 본예산 32억 9,000만원의 10%인 3억 2,900만원을 감액한 29억 6,100만원을 요구하기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지출구조조정계획과 달리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30억 6,100만원을 요구하여 이 금액이 편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보다 1억원이 적게 감액되었다.

4) 평가대상 사업 수가 10개 미만인 부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이상’이며, 미흡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가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 지출구조조정계획과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2022<br>본예산<br>(A) | 지출구조조정계획              |                         | 2023예산안   |            |             |
|-------|------------|--------------------|-----------------------|-------------------------|-----------|------------|-------------|
|       |            |                    | 2023<br>예산요구<br>계획(B) | 구조<br>조정<br>금액<br>(B-A) | 부처<br>요구안 | 정부안(<br>C) | 증감<br>(C-A) |
| 재정운용  | 협력기반 구축·운영 | 3,290              | 2,961                 | △329                    | 3,061     | 3,061      | △229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이 사업의 예산과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2022년에 일시적인 공사 및 자산취득소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목)와 자산취득비(430-01목) 예산이 2023년에 각각 미편성,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2023년 자연감소분 외에는 감액된 예산과목이 없고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가 각각 전년 대비 증액됨에 따라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이 사업의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2023년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사업 예산과목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1결산 | 2022본예산(A) | 2023예산안(B) | 증감(B-A) |
|---------|--------|------------|------------|---------|
| 합 계     | 2,044  | 3,290      | 3,061      | △229    |
| 일반수용비   | 795    | 876        | 932        | 56      |
| 공공요금및제세 | -      | 50         | 50         | 0       |
| 임차료     | 45     | 601        | 601        | 0       |
| 일반용역비   | 274    | 329        | 329        | 0       |
| 국내여비    | 371    | 371        | 376        | 5       |
| 국외업무여비  | -      | 142        | 156        | 14      |
| 사업추진비   | 244    | 319        | 324        | 5       |
| 관서업무추진비 | -      | -          | 12         | 12      |
| 일반연구비   | 77     | -          | -          | -       |
| 정책연구비   | 239    | 262        | 262        | 0       |
| 공사비     | -      | 200        | -          | △200    |
| 자산취득비   | -      | 140        | 20         | △120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에 관한 의견수렴과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성과목표 달성도 저조 및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스스로 이 사업의 평가결과를 ‘미흡’으로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0%를 감액하도록 하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자연감소분 외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세물납주식매각대<sup>1)</sup>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납입금을 국고(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는 과목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5,200만원(△4.8%) 감액된 426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과목명       | 2021<br>결산 | 2022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58,661     | 44,849 | 44,849 | 42,697         | △2,152 | △4.8    |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sup>2)</sup>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상의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 기능하며, 납세자에게는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지 않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과세관청은 원활하게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s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일반회계 73-733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상속세 물납은 ①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초과하고, ②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③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때 허용하되,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4)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물납증권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장증권은 현황조사(평가자료 수집 포함) 및 가치평가를 통해 매각을 실시하고, 미 매각시에는 매년 재평가 후 다시 매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방식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온비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우선실시하며,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최종 회차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차기 입찰 전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나. 분석의견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최근 수납추이, 물납주식 위탁보유 규모, 정부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세입예산안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은 최근 3년 간 평균 국세물납주식 매각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3) 「국유재산법」

####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4)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2023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산출내역]

| 구 분       | 산출내역                                       |
|-----------|--|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2020·2021년 수납액 및 2022년 예산액(128,091백만원) ÷ 3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0년 수납액이 389억 1,500만원, 2021년 수납액이 586억 6,100만원, 2022년 예산액이 448억 4,900만원으로 해당 금액들을 더하면 총 1,424억 2,500만원(연평균 474억 7,5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산정한 1,280억 9,100만원보다 143억 3,400만원 많다.

[최근 4년 간 연도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예산액 대비 수납률(C/A)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C/B) |
|---------|--------|----------|--------|-----------------|-------------------|
| 2019    | 27,768 | 53,995   | 53,995 | 194.5           | 100.0             |
| 2020    | 34,373 | 38,915   | 38,915 | 113.2           | 100.0             |
| 2021    | 41,638 | 63,907   | 58,661 | 140.9           | 91.8              |
| 2022.7. | 44,849 | 34,580   | 34,580 | 77.1            |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 비상장 우량기업 물납주식 143억원어치를 매각하였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매각 건은 예외적 사례라고 보아 제외하여 예산안을 산출하였다는 입장이나, 매각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해서 해당 건을 과거 수납실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납증권 위탁보유 및 매각현황을 보면, 2021년에 위탁보유 규모가 9,238억원으로 2019년, 2020년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 8월말 기준 물납증권 위탁보유액이 9,169억원에 이르고 있다. 물납주식 매각금액도 2021년 569억원, 2022년 8월말 기준 395억원으로 이러한 추이대로라면 2022년 매각금액이 5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sup>5)</sup>

5) 연도별 수납액과 매각금액 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매각금액이 국고에 귀속되기까지 1~2개월의 시차

[국세물납주식 위탁보유 및 매각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8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보유(A) <sup>1)</sup> |              | 7,958 | 5,900 | 5,668 | 9,238 | 9,169  |
| 매각 규모                          | 물납금액 기준(B)   | 213   | 549   | 420   | 542   | 195    |
|                                | 매각금액 기준(C)   | 572   | 676   | 373   | 569   | 395    |
| 매각률                            | 물납금액 기준(B/A) | 2.7   | 9.3   | 7.4   | 5.9   | 2.1    |
|                                | 매각금액 기준(C/A) | 7.2   | 11.5  | 6.6   | 6.2   | 4.3    |

주: 1)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의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물납주식에 대한 수요 다변화 및 확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2021년 4월에 발표하여<sup>6)</sup> 물납주식 매각률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은 전년 대비 금액 조정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예산 편성 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 있고, 매각금액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기 때문이다.

- 6) 이는 물납주식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고 물납주식의 수요를 다변화하려는 취지로서 비상장 물납주식의 매각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납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납부의무자로 수요가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물납주식의 수요자를 다변화하려는 조치는 물납주식 매입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021.4.23.)의 주요내용]

| 물납주식의 적정 시장가치 반영   | 물납주식에 대한 수요 다변화   |
|--|---|
| ① 우량 물납기업 <sup>1)</sup> 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자본환원율 <sup>2)</sup> 을 시장 평가에 준하는 수준(자기자본비용 <sup>3)</sup> 으로 조정 | ①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sup>4)</sup>   |
| ②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정체기업)을 선정하여 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확대(현행 20% → 40%)                        | ② 주요 물납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게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매각 제도 활성화 |
| ③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sup>5)</sup>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적정가치 산출                               | ③ 소액투자자 등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완화  |

주: 1) 물납기업 중 코스닥 상장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분류  
 2) 미래 배당가능액을 현재가치화 하는 할인율 (수익가치=미래배당가능액÷자본환원율)  
 3)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  
 4) 수탁 후 두 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기업에 대해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 허용  
 5) 시장에서 통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캠코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가치 비교  
 자료: 「물납주식 매각활성화 방안(2021. 4. 23.)」,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최근 수납추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납주식 위탁보유 규모, 정부의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 국세 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7)</sup>

7)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국세물납주식매각대를 증액하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금 규모를 줄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

## 가. 현 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하 “세종계정”)으로 계정이 구분된다.

한편, 전년도세계잉여금<sup>1)</sup>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sup>2)</sup>을 법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과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5조<sup>3)</sup>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은 각각 220억 4,600만원, 46억 3,900만원이다.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과목명            | 2021<br>결산 | 2022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전년도세계잉여금(제주계정) | -          | -    | -     | 22,046         | 22,046 | 순증      |
| 전년도세계잉여금(세종계정) | 8,280      | -    | -     | 4,639          | 4,639  | 순증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893
- 2)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 공제)에서 다음연도이월액을 차감한 것이다.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나. 분석의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의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계정 세출예산 집행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 증액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2023년도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안은 각각 2021년도 결산 결과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2년도 결산 결과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 과목명           | 2023<br>예산안 | 산출내역                                    |
|---------------|-------------|---|
| 일반회계전입금(제주계정) | 22,046      | '21년도 결산상잉여금(263억원) - '21년도 세출이월액(42억원) |
| 일반회계전입금(세종계정) | 4,639       | '21년도 결산상잉여금(61억원) - '21년도 세출이월액(14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2022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2년도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예산상 세입과목을 보면, 제주계정은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일반회계전입금과 특별회계전입금은 예산액만큼 수납될 예정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도 안정적인 수납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7월말 기준 제주계정 세입은 예산 대비 수납률이 78.1%, 세종계정 세입은 예산 대비 수납률이 83.3%로, 이러한 수납추이가 유지되는 경우 예산액보다 과소 수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및 세종계정 2022년도 세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1결산  | 2022예산(A) | 2022.7.수납(B) | 예산대비 수납률(B/A) |
|------|---------|-----------|--------------|---------------|
| 제주계정 | 240,167 | 270,408   | 211,271      | 78.1          |
| 세종계정 | 63,769  | 71,602    | 59,653       | 83.3          |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출측면을 보면, 제주계정은 2022년도 8월말 기준 집행률이 84.2%, 세종계정은 같은 시점 기준 집행률이 61.4%를 기록하고 있어 집행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계정마다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제주계정의 불용액은 60억 9,500만원, 181억 6,400만원, 같은 해 세종계정의 불용액은 96억 3,900만원, 34억 1,100만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에도 각 계정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 예산(A) | 2022.8. 집행(B) | 예산대비 집행률(B/A) | 불용액   |        |
|------|------------|---------------|---------------|-------|--------|
|      |            |               |               | 2020  | 2021   |
| 제주계정 | 269,271    | 226,847       | 84.2          | 6,095 | 18,164 |
| 세종계정 | 71,602     | 43,931        | 61.4          | 9,639 | 3,411  |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은 2022년도에 세입측면에서 세입수납 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측면에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계정의 10월 말 기준 집행추이를 지켜본 후 불용액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년도세계잉여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지균형을 맞추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년도세계잉여금 예산 증액규모만큼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각 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은 계정별 세출총액에서 자체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과 보전수입(전년도세계잉여금, 특별회계전입금)을 제외한 세입부족분으로 책정되며, 각 계정의 2023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안은 제주계정 2,328억 5,400만원, 세종계정 508억 3,200만원이다.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세종계정 일반회계전입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과목명           | 2021<br>결산 | 2022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전입금(제주계정) | 230,886    | 253,525 | 253,525 | 232,854        | △20,671 | △8.2    |
| 일반회계전입금(세종계정) | 63,279     | 71,584  | 71,584  | 50,832         | △20,752 | △29.0   |

자료: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 중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sup>1)</sup>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탁·운용·관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100만원 감소(6.6%)한 1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결산 | 2022  |       | 2020<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경상운영비 | 1,011  | 1,078 | 1,078 | 1,007          | △71 | △6.6    |

자료: 기획재정부

경상운영비의 예산과목(세목 단위)별 계획안을 보면, 민간위탁사업비가 8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 4,600만원, 국외업무여비 3,200만원, 관서업무추진비와 일반연구비가 각각 3,000만원, 사업추진비 1,7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 예산과목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2계획(A) | 2023계획안(B) | 증감(B-A) |
|------------------|-----------|------------|---------|
| 경상운영비            | 1,078     | 1,007      | △71     |
| 일반수용비(210-01목)   | 52        | 46         | △6      |
|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 -         | 2          | 2       |
| 국내여비(220-01목)    | 15        | 15         | 0       |
| 국외업무여비(220-02목)  | 34        | 32         | △2      |
| 사업추진비(240-01목)   | 18        | 17         | △1      |
|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 32        | 30         | △2      |
| 일반연구비(260-01목)   | 30        | 30         | 0       |
|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 897       | 836        | △61     |

자료: 기획재정부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25)

1) 코드: 국유재산관리기금 3579-201

## 나. 분석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하는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금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업무를 「국유재산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금 운용·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의 예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교부하는 민간위탁사업비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등이 2023년도 계획안 기준 1억 7,100만원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영 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것이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추진, 각종 기관과의 업무협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해외사례 조사 및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관련 해외현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상경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상운영비 예산, 특히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의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

### 2) 「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영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고국의 업무이고, 국고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국 소관 기본경비<sup>4)</sup>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업무관리 사업<sup>5)</sup>에도 국유재산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고운용 관련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국고국 기본경비와 국고업무관리 사업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에도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sup>7)</sup>

둘째,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교부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도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 운용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업무협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sup>8)</sup> 또한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등을 위한 해외현지 조사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sup>9)</sup>을 통해서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관리·운용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한 기금이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이나, 이 중 대외경제협력기금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교부하는 민간위탁사업비 외에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하는 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후대응기금의 운영비 중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예산 규모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각각 28.1%, 53.2% 수준에 불과하다.

4) 2023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에 국외업무여비가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편성되어 있다.

5) 코드: 일반회계 2233-302

6) 2023년도 예산안은 5억 3,700만원으로, 이 중 국외업무여비가 2,700만원,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편성되어 있다.

7) 참고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국고국)의 집행률은 2021년 72.7%, 2022년 7월말 기준 23.7%로 높지 않다.

8)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용업무를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였고, 위탁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경상경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를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사무가 회계 사무,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수탁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9)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주재관은 25명이다.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기후대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국유재산관리기금<br>경상운영비 | 기후대응기금<br>기금운영비 | 대외경제협력기금<br>기금관리비 |
|-------------------------|-------------------|-----------------|-------------------|
| 합 계                     | 1,007             | 772             | 3,856             |
| 일반수용비(210-01목)          | 46                | 64              |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 2                 | -               | -                 |
| 국내여비(220-01목)           | 15                | 15              | -                 |
| <b>국외업무여비(220-02목)</b>  | <b>32</b>         | <b>9</b>        | -                 |
| <b>사업추진비(240-01목)</b>   | <b>17</b>         | <b>14</b>       | -                 |
| <b>관서업무추진비(240-02목)</b> | <b>30</b>         | <b>11</b>       | -                 |
| 일반연구비(260-01목)          | 30                | 100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 836               | 559             | 3,856             |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 경상운영비 중 국외업무여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은 총괄계정·용자계정·차관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용자계정은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공자기금 용자계정의 장애인자립자금 용자사업<sup>1)</sup>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용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자립자금 용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으로 편성되며, 이와 연동되는 “이차 및 손실보전금 사업”<sup>2)</sup>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집행되어 2개 부처가 관할한다.

[2023년도 공자기금 장애인자립자금 용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장애인자립자금용자 | 1,400      | 700                | 700   | 560            | △140 | △20.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장애인자립자금 용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재원 편성부처(기획재정부)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보건복지부)가 분리되어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자립자금 용자 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번호 4531-300

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사업 코드번호 1534-300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으로 기금운용평가 시 미흡 판정을 받아왔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65억 1,800만원에서 2022년 7억원, 2023년 예산안 기준 5억 6,000만원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계획 감액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2018년 18.3%, 2019년 27.8%, 2020년 24.4%, 2021년 34.2%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50% 감액된 2022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7월 기준 실집행률은 31.4%에 그친다.

[공자기금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계 획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계획현액<br>(A) | 실집행액<br>(B) | 집행률<br>(B/A) | 다음연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    |            |           |             |             |              |             |       |
| 2018   | 6,518 | 6,518 | 0          | 0         | 6,518       | 1,190       | 18.3         | 0           | 5,328 |
| 2019   | 3,814 | 3,814 | 0          | 0         | 3,814       | 1,060       | 27.8         | 0           | 2,754 |
| 2020   | 3,432 | 3,432 | 0          | 0         | 3,432       | 839         | 24.4         | 0           | 2,593 |
| 2021   | 1,400 | 1,400 | 0          | 0         | 1,400       | 479         | 34.2         | 0           | 921   |
| 2022.7 | 700   | 700   | 0          | 0         | 700         | 220         | 31.4         |             |       |

자료: 기획재정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부진 원인은 과거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및 융자 신청자 대비 대출 결정 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자립자금 융자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특히, 금융기관의 융자 결정 비율(지자체 추천 대비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이 26.6%(=33명/124명)로 매우 낮은데, 이는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불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3)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의 융자 미추천 사유로 소득인정액 초과와 본인중도포기를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중도포기 사유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의 어려움이나 융자 절차의 복잡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용자 신청 대비 실적(인원,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용자 신청 |       | 지자체 추천 결정 |       | 금융기관 대출 결정 |     | 신청 대비<br>대출 결정 비율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284   | 4,625 | 124       | 2,044 | 33         | 479 | 11.6%             | 10.3% |

주: 1. 지자체 용자 미추천 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로 대여기준에 부적합, 본인포기 등

2. 금융기관용자불가결정 사유: 금융기관 여신기준(자체규정) 미충족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용자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시 국가가 손실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 기준에 따라 용자가 거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9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것”을 시정요구<sup>4)</sup>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여전히 보건복지부 이관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자립자금 용자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재원 편성부처(기획재정부)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보건복지부)가 분리되는 등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자립자금 용자 사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또한 공자기금의 용자계정은 수입 지출 구조에 따라 용자 사업 실시라는 계정 설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용자 사업을 점차 축소하거나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용자계정은 조달금리(국채발행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 구조적인 조달차손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기금 내 총괄 및 차관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활용하여 왔고, 2023년 예산안에서도 용자계정의 수입으로 계정간 예수금이 2,700억원 편성되었다. 그 결과 용자 계정은 자체 수입 부족에 따른 공자기금 계정 내 예탁금 증가로 인해 용자 계정의 지출 중 상당부분이 용자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예산안 기준 용자 계정의 지출에서 공자기금 내 계정간 원리금 상환 비중은 88.6%(=(원금상환6,302억 700만원+이자상환112억5,700만원)/용자계정지출총액 7,238억 7,800만원)에 달한다.

### 가. 현 황

기후대응기금<sup>1)</sup>의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사업<sup>2)</sup>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초기단계 탄소중립 핵심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정책금융인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하 'KDB 넷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후대응기금에 500억원의 계획안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2년의 계획 금액 1,300억원 대비 800억원 감소(△61.5%)한 규모이다.

[2023년도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 0          | 130,000            | 130,000 | 50,000         | △80,000 | △61.5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은행의 KDB 넷제로 프로그램 지원분야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나, 민간참여 여건이 미성숙단계에 있어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이다. 즉, 초기단계 녹색기술 사업은 상업적 위험 등으로 민간자금만으로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자금 조달 부족(Funding Gap)이 발생하는 바,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탄소중립 핵심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KDB 넷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n@assembly.go.kr, 6788-3731)

1)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2)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300

2023년 계획안에서는 타 기금과의 중복 지원 배제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지원분야 중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수소인프라 및 그린혁신기술·기업을 지원분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용규모는 1,200억원이며, 이에 재정분담률 41.6%를 반영하여 출자 규모를 500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재정분담률 41.6%를 제외한 나머지 58.4%(700억원)는 한국산업은행이 자체자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계획(안) 세부 산출 근거(2022,2023)]

| '22년 계획  | '23년 계획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운용규모 3,000억원</li> <li>기후대응기금 출자 1,300억원<br/>= 3,000억원 × 43.3%<br/>(재정분담률 43.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운용규모 1,200억원</li> <li>기후대응기금 출자 500억원<br/>= 1,200억원 × 41.6%<br/>(재정분담률 41.6%)</li> </ul> |
| (지원분야) ①재생에너지, ②수소인프라, ③그린혁신기술기업   | (지원분야) ①수소인프라, ②그린혁신기술기업<br>↳ '22년 지원분야 중 재생에너지 제외   |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의 KDB 넷제로 프로그램 운용규모 1,200억원은 아래와 같이 수소인프라 및 그린혁신기술·기업 분야의 시장동향 및 지원분야별 사업 계획 등을 감안한 지원 가능 예상 물량의 예상 총 사업비 5,200억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이 중,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Funding Gap 해소를 위해 약 25%(23.1%) 수준인 1,200억원을 후순위 대출, 직·간접 투자 등의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다.<sup>3)</sup> 1,200억원 중 정부 재정 지원 금액은 500억원이다.

3)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용규모(1,200억원) 한도 내 지원분야·지원방식별 금액은 실제 금융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통합운용)할 계획이다.

[2023년 KDB 넷제로 프로그램 예상 총 사업비 및 프로그램 활용 예시]

(단위: 억원)

| 구 분               |       | 예상 총사업비      |      |                  | KDB 탄소 넷제로 <sup>1)</sup> |             |              | 민간투자 <sup>1)</sup> |             |      |
|-------------------|-------|--------------|------|------------------|--------------------------|-------------|--------------|--------------------|-------------|------|
|                   |       | 금액           | 물량   | 단가 <sup>2)</sup> | 계                        | 대출<br>(후순위) | 투자<br>(간접직접) | 계                  | 대출<br>(선순위) | 투자 등 |
| 수소                | 소계    | 4,150        | -    | -                | 900                      | 500         | 400          | 3,250              | 2,440       | 810  |
| 인프라 <sup>3)</sup> | 연료전지  | 3,775        | 60MW | 63               | 800                      | 400         | 400          | 2,975              | 2,250       | 725  |
|                   | 수소충전소 | 375          | 25기  | 15               | 100                      | 100         | 0            | 275                | 190         | 85   |
| 그린혁신기술·기업         |       | 1,050        | 25개  | 42               | 300                      | 0           | 300          | 750                | 650         | 100  |
| 계                 |       | <b>5,200</b> | -    | -                | <b>1,200</b>             | 500         | 700          | 4,000              | 3,090       | 910  |

주: 1) 각 분야별 지원방식과 비율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구조를 예시한 것임

2) 선행·유사사업 사례 등 참조(ex. 연료전지: K사업(55.2억/MW), G사업(70.7억/MW)의 평균 등)

3)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전 분야에 대하여 지원 할 예정이며,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는 대표 예시임

1. 민간투자 유치효과: 3.3배(민간투자 4,000억원 ÷ 프로그램 운용규모 1,200억원)

2.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연 7만톤(국가 전체 감축량 291백만톤의 약 0.02% 수준)

자료: 한국산업은행

## 나. 분석의견

기후대응기금의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자금 인출 일부가 2024년도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고려하여 2023년도 계획안 규모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계획 금액 1,300억원을 바탕으로, KDB 넷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중인 사업은 2022년 7월 말 현재 아래의 3건이다. 총 사업비는 1조 3,240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22.7% 수준인 3,000억원이 KDB 넷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다. 해당 3개 사업의 금융약정은 2022년 4분기에 체결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2년도 지원예상 주요 사업(2022년 7월 말 기준)]

(단위: 억원)

| 지원분야            | 사업명            | 금융약정 체결<br>예상시기 <sup>1)</sup> | 예상<br>총사업비 <sup>2)</sup> | KDB 넷제로<br>프로그램 <sup>2)</sup> |
|-----------------|----------------|-------------------------------|--------------------------|-------------------------------|
| 재생에너지<br>(해상풍력) | J 99MW 해상풍력    | '22.4분기                       | 7,000                    | 1,500                         |
| 수소인프라           | I 액화수소 플랜트     | '22.4분기                       | 5,540                    | 1,300                         |
| 그린혁신기술·기업       | D 탄소포집 CCUS 사업 | '22.4분기                       | 700                      | 200                           |
| 합 계             |                |                               | 13,240                   | 3,000<br>(22.7%)              |

주: 1) 금융약정 체결 예상시기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 변동 가능

2) 예상치로, 실제 금융구조 검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기 3개 사업의 2022년 7월까지의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실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실사 및 금융약정 진행은 ① 금융실사 수행 → ② 금융조건 확정 → ③ 사업설명서 (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 ④ 금융약정서 협의 및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사업 특성 및 사업주,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의 진행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상이하나, 금융실사 수행 시작부터 금융약정 체결까지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3개 사업은 모두 2022년 4분기 또는 11~12월에 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 자금 인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2년도 KDB 넷제로 프로그램 지원예상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안)]<sup>1)</sup>

| 구 분            | 일자       | 주요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
|----------------|----------|-----------------|---|
| J 99MW<br>해상풍력 | 진행<br>경과 | '21. 5월         | ■ 금융실사(Due Diligence) 착수  |
|                |          | '21. 12월        | ■ 주민(어업조합) 동의 완료  |
|                |          | '22. 4월         | ■ 환경영향평가 완료<br>■ 예비 대주단 앞 잠정 금융조건(Indicative Term Sheet) 배포 및 협의 완료 |
|                | 향후<br>계획 | '22. 9월         | ■ 금융실사 완료 및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                        |

| 구 분               |          | 일자             | 주요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
|-------------------|----------|----------------|---|
|                   |          | '22.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세부조건 협의</li> <li>주기기(풍력터빈) 구매계약 세부조건 협의</li> </ul>                                     |
|                   |          | '22.11~<br>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li> <li>주기기(풍력터빈) 구매계약 체결 및 주기기(풍력터빈) 발주</li> <li><b>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인출</b></li> </ul> |
| I 액화수소<br>플랜트     | 진행<br>경과 | '21.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주사 설립</li> <li>주기기(수소액화설비) 발주</li> </ul>  |
|                   |          | '21.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 정지공사 착수</li> </ul>  |
|                   |          | '22.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공사 착공</li> </ul>  |
|                   |          | '22.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금융실사(Due Diligence) 착수</b></li> </ul>   |
|                   | 향후<br>계획 | '22.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 대주단 앞 잠정 금융조건(Indicative Term Sheet) 배포</li> <li>금융실사 완료 및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li> </ul>    |
|                   |          | '22. 4Q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금융기관 LoC(Letter of Commitment) 제출</li> <li><b>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인출</b></li> </ul>                               |
| D 탄소포집<br>CCUS 사업 | 진행경과     | '22.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금융실사(Due Diligence) 착수</b></li> </ul>   |
|                   | 향후<br>계획 | '22.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도급(EPC) 계약, 유틸리티 공급계약 주요사항 협의 완료</li> </ul>  |
|                   |          | '22.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 대주단 앞 잠정 금융조건(Indicative Term Sheet) 배포</li> <li>금융실사 완료 및 사업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 배포</li> </ul>    |
|                   |          | '22.11~<br>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도급(EPC) 계약, 유틸리티 공급계약 체결 및 기자재 발주</li> <li><b>금융약정 체결 및 최초인출</b></li> </ul>                                |
|                   |          | '23. 2Q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관련 인허가 완료</li> <li>부지굴착 및 공사 개시</li> </ul>   |

주: 1)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부일정 일부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산업은행

정부가 KDB 넷제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은, 탄소중립 핵심기반의 조기구축을 위해 관련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소요 재원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금융 해당 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기 3개 사업의 각각의 자금 수요에 따른 향후 자금 인출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에 따른 KDB 넷제로 프로그램(후순위 대출)을 통한 지원 금액 3,000억원 중 2022년까지의 소요 예상 금액은 317억원에 불과하며, 26.6%에 해당하는 797억원은 2024년 이후에 인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2024년 이후에 인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797억원 중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이루어진 2022년 기후대응기금 계획상의 재정분담률 43.3%에 해당하는 345억원은 2023년까지도 사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해당 금액의 활용을 고려하여, 2023년도 출자 계획안 규모를 일부 감액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6)</sup>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9. 출자금 (460쪽)

2. 세부지침

□ 일반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출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

5)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예산감액을 검토할 경우 실제 건설진행 상황 등에 따라 해당시기별 분할 인출금의 규모가 변동 가능한 점(금융기관은 기성에 따라 통상 향후 3개월 이후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을 기표하며, 자금 기표시기는 차주의 필요시마다 가능), 금융약정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대출의무를 부담하므로 감액된 예산이 차년도에는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6) 또한,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약정 체결 시 약정 한도 내에서 대출금 제공을 약속하며, 차주가 인출 선행요건 충족 시 해당 한도 내에서 대출금을 기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 사업의 성과평가는 자금인출이 아닌 금융약정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설명하였다.

[2022년도 KDB 넷제로 프로그램 지원대상 사업의 향후 각 사업별 자금 수요 및 인출 스케줄 계획(안)<sup>1)</sup>

(단위: 억원)

| 구 분                          | 2022         | 2023        |             | 2024        |                       | 합 계   |
|------------------------------|--------------|-------------|-------------|-------------|-----------------------|-------|
|                              | ~'22.<br>하반기 | '23.<br>상반기 | '23.<br>하반기 | '24.<br>상반기 | '24.<br>하반기~          |       |
| J 99MW<br>해상풍력               | 0            | 407         | 296         | 387         | 410                   | 1,500 |
| I 액화수소<br>플랜트                | 317          | 827         | 156         | 0           | 0                     | 1,300 |
| D 탄소포집<br>CCUS 사업            | 0            | 200         | 0           | 0           | 0                     | 200   |
| 합계                           | 317          | 1,434       | 452         | 387         | 410                   | 3,000 |
| 넷제로<br>(후순위대출)<br>(각 연도별 합계) | 317          |             | 1,886       |             | <b>797</b><br>(26.6%) | 3,000 |
| 재정분담<br>(43.3%)              | 138          |             | 817         |             | <b>345</b><br>(26.6%) | 1,300 |

주: 1) 잠정치이며, 총 사업비 변동, 금융구조 협의과정, 사업 진행경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가. 현 황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sup>1)</sup>은 철강, 정유, 시멘트 등 12대<sup>2)</sup>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및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 계획안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558억원 증가한 1,47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br>용자지원 | 0          | 150,000            | 91,200 | 147,000        | 55,800 | 61.2    |
| 용자지원                  | 0          | 150,000            | 90,000 | 145,000        | 55,000 | 61.1    |
| 이차보전                  | 0          |                    | 1,200  | 2,000          | 800    | 66.7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예산안은 15개 기업(2022년 선정 기업 계속 지원 9개, 2023년 신규 지원 6개 기업)에 평균 100억원을 용자 지원하고, 10개 기업(2022년 선정 계속 지원 6개, 2023년 신규 4개 기업)에 평균 2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용자지원은 기업 당 투자금액의 50~100%를 최대 500억원 까지 지원한다. 용자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 중 용자비율을 차등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400

2) 12대 업종에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섬유·제지, 전자·전자, 기계, 조선, 바이오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된다.

별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에서는 대출잔액(대출총액 - 상환액)에 이차보전율(2.0%)을 적용한 이차비용을 최대 10년간 프로젝트당 연 10억원을 상한으로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산출내역]

| 구분   | 2022년 계획                                 | 2023년 계획안   |
|------|--|---|
| 용자지원 | · 10,000백만원/기업 × 신규 9개 기업<br>= 90,000백만원 | · 9,667백만원/기업 × 15개 기업<br>(신규 6개, 계속 9개) = 145,000백만원 |
| 이차보전 | · 200백만원/기업 × 신규 6개 기업<br>= 1,200백만원     | · 약 200백만원/기업 × 10개 기업<br>(신규 4개, 계속 6개) = 2,00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기업이 용자 또는 이차보전을 신청 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적합성 검토 실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설치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기술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자금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리고 용자지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용자취급은행에 용자금을 대여하고 기업이 해당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지원 용자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 구분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 · 12대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투자<br>- 기술·제품·공정개발 및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
| 지원규모 | · 기업 당 투자금액의 50~100% 용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br>-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
| 지원조건 | 용자지원<br>·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0년 용자<br>- 최대 500억원, 이자율은 공공자금 대출금리 - 2.0%p             |
|      | 이차보전<br>· 최대 10년간 이차보전 지원<br>· 이차보전금 상한: 프로젝트 당 연 10억원<br>- (대출총액 - 상환액) × 이차보전율(2.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용자지원은 2022년 9월 현재 17개 기업에 대한 1차 자금추천 후 시중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이차보전 지원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중 민간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차보전 지원 대상도 용자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였고, 용자지원 대상 중 대기업 또는 용자신청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다.

## 나. 분석의견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은 2022년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보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사업 목표 대비 효과 부족이 우려되므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단순 교체하는 프로젝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특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곤란한 정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sup>3)</sup> 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동 사업의 2023년 용자 및 이차보전에 따른 기대효과 예상치를 명시하고 있다. 예상치는 2023년 용자 및 이차보

3)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정량사업, 정성사업, R&D사업으로 분류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이 중 온실가스 감축경로에 따른 감축량 정량화 방법이 정형화되지 않아 감축량의 정량화가 곤란한 사업인 정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 금액에 경험적 원단위<sup>4)</sup>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3년 용자 및 이차보전 계획안 1,470억원 투입에 따른 총온실가스 감축 예상치는 연간 30만 4,437tCO<sub>2</sub>eq으로 기대되고 있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  |
|--|
| · 총온실가스 감축량(tCO <sub>2</sub> eq)/연간 = 지원금액(백만원) × 경험적 원단위 계수(tCO <sub>2</sub> eq/백만원)      |
| · 304,437(tCO <sub>2</sub> eq)/연간 = 147,000백만원(2023년 계획안) × 2.071(tCO <sub>2</sub> eq/백만원) |

주: tCO<sub>2</sub>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09.02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도출된 경험적 원단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존 유사 사업인 클린팩토리구축 사업과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의 2020~2021년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해 2.071tCO<sub>2</sub>eq/백만원으로 도출되었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근거]

| 회계   | 사업         | 지원금액<br>(백만원) | 온실가스감축량<br>(tCO <sub>2</sub> eq) | 경험적 원단위<br>산출계수<br>(tCO <sub>2</sub> eq/백만원) |
|------|------------|---------------|----------------------------------|--|
| 2020 | 클린팩토리구축 사업 | 2,474         | 3,472                            | 1.403  |
| 2021 | 클린팩토리구축 사업 | 16,146        | 33,148                           | 2.053  |
|      | 청정제조기반구축   | 2,232         | 6,561                            | 2.940  |
| 합계   |            | 20,852        | 43,181                           | 2.071  |

주: tCO<sub>2</sub>eq(Carbon dioxide equivalent)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022.09.02

동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총 51개 업체로부터 용자 신청을 접수 받았으며, 이 중 17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추천을 하고 취급은행에서 대출 여부를 심사 중이다. 자금추천을 받은 17개 프로젝트의 총 용자신청액은 1,367억 2,400만원 규모이며, 이를 통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은 총 530만 1,820tCO<sub>2</sub>eq이고, 총용자신

4) 경험적 원단위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유사 사업이나 과거 실적 등을 바탕으로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된 계수이다.

청액 백만원 당 연간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은 38.8tCO<sub>2</sub>eq 수준이다. 동 사업의 1차 자금추천 프로젝트에 나타난 총융자신청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제시된 기대목표치 2.071tCO<sub>2</sub>eq/백만원을 초과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2022년 1차 자금추천 프로젝트(용자)]

| 분야                 | 지원기간            | 총융자<br>신청액<br>(백만원,A) | 연간<br>온실가스<br>감축량<br>(tCO <sub>2</sub> eq,B) | 총융자신청액<br>당 온실가스<br>감축량(B/A) | 기대목표 보다<br>온실가스<br>감축량이 적은<br>프로젝트 |
|--------------------|-----------------|-----------------------|--|------------------------------|------------------------------------|
| 석유화학               | 2021.10~2023.12 | 18,000                | 240,890                                      | 13.38                        |                                    |
| 석유화학               | 2022.07~2022.12 | 500                   | 2,800  | 5.60                         |                                    |
| 섬유                 | 2022.01~2024.12 | 24,590                | 5,053  | 0.21                         | ○                                  |
| 자원순환               | 2022.10~2023.09 | 5,000                 | 733  | 0.15                         | ○                                  |
| 자원순환               | 2022.07~2023.12 | 6,620                 | 30,110                                       | 4.55                         |                                    |
| 자원순환               | 2022.05~2024.12 | 9,374                 | 11,765                                       | 1.26                         | ○                                  |
| 전기전자               | 2022.07~2022.12 | 12,000                | 2,194  | 0.18                         | ○                                  |
| 전기전자               | 2022.01~2022.12 | 1,200                 | 105,000                                      | 87.50                        |                                    |
| CO <sub>2</sub> 활용 | 2022.10~2024.12 | 1,000                 | 1,224  | 1.22                         | ○                                  |
| CO <sub>2</sub> 저장 | 2022.08~2023.12 | 3,250                 | 951  | 0.29                         | ○                                  |
| CO <sub>2</sub> 포집 | 2022.07~2023.12 | 23,640                | 67,200                                       | 2.84                         | ○                                  |
| 에너지 효율향상           | 2022.10~2022.12 | 4,300                 | 4,060  | 0.94                         | ○                                  |
| 디스플레이              | 2022.07~2024.12 | 3,300                 | 1,711  | 0.52                         | ○                                  |
| 수소 생산              | 2022.09~2024.12 | 5,000                 | 4,543,598                                    | 908.72                       |                                    |
| 시멘트                | 2021.10~2023.06 | 17,850                | 27,869                                       | 1.56                         | ○                                  |
| 에너지 전환             | 2022.09~2024.12 | 500                   | 3,648  | 7.30                         |                                    |
| 기타                 | 2022.08~2023.12 | 600                   | 253,014                                      | 421.69                       |                                    |
| 합 계                |                 | 136,724               | 5,301,820                                    | 38.8                         |                                    |

주: 기대효과보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은 프로젝트는 연간 백만원 당 온실가스 감축량이 2.071 tCO<sub>2</sub>eq 미만인 프로젝트로 분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17개 프로젝트 중 기존 유사 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인 2.071tCO<sub>2</sub>eq/백만원 미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10개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기존 유사 사업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이 낮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전체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이 크게 나타난 것은 수소 생산 관련 프로젝트 등 일부 프로젝트에서 감축계획량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명시된 정량사업과 비교할 경우,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을 통한 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타 사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용자)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예산 백만원 당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24tCO<sub>2</sub>eq으로,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사업에서는 3.630 tCO<sub>2</sub>eq으로 제시하고 있다.<sup>5)</sup>

[산업부 소관 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 회계   | 사업            | 2023<br>예산안(A)<br>(백만원) | 예산 대비 감축량<br>(tCO <sub>2</sub> eq/<br>백만원, B) | 2024년<br>감축량 예상<br>(tCO <sub>2</sub> eq) |
|------|---------------|-------------------------|---|--|
| 에특회계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 263,334                 | 1.924   | 450,318                                  |
| 기후기금 |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 11,700                  | 3.630   | 42,471                                   |

주: tCO<sub>2</sub>eq(Carbon dioxide equivalent)은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의미  
 자료: 각 사업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용자 사업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2022년 지원대상 중 상당수가 2020~2021년 지원된 기존 사업에 비해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적고, 2022년 지원 중인 타 사업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사

5)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내 대표 중소·중견기업에게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플랜트 구축 및 성과확산 비용을 지원 하는 민간보조 사업이다.

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은 2022년 자금추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기존 유사 사업보다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동시에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이러한 사업목표를 반영하여 자금 신청 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기술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적합성 검토에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격 여부를 검토하며, 기술성 평가에서는 정책적 부합성, 기술역량, 시장잠재력, 경영역량 등이 평가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기술성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정책적 부합성<br>(25점) |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7점)    | 7점   |
|                  | 투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10점)    | 10점  |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신뢰도(8점)      | 8점   |
| 기술역량<br>(50점)    | 기술혁신성(14점)               | 14점  |
|                  | 기술경쟁력(20점)               | 20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추진 역량(16점)   | 16점  |
| 시장잠재력(15점)       | 향후 10년의 시장 규모와 매출목표(15점) | 15점  |
| 경영역량<br>(10점)    | 저탄소 친환경추진 현황(4점)         | 4점   |
|                  | 계획수립의 충실도(6점)            | 6점   |
| 합 계              |                          | 100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의 기술성 평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량 산정의 신뢰도 등이 포함된 정책적 부합성 25점, 선도프로젝트의 도전성과 기술경쟁력 등이 포함된 기술역량 50점, 향후 시장잠재력 15점, 경영역량 10점 등의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 평가점수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

기술성 평가에서는 다른 평가 항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평가점수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기술력이나 향후 매출 가능성 등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낮은 수준이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2022년 1차 자금추천이 이루어진 프로젝트 중 자원순환 분야의 A프로젝트는 2022~2023년에 50억원이 용자될 계획이지만, 이를 통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733tCO<sub>2</sub>eq으로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0.15tCO<sub>2</sub>eq/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전자 분야의 B프로젝트는 2022년에 120억원이 용자될 계획이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2,194tCO<sub>2</sub>eq으로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은 0.180.15tCO<sub>2</sub>eq/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미비하지만,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동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제고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기후대응기금(산업부)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의 점진적 사업 확대 필요

### 가. 현 황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sup>1)</sup>은 재제조 품질인증, 재제조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제조 제품 생산 및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9억원 증액된 11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 2,382      | 3,992              | 3,992 | 11,892         | 7,900 | 197.9   |
|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 1,490      | 2,570              | 2,570 | 4,370          | 1,800 | 70.0    |
| 순환경제 제도 활성화    | 810        | 810                | 810   | 1,410          | 600   | 74.1    |
| 순환경제 정책기획      | 82         | 112                | 112   | 112            | 0     | 0.0     |
|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 0          | 500                | 500   | 6,000          | 5,500 | 1100.0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순환경제 사업화지원·순환경제제도 활성화·순환경제 정책기획·순환경제 혁신인프라구축 사업 등 4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① 순환경제사업화지원 사업은 재제조 분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8억원 증액된 4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② 순환경제 제도활성화 사업에서는 재제조 품질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기준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대비 6억원 증액된 1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③ 순환경제정책기획 사업은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같은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④ 순환경제혁신인프라구축 사업은 재제조 기술개발과 성능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순환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5억원 증액된 60억원이 편성되었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3-300

[2023년도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의 내역별 예산안 편성 내용]

| 내역사업         | 주요 사업내용   |
|--------------|---|
| 순환경제 사업화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30개 기업, 공정, 기술 솔루션 등): 900백만원</li> <li>· 해외 신시장 판로개척 지원(6개 기업): 600백만원</li> <li>· 신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실증 지원(5개 기업 컨소시엄): 2,250백만원</li> <li>· 순환경제 산업홍보 및 현황조사: 470백만원</li> <li>· 밸류체인 및 공급망 플랫폼 구축: 150백만원</li> </ul> |
| 순환경제 제도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제조 품질인증체계 구축: 610백만원</li> <li>·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획(자원효율등급제 개발 등): 800백만원</li> </ul>  |
| 순환경제 정책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li> </ul>  |
| 순환경제 혁신인프라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혁신센터 구축(2022~2024): 6,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244억원(국비 99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 45억원)</li> <li>- 2023년 장비 6종 × 1,000백만원</li> </ul> </li> </ul>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순환경제사업화지원 내역사업에서 재제조 분야 기업의 사업화 주제 발굴 및 실증을 위한 지원 예산이 2022년 4억 5,000만원(3개 기업×150백만원)에서 2023년 22억 5,000만원(5개 기업×450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순환경제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에 순환경제혁신센터에 구축할 6종의 장비구입비 60억원이 편성되며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였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

| 내역사업       | 지원내용     | 2022년 예산                  | 2023년 예산안                         |
|------------|----------|---------------------------|-----------------------------------|
| 순환경제 사업화지원 | 사업화 실증지원 | · 3개 기업×150백만원<br>=450백만원 | · 5개 기업(컨소시엄)×450백만원<br>=2,250백만원 |
| 순환경제 인프라구축 | 장비구축     | · 순환경제혁신센터<br>설계비 500백만원  | · 순환경제혁신센터 장비 6종<br>구입비 6,00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분석의견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은 재제조 인증실적에 나타난 민간기업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사업화 지원을 통한 매출액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에 대한 사업화 실증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제조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sup>2)</sup> 우리나라의 재제조 시장은 1조원 규모이며, 재제조 업체는 1,444개이나, 93%가 매출액 연 10억원 이하 영세 업체이고 토너 카트리지 재사용 등 저가 재제조 품목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저감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목적으로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재제조 품질인증 기업을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제조 품질인증 실적에 나타난 재제조 분야 산업수요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sup>3)</sup> 2021년 기준 재제조 품질인증 건수는 총 47건이며, 연도별 신규 품질인증건수도 2020년 4건, 2021년 12건 등으로 적은 수준이다. 또한 2017~2021년에 완료된 재제조 품질인증 16건 중 재인증된 경우가 5건으로 적어 기업이 재제조 인증 유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2021년 재제조 품질인증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재제조<br>제품<br>품질인증 | 재제조 신규 품질인증 건수        | 1    | 6    | 2    | 4    | 12   |
|                   | 재제조 누적 품질인증 건수        | 23   | 29   | 31   | 35   | 47   |
|                   | 재제조 품질인증 만료건수         | 3    | 2    | 9    | 1    | 1    |
|                   | 재제조 품질인증 만료건 중 재인증 건수 | 0    | 2    | 0    | 0    | 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3)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은 재제조를 포함한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실증하는 사업화 실증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서 전년대비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사업화 실증은 2022년에 3개 기업에 1억 5,000만원씩 총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023년에는 5개 컨소시엄에 4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은 사업화 실증 목적으로 2021년에 2개 기업에 각각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 2개 기업 중 2022년 8월 기준 사업화 매출이 확인된 기업은 1개 기업으로 4개 수요기업에 재제조 소모품을 판매하여 총 2,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이 외 1개 기업은 수요기업을 발굴 중이다.

[2021년 재제조 사업화 실증 지원 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성과]

| 지원기업        | 사업화 내용  | 사업화 매출액                               |
|-------------|---|---------------------------------------|
| 삼일테크        | 소모품 재제조 및 성능개량형 재제조<br>제품 사업화: 컨테이너 부속품인 슬리브<br>부품 중심 | 수요기업에 슬리브 재제조 판매,<br>총 2,000만원 매출액 발생 |
| MSL<br>컴프레서 | 고순도 공기용 수분 저습 제거 흡착식 필<br>터의 일부 재제조                   | 수요기업 발굴 중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 사업은 사업화실증 지원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기업(3개 기업→5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지원금액(1.5억원→4.5억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재제조 분야 사업화 실증은 기존 사업에서 아직 충분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제조 품질 인증에 나타난 기업의 재제조 분야 수요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2021년 10월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sup>4)</sup>하여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모든 품목이 재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재제조 인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국회 의결을 통해 제2조(정의) 및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등이 개정되었으며, 법률 개정으로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로 확장되었다.

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라 재제조 분야 외에 금속재원화, 폐플라스틱 등 순환경제 전분야로 지원대상  
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sup>5)</sup>

또한 사업화 실증의 경우 2022년까지는 개별 사업에 1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대기업과 순환경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대형 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워 2023년에는 사업화 실증의 지원단가를 인상한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사업화 실증 사업의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  
에 대해서는 2021년 1년차 사업화 실증 지원의 경우 영세한 순환경제 기업의 경쟁  
력 강화와 서비스 모델을 결합한 신사업 발굴·실증을 주목적으로 하며 매출 성과는  
실증 결과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재제조 품질인증 수요 증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화 실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지원금액과 지원  
기업수를 확대하였으나, 기존 사업화 실증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  
여 2023년에 소수 기업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성과 추이에 따라 점진적  
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5)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부터 동 사업을 통해 재제조 분야 뿐만 아니라 금속재원화, 폐  
플라스틱, 공급망 플랫폼, IT·서비스, 에코디자인 등 순환경제 전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  
한다. 그리고 2022년에는 순환경제 원료·부품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간 네트워킹을 통해 SK루  
브리컨츠와 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폐윤활유 재생·원료화 사업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였고, 금속재  
자원화를 통한 재생원료(타이타늄, 알루미늄 등) 공급 신사업 등 대형 신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기후대응기금(산업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의 수소버스에 대한 이중보조 등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sup>1)</sup>은 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 운송사에게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를 보조하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며, 2023년 계획안에 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 0          | 0                  | 0     | 7,000          | 7,000 | 순증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은 2023년 시행 예정인 수소모빌리티 보급촉진 시범사업<sup>2)</sup>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내 수소버스 운송사에서 2023년에 신규 구매하는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수소모빌리티 보급촉진 시범사업에서는 2023년부터 수소차량 보급 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 부처의 수소상용차, 충전소 구축 지원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23년 계획안은 100대 수소버스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1회 평균 교체비용 1억 1,000만원의 65%인 7,000만원을 정액 보조하는 내용으로 산출되었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303

2) 수소모빌리티 보급 촉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수소 관련 재정사업을 활용하여 수소버스 등의 보급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하여 인프라 구축, 수소버스 등의 구매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

| 구분   | 2023 예산안 산출내역  |
|------|--|
| 산출내역 | · 7,000만원 × 100대 = 7,000백만원<br>- 연료전지시스템가격 = 55백만원 × 2개 = 110백만원 × 65% = 70백만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버스는 연료전지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의 경우 약 30만km를 주행할 경우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시스템 및 그 외 주요 부품의 교체에 최대 2억 9,0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3)</sup> 현재 수소버스는 제조사에서 5년 50만km 내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을 경우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증기간 만료 후 주행거리 50만km 이상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등 수소버스 구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연료전지시스템을 교체하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로 구매하는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2023년부터 9년 90만km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사업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구입하는 수소버스에 대해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수소버스 구입에 따른 보수·수리비용 등을 경감할 목적으로 2023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보조금은 지자체가 수소버스를 보급할 때 수소버스 제조사에게 지급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조사는 수소버스에 대한 보증기간을 현재 5년 50만km에서 9년 90만km로 연장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70억원 중 국비 49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에 수소버스 100대를 포함하여 총 700대 수소버스에 대해 연료전지시스템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연료전지시스템을 구성하는 연료전지(1.1억원\*2회), 배터리시스템(0.3억원), 구동모터(0.3억원), 컨버터(0.2억원) 등 그 외 주요 부품 교체 비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의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대)

| 구분   |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총사업비 | 합계     | 11,000 | 33,000 | 33,000 | 77,000 |
|      | 정부보조금  | 7,000  | 21,000 | 21,000 | 49,000 |
|      | 지자체보조금 | 4,000  | 12,000 | 12,000 | 28,000 |
| 지원규모 | 지원대수   | 100    | 300    | 300    | 70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나. 분석의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자체 구입 수소버스에 대해 환경부·지자체에서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 지원대상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보조 목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운송용으로 구입한 수소버스는 누적기준으로 2020년 60대, 2021년 114대, 2022년 8월 기준 190대 규모이다. 지자체의 운송용 수소버스는 구입 당시 환경부의 수요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저상버스로 구입할 경우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의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은 2022년 기준 대당 정부보조금 1억 5,000만원, 지자체 보조금 1억 1,500만원 등 총 3억원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2023년에 대당 보조금은 3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정부보조금을 2억 1,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자체보조금을 9,000만원으로 낮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4)에 따라 버스운송사는 버스 구입 시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③ 시장·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매해야 하며, 저상버스 구입 시 국토교통부로부터 4,500만원, 지자체로부터 4,500만원 등 총 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수소버스의 제조사 판매가격은 2022년 8월 기준 6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저상버스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3억 9,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여기에 제조사 할인금 1억 1,000만원이 더해져 실제 순구입비용은 1억 3,000만원이다.

[수소차 구입비 지원 현황]

| 제조사<br>판매가격(A) | 정부·지자체 보조금(B) |       |          |        | 제조사<br>할인금<br>(C) | 순구입비용<br>(D=A-B-C) |
|----------------|---------------|-------|----------|--------|-------------------|--------------------|
|                | 구입보조금         |       | 저상버스 보조금 |        |                   |                    |
|                | 정부            | 지자체   | 정부       | 지자체    |                   |                    |
| 6.3억원          | 1.5억원         | 1.5억원 | 0.45억원   | 0.45억원 | 1.1억원             | 1.3억원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버스운송사의 수소버스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송용 수소버스는 환경부로부터 구입 당시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동 보조금은 수소버스의 내구성이나 안전성 등 수소버스 구입 당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여 지원된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서 연료전지시스템 교체를 위한 비용을 추가 보조하는 것은 이미 정부 보조가 이루어진 대상에 대해 중복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미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는 수소버스에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은 여러 사업을 통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이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구입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를 수소버스 구매시점에 제조사에게 선지급하는 방식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기업에 매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수소버스 구입 시점에 제조사에게 미래 발생한 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선지급하고, 교체비용을 교부 받은 제조사는 보증기간을 9년 90만km로 연장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서는 2023년에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보조금을 수소버스 구입 시점에 제조사에게 먼저 교부한다. 그러나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은 현재 보증조건인 5년 50만km 기준에 따라 수소버스 구입 후 5년 경과부터나, 5년 이내에 50만km를 주행한 이후 실제 사용될 것이다. 또한 현재 제조사의 보증기간(5년 50만km) 이후에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등 보수·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게 지급된 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이 제조사에게 매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시범 사업은 수소버스의 보증기간 만료 후 실제 연료전지시스템 교체 시점 및 수리·보수 비용 등에 맞추어 정부 보조금이 제조사에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sup>1)</sup>은 도심지에 친환경 분야 혁신창업기업의 입주공간과 친환경 정주여건이 결합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린 뉴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40억 300만원이 증액된 29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br>(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 15,000     | 15,500             | 15,500 | 29,503      | 14,003 | 90.3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SOC구축과 함께 창업기업 및 지역혁신기업의 입주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며, 동 사업은 주요 핵심시설 중에서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R&D지원시설이자 앵커시설인 복합허브센터의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계획안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설계비가 반영된 대구광역시 북구 및 원주시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복합허브센터 건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액 각각 140억원(민간자본보조)씩 총 28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2년(1년차)에 설계를, 2023년(2년차)에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 사업 관리기관인 창업진흥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액 10억원(민간경상보조)과 신규 조성지 설계비 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태민 예산분석관(taemin@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1-600

[2023년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지역    | 2022년 계획안   | 2023년 계획안   |
|-----------|-------|-------------|-------------|
| 기존        | 광주 북구 | 14,000(공사비) |             |
|           | 대구 북구 | 500(설계비)    | 14,000(공사비) |
|           | 원주    | 500(설계비)    | 14,000(공사비) |
| 신규        | 공모예정  |             | 503(설계비)    |
| 창업진흥원 운영비 |       | 500         | 1,000       |
| 합계        |       |             | 29,503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분석의견

대구 북구·원주에 조성할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2022년 말 부터 설계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2023년도 계획안에 공사비는 단계별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계획액을 배분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계획안에는 대구 북구와 원주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각각 5억원의 설계비가 편성되었다. 각 타운은 2022년 8월 그린스타트업타운 적격성평가를 시행하는 등 창업진흥원과 지자체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두 지역의 그린스타트업타운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도 계획안에는 공사비로 각각 140억원이 보조율 50%로 편성되었다.

[2023년 신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복합허브센터) 사업 현황]

| 구분      | 대구 그린스타트업 타운                        | 원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
|---------|-------------------------------------|----------------------------------|
| 사업대상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008번지<br>일원(옛 경북도청부지) |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br>(상지대학교 캠퍼스 內) |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3,163㎡, 연면적<br>14,928㎡        | 대지면적 : 3,200㎡ 연면적<br>6,720㎡      |
| 2023계획안 | 140억원                               | 140억원                            |
| 보조율     | 50%                                 | 50%                              |
| 총사업비    | 미정                                  | 미정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복합허브센터의 기본·실시설계 완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에 공사용역 계약체결 및 착공 단계까지도 진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각 지자체의 복합허브센터 모두 사업계획 보안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경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0월 설계 입찰공고를 하고, 2023년 1월 부터 6개월간 설계를 진행하여 2023년 6월에 설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복합허브센터) 사업 설계용역 추진일정(안)]

| 구분 | 입찰공고일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 설계완료   |
|----|---------|--------|----------------|--------|
| 대구 | '22.10. | '23.1. | '23.1. ~ '23.6 | '23.6. |
| 원주 | '22.10. | '23.1. | '23.1. ~ '23.6 | '23.6.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설계완료 이후 공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까지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 후반기가 되어서야 공사용역 계약의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이 되어서야 동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2022년도 예산으로 공사비가 반영된 광주 그린스타트업 센터<sup>2)</sup>의 경우

2021년 9월 설계용역을 공고하여 2021년 12월에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12월 말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2023년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전 및 원주 그린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건축비 280억원을 전액 교부한다면 상당액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피보조기관에 장기간 묶여 있어 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전 및 원주 그린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단계별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도출하고, 2023년도 계획안에는 집행가능한 규모의 공사비만 편성하고 연차별로 계획액을 배분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대지면적 3,500㎡, 연면적 6,000㎡

## 기후대응기금(고용부)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저조한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감액 필요

### 가. 현 황

노동전환지원금 사업<sup>1)</sup>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전환 교육 훈련,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sup>2)</sup>

[2023년도 노동전환지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노동전환지원금 | 0          | 5,260              | 5,260 | 5,260          | 0   | -       |

주: 1)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1.7.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1개 기업당 교육시작 전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한도(최대 100명)까지 지원 가능하여 1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다연 예산분석관(dayeony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332-301

2)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계획안 심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나. 분석의견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0.2%에 불과하므로, 유사 목적의 타 사업과 같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액을 감축하는 한편, 사업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지원금 사업으로 노동전환지원금(6332-301)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6332-302) 사업이 있다. 두 사업은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교육비 지원, 임차비 지원 등 지원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비교]

| 구분   | 노동전환지원금<br>(6332-301)  |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br>(6332-302)                              |
|------|--|--|
| 사업개요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채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                        |  |
| 지원내용 |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피보험자수의 50% 한도(최대 100명) 내로 최대 3억원 지원                            |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2022년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1,200만원이고,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집행금액이 전무한 상황으로, 두 지원금 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두 사업은 2022년 예산액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사업수요 저조 및 2023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액을 50%로 감축하여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은 2023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다.

[노동전환지원금 및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2  |           |       | 2023<br>예산안 | 증감액<br>(증감률)     |
|-------------------|-------|-----------|-------|-------------|------------------|
|                   | 계획액   | 집행액(9월 말) | 불용예상액 |             |                  |
| 노동전환지원금           | 5,260 | 12        | 3,640 | 5,260       | 0                |
| 사업전환고용안정<br>협약지원금 | 5,000 | 0         | 3,500 | 2,500       | △2,500<br>(△5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사업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장에서 인지도가 낮으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후불 정산 받는 구조여서 신청 이후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설명이다.

사업 초기임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및 컨설팅 실적 등을 감안 시 현장에서 동 사업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노동전환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sup>3)</sup> 및 노동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506개사, 컨설팅 참여기업 831개사 등을 고려할 시 최소 1,337개사 기업 중 훈련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22년 9월 말 기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수는 15개사에 불과하다.

3) 사업재편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전환 승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한다.

[노동전환지원금 신청 현황]

| 구분                    | 사업재편전환 승인기업                        | 노동전환 지원센터 컨설팅 참여기업           |
|-----------------------|------------------------------------|------------------------------|
| 대상기업 수<br>(22.9.말 기준) | 사업재편 승인기업 314개사<br>사업전환 승인기업 192개사 | 진단 컨설팅 831개사<br>전문 컨설팅 449개사 |
| 지원금 신청<br>기업 수        | 총 15개사                             |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현장에서 노동전환지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전직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사업주가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지원금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 사업 또한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액을 감액하는 한편,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sup>1)</sup>은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1,220억 5,000만원 대비 396억 500만원(32.4%) 증액된 1,616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 51,100     | 122,050            | 122,050 | 161,655        | 39,605 | 32.4    |
| 온실가스 감축기반<br>구축      | 43,446     | 116,081            | 116,081 | 148,231        | 32,150 | 27.7    |
| 온실가스-에너지<br>목표관리제 운영 | 5,959      | 4,961              | 4,961   | 8,983          | 4,022  | 81.1    |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sup>2)</sup>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또는 사업장)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설치비용을 국고로 지원(내내역사업명: 온실가스 감축 통합 지원)하고 있다.<sup>3)</sup>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00

2) 배출권거래제는 다년간 계획기간 안에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환경부는 2020년 12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총 26억 800만톤을 할당하였는바, 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②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및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통합 지원 내내역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를 유연탄에서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지원 단가를 조정(200억원 → 162.5억원)하고 개소수(1개소 → 2개소)를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안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2022년 예산   | 2023년 예산안   |
|--------------|--|---|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7,902백만원</li> <li>- 민간보조(73개소): 80,402백만원</li> <li>- 지자체 보조(15개소): 7,500백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592백만원</li> <li>- 민간보조(115,092백만원): 113개소 × 930백만원 × 보조율* = 105,092백만원</li> <li>*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li> <li>- 지자체 보조(7,500백만원): 15개소 × 1,000백만원 × 50% = 7,500백만원</li> </ul> |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백만원</li> <li>- 1개소 × 20,000백만원 × 5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250백만원</li> <li>- 2개소 × 16,250백만원 × 50%</li> </ul>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유형에 따라 대기업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감축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50%이다.

## 나. 분석의견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나 특성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21.12)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설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축설비 유형에는 탄소무배출설비,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설비, 연료 전환 설비, 전처리장치,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전동기, 고효율기기 등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설비 유형]

| 지원 설비            | 지원 범위   |
|------------------|---|
| 1. 탄소무배출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li>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li> </ul> |
|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li> <li>-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li> </ul>                           |
| 3. 폐기물 열분해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li> </ul>   |
| 4. 탄소포집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li> </ul>  |
| 5. 연료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li> <li>-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li> <li>※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li> </ul> |

| 지원 설비               | 지원 범위  |
|---------------------|--|
| 6. 전처리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 등의 전처리로 후단 공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li> <li>- 파쇄기, 선별기 등</li> </ul>   |
| 7.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전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또는 인버터 제어형 전동기로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li> <li>-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등</li> </ul>                              |
| 8. 고효율 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li> <li>-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고효율 버너 등</li> </ul> |
| 9. 불소가스 저감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li> </ul>  |
| 10. 공정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1~9번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li> </ul>  |
| 11. 에너지관리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li> <li>※ 다른 감축설비와 병행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li> </ul>                   |
| 12.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li> </ul>   |

자료: 환경부

그러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감축설비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나 고효율기기 등 일부 설비 유형에 국한되어 지원됨에 따라 동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총 11개 설비(민간업체 및 지자체 포함) 중 5개 설비는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 6개 설비는 고효율기기가 설치되었고, 2020년에는 일부 설비(3개)가 폐에너지회수·이용설비로 설치되었으나, 대다수의 설비(18개)가 고효율기기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물량이 확대된 2021년의 경우에도 총 79개 설비 중 47개가 고효율기기, 22개가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로 설치되는 등 특정 유형의 설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sup>

4) 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2020년까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폐기물' 분야 업종에 한정하여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실적(2019~2021년)]

(단위: 건수)

| 지원 설비                   | 2019 |     | 2020 |     | 2021 |     |
|-------------------------|------|-----|------|-----|------|-----|
|                         | 민간   | 지자체 | 민간   | 지자체 | 민간   | 지자체 |
| 소계                      | 6    | 5   | 6    | 21  | 50   | 29  |
| 1. 탄소무배출설비              | -    | -   | -    | -   | -    | -   |
| 2. 폐에너지회수·이용설비          | -    | -   | 2    | 1   | 5    | -   |
| 3. 폐기물열분해시설             | -    | -   | -    | -   | -    | -   |
| 4. 탄소포집설비               | -    | -   | -    | -   | -    | 1   |
| 5. 연료전환                 | -    | -   | -    | -   | 2    | -   |
| 6. 전처리장치                | -    | -   | -    | -   | 1    | -   |
| <b>7. 인버터및인버터제어형전동기</b> | 3    | 2   | 4    | 2   | 21   | 1   |
| <b>8. 고효율기기</b>         | 3    | 3   | -    | 18  | 20   | 27  |
| 9. 불소가스저감설비             | -    | -   | -    | -   | -    | -   |
| 10. 공정개선                | -    | -   | -    | -   | 1    | -   |
| 11. 에너지관리시스템            | -    | -   | -    | -   | -    | -   |
| 12. 기타                  | -    | -   | -    | -   | -    | -   |

자료: 환경부

비록,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동 사업의 물량 및 예산이 크게 확대된 2022년의 경우, 과거 연도에 비해 탄소무배출설비나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탄소포집설비, 공정개선 등 기존에는 실적이 저조하였던 타 유형의 설비가 설치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전체 125개 중 87개 설비(69.6%)를 인버터 및 고효율기기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였고, 지원 한도(최대 3억원)가 낮아 사업 참여업체가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설비(인버터, 고효율기기 등)를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양한 설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인버터와 고효율기기를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실적(2022.9월)]

(단위: 건수, 백만원)

| 구 분           | 민간  |        | 지자체 |       | 합계  |        |
|---------------|-----|--------|-----|-------|-----|--------|
|               | 설비  | 금액     | 설비  | 금액    | 설비  | 금액     |
| 합 계           | 125 | 77,056 | 29  | 7,500 | 154 | 84,556 |
| 탄소무배출설비       | 11  | 11,533 | -   | -     | 11  | 11,533 |
|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12  | 7,812  | -   | -     | 12  | 7,812  |
| 탄소포집설비        | 1   | 6,000  | -   | -     | 1   | 6,000  |
| 연료 전환         | 7   | 28,498 | -   | -     | 7   | 28,498 |
| 전처리장치         | 1   | 261    | -   | -     | 1   | 261    |
| 인버터(전동기 포함)   | 44  | 9,897  | 6   | 581   | 50  | 10,478 |
| 고효율 기기        | 43  | 11,197 | 22  | 6737  | 65  | 17,934 |
| 불소가스 저감설비     | 1   | 777    | -   | -     | 1   | 777    |
| 공정개선          | 5   | 1,081  | 1   | 182   | 6   | 1,263  |

자료: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설비 유형별 지원 비율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들의 실제 수요에 맞춰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동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설비 기준을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인 설비로 제시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인버터나 고효율기기 등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투자비용회수가 가능한 종류의 감축설비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지원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설비별 저감효과를 살펴보면, 인버터나 고효율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 유형이 존재하는바, 각 설비별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다른 설비에 비해 설치·관리 및 감축량 산정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 운영방식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별 온실가스 저감효과]

(단위: 백만원, 톤CO<sub>2</sub>/년, 톤CO<sub>2</sub>/백만원)

| 구 분              | 지원액(A) | 감축량(B)  | 저감효과(B/A) |
|------------------|--------|---------|-----------|
| 계                | 77,055 | 199,590 | 2.6       |
| 탄소무배출설비          | 11,533 | 10,343  | 0.9       |
| 폐에너지 회수·이용설비     | 7,812  | 10,034  | 1.3       |
| 탄소포집설비           | 6,000  | 31,462  | 5.2       |
| 연료전환             | 28,498 | 91,687  | 3.2       |
| 전처리장치            | 261    | 1,751   | 6.7       |
| 인버터 및 인버터제어형 전동기 | 9,897  | 18,606  | 1.9       |
| 고효율기기            | 11,197 | 17,331  | 1.5       |
| 불소가스저감설비         | 777    | 16,179  | 20.8      |
| 공정개선             | 1,081  | 2,197   | 2.0       |

주: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2022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간 지원예산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나 특성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및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은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예산의 집행 실적도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 등 세부 내역사업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경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은 2022년 9월 현재 1~5차 공모(1.7.~6.30.)를 완료하여 당초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804억원)의 95.8%(771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서 발생한 33억원의

공모 잔액에 대해서는 10~11월 증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역무대행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전액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2년 9월 기준 한국환경공단의 실집행액은 약 310억원(45.1%)이고 12월말 기준 약 181억원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의 실집행이 일부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6)</sup>

다음으로,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경우, 2022년 3월에 대상 사업자(데이원에너지)가 선정되었으나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22.9.1.)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변경 후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증으로 11월이 되어서야 업체 선정·착공 및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예산(100억원)의 실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5) 다만,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2022년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이미 선정되어 9월 기준 보조사업 예산 75억원이 전액 교부된 상황이며, 환경부는 연말까지 약 85% 수준까지 실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참고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지원 물량이 확대된 2021년의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과 지자체를 합한 예산현액 222억 9,700만원 중 72.5%인 161억 7,000만원이 실집행되는 등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유형   | 부처     |        |        |        |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기관등) |          |        |      |       |       |
|------|------|--------|--------|--------|--------|--------------------|----------|--------|------|-------|-------|
|      |      | 본예산    | 추경(A)  | 집행액    | 교부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br>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이월액   | 불용액   |
| 2019 | 민간보조 | 1,293  | 1,293  | 1,293  | 1,293  | 127                | 1,420    | 430    | 30.3 | 195   | 795   |
|      | 지자체  | 2,820  | 2,820  | 801    | 801    | -                  | 801      | 326    | 40.7 | 464   | 10    |
| 2020 | 민간보조 | 1,293  | 1,293  | 1,293  | 1,293  | 195                | 1,488    | 1,143  | 76.8 | 345   | -     |
|      | 지자체  | 2,820  | 2,820  | 2,820  | 2,820  | 738                | 3,558    | 3,449  | 96.9 | -     | 108   |
| 2021 | 민간보조 | 14,700 | 14,700 | 14,700 | 14,700 | 345                | 15,045   | 10,919 | 72.6 | 3,162 | 964   |
|      | 지자체  | 7,500  | 7,500  | 7,252  | 7,252  | -                  | 7,252    | 5,251  | 72.4 | 406   | 1,595 |

자료: 환경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2년 예산       | '22년 선정결과 (1~5차) | '22년 집행현황     |               |               |               |            |
|-----------------------|---------------|------------------|---------------|---------------|---------------|---------------|------------|
|                       |               |                  | 교부액 (9월)      | 예산현액 (9월)     | 실집행 9월        | 보조사업자         |            |
|                       |               |                  |               |               |               | 이월액           | 불용액        |
| <b>계</b>              | <b>97,902</b> | <b>94,555</b>    | <b>73,201</b> | <b>76,769</b> | <b>34,408</b> | <b>18,455</b> | <b>750</b> |
| <b>① 감축설비 지원</b>      | <b>87,902</b> | <b>84,555</b>    | <b>73,201</b> | <b>76,769</b> | <b>34,408</b> | <b>18,455</b> | <b>750</b> |
| - 민간보조                | 80,402        | 77,055           | 65,701        | 68,863        | 31,049        | 18,080        | -          |
| - 지자체보조               | 7,500         | 7,500            | 7,500         | 7,906         | 3,359         | 375           | 750        |
| <b>② 청정연료 전환 (민간)</b> | <b>10,000</b> | <b>10,000</b>    | <b>10,000</b> | <b>10,000</b> | <b>0</b>      | <b>0</b>      | <b>0</b>   |

주: 보조사업자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연도말 예상액 기준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2022년 88개소(민간업체 73개소, 지자체 15개소)에서 2023년 128개소(민간업체 113개소, 지자체 15개소)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 또한 2022년 1개소에서 2023년 2개소로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인바, 보조사업자 단위에서 나타난 실집행 부진 문제가 이어지게 될 경우 계획물량 및 예산이 확대된 2023년에도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7)

따라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 및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지연 상황 및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감축목표에 미달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7) 다만,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수요조사 결과 약 659억원 규모의 수요가 제출되었으며, 2022년 수요조사(21.8~9월) 시에는 296억원의 수요가 제출되었으나 2022년 실제 공모 시 총 824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사업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대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sup>8)</sup>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제도 운영 및 관련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부터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의 2023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의 연평균 개소수(60개소)의 절반인 3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1억원(국고보조율 50%)씩 총 1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더해 관리업체가 목표량 외에 추가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할 경우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예산 12억원 등 총 27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22년 예산 |   | '23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설비 지원 1,500백만원</li> <li>- 30개소 × 100백만원 × 0.5</li> <li>◦ 목표량 이외 추가 감축량 정부구매 1,200백만원</li> <li>- 120만tCO<sub>2</sub> × 1천원</li> </ul> | 2,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설비 지원 1,500백만원</li> <li>- 30개소 × 100백만원 × 0.5</li> <li>◦ 목표량 이외 추가 감축량 정부구매 1,200백만원</li> <li>- 120만tCO<sub>2</sub> × 1천원</li> </ul> |

자료: 환경부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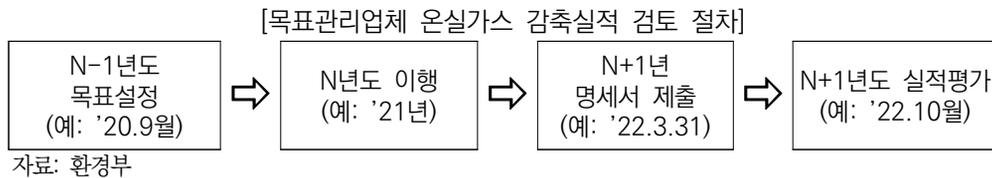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6항<sup>9)</sup> 및 제83조<sup>10)</sup>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토 절차를 살펴보면, N-1년도에 정부와 관리업체가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N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한 이후 N+1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실적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나, 만약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관리업체의 경우, 개선명령을 불이행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개소당 국비 평균 5,000만원)에 비해 과태료 금액(1,000만원 이하)이 크지 않으므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세서를 제출(같은 항 후단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21년 목표관리제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업체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 업체명        | 지원사업            | 2021년<br>지원예산 | 감축목표<br>달성여부                |
|-----|------------|-----------------|---------------|-----------------------------|
| 합 계 |            |                 | 1,492         | 2022년<br>10월말<br>최종평가<br>예정 |
| 1   | 진흥주물       | 변압기 설치          | 530           |                             |
| 2   |            |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 150           |                             |
| 3   | 선일다이파스     | 변압기 설치          | 89            |                             |
| 4   | 로움코리아      | 변압기 설치          | 99            |                             |
| 5   | LB세미콘 주식회사 | 냉각탑 폐열회수 시스템 설치 | 70            |                             |
| 6   |            | 인버터 설치          | 5             |                             |
| 7   |            | 고효율냉동기설치        | 92            |                             |
| 8   | 유성기업 영동공장  |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 90            |                             |
| 9   | 호스트웨이아이디씨  | 간접냉방 열교환기 설치    | 30            |                             |
| 10  | 종근당 천안공장   | 인버터 설치          | 91            |                             |
| 11  |            | 저녹스버너 설치        | 29            |                             |
| 12  |            | 자연냉열기 설치        | 40            |                             |
| 13  |            |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146           |                             |
| 14  | 동화지앤피      | 인버터 설치          | 39            |                             |
| 15  | 한국기초소재(주)  | 변압기 설치          | 94            |                             |
| 16  | 면사랑        |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 42            |                             |
| 17  | 한영특수강      | 배기가스 열교환기 설치    | 99            |                             |
| 18  | 이건에너지      | 소각로 개선사업        | 235           |                             |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감축목표에 미달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예산을 지원받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추후 사업 지원이 제한되도록 지원 대상 선정평가 시 감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sup>1)</sup>은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치가 어려운 환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자사업이다.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2022년 예산 200억원 대비 250억원 증액(125.0%)된 4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 30,000     | 20,000             | 20,000 | 45,000         | 25,000 | 125.0   |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현재까지 조성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자펀드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펀드 조성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는 국고와 민간투자를 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up>2)</sup>로, 2년 이상 투자 및 5년 이상 존속 하에 투자·회수하여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sup>3)</sup>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232-600

2) 모태펀드란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펀드(모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개별투자펀드(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매년 환경부가 모태펀드 관리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펀드예산을 출자한 후, 투자 운용사를 선정하여 세부 투자 계획을 설정하고, 민간 투자금 모집 등을 거쳐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매년 2개 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3년 예산안에서도 환경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녹색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개 펀드 조성·운용을 위한 예산 총 4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22년 예산 |   | '23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예산       | 산출내역  |
| 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출자금(460-01) : 20,000</li> <li>-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br/>1개 × 20,000 = 20,000</li> </ul> | 4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출자금(460-01) : 45,000</li> <li>-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br/>2개 × 22,500 = 45,000</li> </ul> |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경우, 2017년 제1호 펀드가 결성된 이후 초기에는 운용사 선정 지연, 민간자본 유치와 투자조합 결성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실적 확보가 부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투자실적 저조 문제 해결에 관한 시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sup>4)</sup>

3) 현재 환경부는 2년 이상 투자, 5년 이상 존속 하에서 운용사 및 출자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투자·회수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4)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2019~2020회계연도)]

| 구 분      | 시정요구명                   | 시정요구사항  |
|----------|-------------------------|---|
| 2019회계연도 | 미세먼지 특화펀드 등의 투자유치 실적 제고 | - 환경부는 적정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특화펀드의 실제 투자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2020회계연도 | 펀드 투자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환경부는 매년 신규 펀드 구성에 앞서 기존 결성펀드의 투자실적을 우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환경부는 사업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sup>5)</sup>하는 등 투자실적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된 펀드별 투자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총 결성액 2,465억원 중 총 64개 기업(중복투자 제외)에 1,667억 4,300만원(정부출자+민간출자)이 투자되는 등 투자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별 투자 실적 현황(2017~2022)]

(단위: 백만원, %)

| 펀드 | 연도   | 결성액(결성일)                             | 투자<br>업체수            | 투자액            | 투자율  | 투자기간                | 투자기간<br>경과율 |
|----|------|--------------------------------------|----------------------|----------------|------|---------------------|-------------|
| 1호 | 2017 | 420억원('17.12월)<br>(정부 200, 민간 220)   | 13                   | 39,219         | 93.4 | '17.12월~<br>'20.12월 | 100.0       |
| 2호 | 2018 | 191.2억원('19.4월)<br>(정부 130, 민간 61.2) | 10                   | 13,552         | 70.9 | '19.4월~<br>'23.4월   | 83.5        |
| 3호 | 2019 | 217억원('20.3월)<br>(정부 130, 민간 87)     | 6                    | 11,000         | 50.7 | '20.3월~<br>'24.3월   | 62.5        |
| 4호 | 2019 | 215억원('19.12월)<br>(정부 150, 민간 65)    | 7                    | 19,050         | 88.6 | '19.12월~<br>'23.12월 | 66.8        |
| 5호 | 2020 | 200억원('20.11월)<br>(정부 100, 민간 100)   | 11                   | 19,187         | 95.9 | '20.11월~<br>'24.11월 | 45.0        |
| 6호 | 2020 | 154억원('20.5월)<br>(정부 100, 민간 54)     | 10                   | 14,701         | 95.5 | '20.5월~<br>'24.5월   | 56.6        |
| 7호 | 2021 | 285억원('21.8월)<br>(정부 150, 민간 135)    | 8                    | 15,533         | 54.5 | '21.8~<br>'25.8월    | 25.3        |
| 8호 | 2021 | 353억원('21.8월)<br>(정부 150, 민간 203)    | 6                    | 34,501         | 97.7 | '21.8월~<br>'23.8월   | 50.6        |
| 9호 | 2022 | 430억원('22.9월)<br>(정부 268.4, 민간161.6) | -                    | -              | -    | '22.9월~<br>'26.9월   | -           |
| 합계 |      | 2,465억원                              | <b>64</b><br>(중복 제외) | <b>166,743</b> |      |                     |             |

주: 2022년 8월 기준

자료: 환경부

5)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 범위를 기존의 환경산업에서 환경산업과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전환과 관련된 미래환경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인정 범위를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의 자펀드 총 투자여력, 즉 펀드 결성액 중 미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8억 9,700만원, 2019년 104억 9,300만원, 2021년 130억 6,200만원 등 274억 5,200만원의 투자여력이 남아 있고, 최대 2년 8개월의 투자기간이 남아있다. 2022년 추진한 9호 펀드 또한 9월 20일자에 펀드가 결성됨에 따라 향후 3년 9개월의 투자 잔여기간 동안 400억원 규모의 투자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결성되어 투자가 진행 중인 자펀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
| 구성된<br>펀드 규모(A)       | 미래환경산업 | 42,000   | 19,120       | 21,700        | 20,000     | 63,800        | 43,000        | 209,620       |
|                       | 미세먼지   | -        | -            | 21,500        | 15,400     | -             | -             | 36,900        |
| 투자된 금액(B)             |        | 39,219   | 13,552       | 30,050        | 33,888     | 50,033        | -             | 166,742       |
| 잔존 금액(C=A-B)          |        | 2,781    | 5,568        | 13,149        | 1,512      | 13,767        | -             | 36,777        |
| 운용비용(D) <sup>1)</sup> |        | 3,372    | 1,671        | 2,656         | 1,529      | 705           | 3,000         | 12,933        |
| 투자잔여기간 <sup>2)</sup>  |        |          | 4개월          | 1년<br>3개월     | 1년<br>11개월 | 2년<br>8개월     | 3년<br>9개월     |               |
| <b>투자여력(C-D)</b>      |        | <b>-</b> | <b>3,897</b> | <b>10,493</b> | <b>-</b>   | <b>13,062</b> | <b>40,000</b> | <b>67,452</b> |

주: 1) 펀드운용 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등으로 운용비용 발생(약 10% 내외)

2) 2023.1.1. 기준

자료: 환경부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된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연간 투자액이 평균 345억원 규모인 점, 환경분야는 탄소중립, 플라스틱 재활용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대한 펀드 조성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sup>1)</sup>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환경 분야에 대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설비 투자비, 운영비 등)를 투자하고, 확보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획득하여 NDC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 -          | -                  | -     | 10,350         | 10,350 | 순증      |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정부는 2021년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2030년 기준 국외감축분 33.5백만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 대한 국외감축분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별도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sup>2)</sup>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내역사업과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내역사업에 총 10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610

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개념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으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친환경 모빌리티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을 포괄한다.

는데, 먼저 ①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내역사업에서는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 확보 4개 사업에 21억원씩 총 84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더해 차후년도 사업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총 1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②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내역사업에서는 양자협정 협약 사전준비, 협약체결, 신규 감축사업 발굴, 감축사업 기술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023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내역사업           | 예산안    | 세부내용  |
|----------------|--------|---|
| 감축실적 확보        | 10,000 | - (감축실적 확보) 8,400백만원 = 4개 사업 × 2,100백만원<br>- (타당성조사) 1,600백만원 = 4개 사업 × 400백만원  |
| 정부간 양자협력 체계 구축 | 350    | - (사무국 운영비용) 65백만원 = 사무국 운영 1식 × 65백만원<br>- (협약 사전준비) 44백만원<br>- (양자협약체결) 40백만원<br>- (공동위원회운영) 40백만원<br>- (신규 감축사업 발굴) 100백만원<br>- (감축사업 기술검토) 50백만원 = 2명 × 5개 사업 × 5백만원<br>- (검증결과 기술검토) 5백만원 = 1명 × 1개 사업 × 5백만원<br>-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6백만원 |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양자협정 체결을 비롯한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정부간 양자협정 등 국가간 협력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파리협정 제 6.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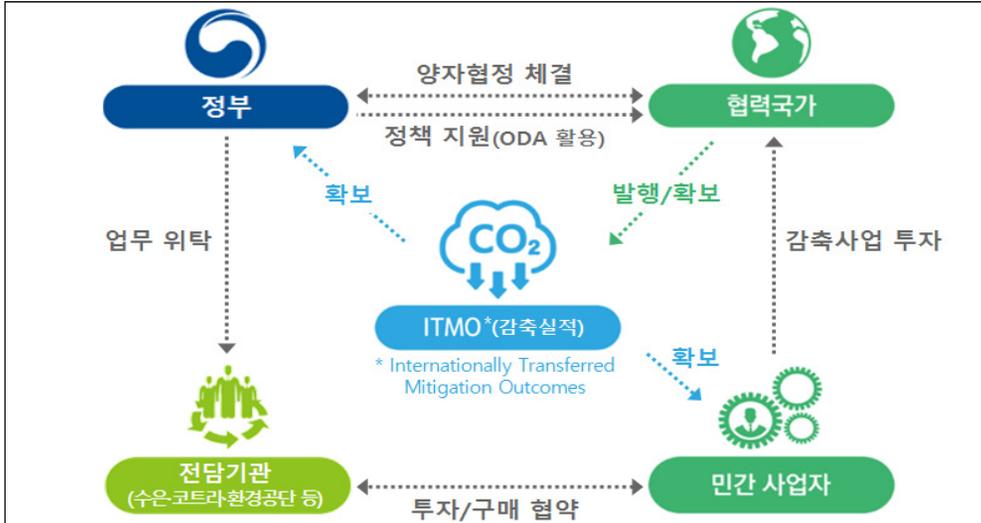
[파리협정 제6조 주요내용]

- 제6.2조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 : 당사국 간의 자발적 협력 방식으로 국가간 이전 가능한 감축실적(ITMO) 발급 및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 구매국과 판매국 간 이전된 감축분을 '상응' 되게 조정(구매국 배출량에서 제외, 판매국 배출량에 합산)하여 구매국과 판매국 간 중복계산 방지
- 제6.4조 메커니즘 :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가 지정한 감축기구에서 방법론, 사업 등을 승인하고 감축실적(6.4ER)을 인정·발급
  - \* 제6.4조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유치국가와 상응조정 실시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업수행자(공공·민간)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받으며, 정부는 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한 비용에 상응하는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량에 활용하는 구조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메커니즘]



자료: 환경부

3) 국내법상으로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38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각 부문별로 관장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폐기물·물관리 부문의 국제감축사업을 소관하고 있는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시설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표준 사업비를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매립지 매립가스 회수 소각·발전 사업의 평균 공사 기간은 2년, 운영기간은 10년이며, 시설투자비 52.3억원과 운영비 37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약 4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는 사업을 표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sup>4)</sup> 정부는 “감축실적 확보”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투자비의 80%에 해당하는 약 42억원에 대하여 2년간(2023년 21억원, 2024년 21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sup>5)</sup>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표준사업비 산출근거]

| 구분    |  | 매립지 감축사업 분석 결과 | 표준 사업(안)           |
|-------|--|----------------|--------------------|
| 표준 사업 | 연평균 폐기물 매립량(천톤)                            | 275~483        | 370                |
|       | 사업 기간(년)                                   | 10             | 10                 |
|       | 시설 투자비(억원)                                 | 50~55          | 52.3               |
|       | 운영비(O&M)(억원)                               | 28~48          | 37                 |
|       | 총 온실가스 감축량(천tCO <sub>2</sub> eq)           | 254~614        | 471                |
|       | 연도별 감축량(tCO <sub>2</sub> eq)               | 25~61          | 47                 |
|       | 수익(억원)                                     | 135~195        | 157                |
| 정부    | <b>정부지원비(억원, 80%이내)</b>                    | <b>40~44</b>   | <b>41.9</b>        |
|       | 정부지원/총 사업비 비율(배분 비율, %)                    | 40.8~52.7      | 47.2               |
|       | 정부 감축실적 확보량(천tCO <sub>2</sub> eq)          | 103~296        | 229                |
|       | <b>연도별 정부 감축실적 확보량(천tCO<sub>2</sub>eq)</b> | <b>10~30</b>   | <b>23(22,905톤)</b> |
|       | 톤당 감축비용(천원/tCO <sub>2</sub> eq)            | 14~38          | 23(22,624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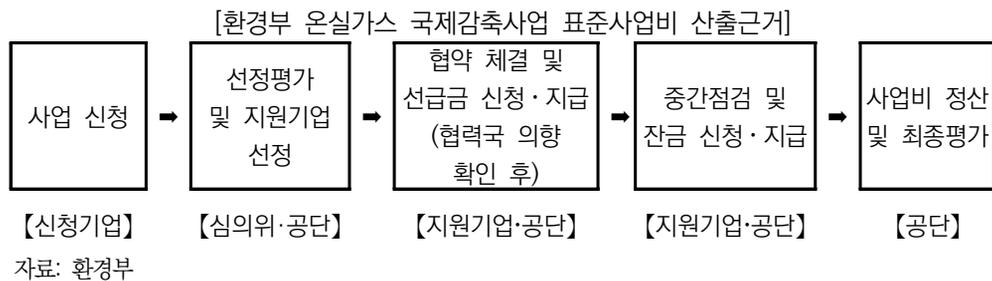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

4)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연도는 감축설비 설치 공사 및 협의체 승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연도로부터 2년 후에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5) 본 분석에서는 타당성조사비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감축실적 확보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절차상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바, 향후 동 사업의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22.3)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공고문”을 살펴보면, 기업 등이 국제감축사업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범사업 추진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 추진 시 확정된 지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계속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 및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양자협정 체결 및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국제감축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양자협정을 기 체결한 국가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사업(2개)의 경우,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본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선정결과]

| 연번 | 시행국가   | 사업명                                      | 기업         | 지원유형 |
|----|--------|--|------------|------|
| 1  | 베트남    | 농업부산물 연료를 활용한 화석연료 사용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대체 사업   | 한국남부발전     | 예타   |
| 2  | 베트남    | 왕겨 바이오매스 발전 및 부산물 자원순환망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주)TSP컨소시엄 |      |
| 3  | 베트남    | 베트남 Khan Son 매립지 LFG 발전사업                | (주)제일엔지니어링 |      |
| 4  | 키르기스스탄 | 소수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이미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양자협정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본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sup>6)</sup>의 실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나 2021년 12월 한-몽골 환경부 간 사업의향서 교환, 2022년 5월 최종적인 양자협정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본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몽골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경과]

- ('20.9) 공단-울란바토르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시 매립장(NEDS) LFG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업무협약 체결
- ('21.5) 폐기물 성상조사, 매립가스 성분 및 발생량 측정 등 타당성조사 완료
- ('21.10) 공단-울란바토르시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11~'22.5) 매립지 가스연소시설(Flare stack) 설치 기본설계 완료
- ('21.11) COP26계기 한-몽 환경장관급 회의 통해 매립지 감축사업 논의
- ('21.12) 한-몽 환경부 양자협력 및 시범사업 추진 의향서 교환
- ('22.5.3) 한-몽 환경부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 체결
- ('22.6.3) 공단, 공사, 울란바타르시간 기본설계 설명 및 향후 계획 화상 논의

자료: 환경부

6) 환경부는 2020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 Narangiin Enger(NE)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소각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8월말 기준 양자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베트남('21.5월)이 유일하며 나머지 17개국의 경우 양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양자협정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외교부) 양자협정 추진현황]

| 구 분         | 국가명  |
|-------------|--|
| 既체결         | 베트남('21.5월)  |
| 추진 중 (17개국) | 인니, 인도, 칠레, 태국, 몽골, 라오스, 우즈베크, 사우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모로코, UAE |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양자협정 체결 및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므로, 환경부는 사업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sup>7)</sup>

7) 예를 들어, 양자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상대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의향서(LOI, Letter of Intend)를 받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축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의 감독기구에서 방법론·사업을 승인하고 감축실적(6.4ER) 인정받으며, 사업자가 상대국가와 상응조정 실시

### 가. 현 황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sup>1)</sup>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순환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연료유,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국고보조율 50%)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부는 2022년 기금운용계획 수정계획안 3억 5,000만원 대비 14억 5,000만원 (414.3%)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계획안(B) | 증감    |         |
|------------|------------|--------------------|-------|----------------|-------|---------|
|            |            | 당초                 | 수정(A) |                | B-A   | (B-A)/A |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          | 1,000              | 350   | 1,800          | 1,450 | 414.3   |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환경부

“2021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에 1만2052톤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재활용된 물량은 하루 6,729톤, 재활용률은 55.8%에 그쳤으며, 나머지 잔재물은 시멘트 소성로로 투입되거나 단순 소각·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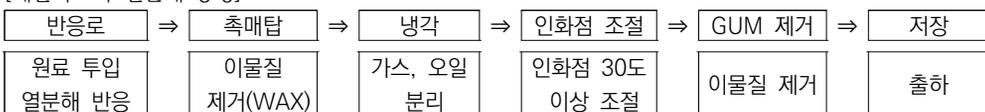
하지만 폐플라스틱은 열분해<sup>2)</sup> 처리 과정을 통해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기후대응기금 6131-306

2) 열분해란 산소가 없거나 희박한 조건에서 직·간접적인 가열을 통해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



자료: 환경부

생산된 열분해유는 일반 연료나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수소 개질 등에 활용이 가능한 바, 환경부는 2021년 6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고도화를 통해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을 지원한다는 목표 하에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현행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3)</sup>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내 열분해 처리 목표]

(단위: 만톤/년, 투입량 기준)

| 구 분      | '20년 | '25년 | '30년 |
|----------|------|------|------|
| 계        | 1.1  | 31   | 90   |
| 지자체      | -    | 4    | 20   |
| 석유/화학 업계 | -    | 25   | 60   |
| 재활용 업계   | 1.1  | 3    | 10   |

주: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목표: ('20년) 0.1% → ('25년) 3.6% → ('30년) 10%

자료: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2021.6.

특히, 환경부는 2022년부터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예산에서는 신규 4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비 및 설계비 등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사업 중 1개소에 대한 공사비 일부(연부율 40%)인 13억원에 더해,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한 설계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였다.

3) 또한, 환경부는 2022년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고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이 열분해유로 회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구분        | 예산액   | 산출내역  |
|-----------|-------|---|
| 2022년 예산  |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백만원</li> <li>- 신규사업(4개소): 4개소 × 500백만원(타당성조사비 및 설계비) × 50%(보조율) = 1,000백만원</li> </ul>   |
| 2023년 예산안 | 1,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000백만원</li> <li>- 계속사업(1개소): 2,600백만원(공사비, 연부율 40%) × 50%(보조율) = 1,300백만원</li> <li>- 신규사업(2개소): 2개소 × 500백만원(설계비) × 50%(보조율) = 500백만원</li> </ul> |

자료: 환경부

## 나. 분석의견

환경부가 2022년 신규 추진한 사업의 지자체별 추진현황 및 집행 부진상황을 고려할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한 계속사업 공사비 및 신규사업 설계비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2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지자체 공모 및 전문가 평가단의 선정평가를 통해 총 4개 지자체를 선정(22.1월)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별로 공공열분해시설이 설치될 부지 선정 과정과 지방비 확보(추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들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22년 예산에 편성한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중 동 사업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2022년 1월 황성군, 구미시, 춘천시(강원도), 인천 서구 등 4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sup>4)</sup>

4) [지자체별 공공열분해시설 구축 계획]

| 구분        | 황성군     | 구미시     | 춘천시(강원도) | 인천 서구   |
|-----------|---------|---------|----------|---------|
| 처리용량      | 0.1만톤/년 | 0.5만톤/년 | 0.5만톤/년  | 0.5만톤/년 |
| 총사업비(예산액) | 120억원   | 150억원   | 150억원    | 150억원   |

자료: 환경부

그러나 사업 공모과정에서 각 지자체별 부지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 추진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별로 별도의 부지선정 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후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절차 등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어 순차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9월 27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지자체별로 2억 5,000만원씩 총 10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내에 설계 용역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한 구미시와 횡성군은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춘천시(강원도)와 인천 서구 등 2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00만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22년도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초 계획 | 수정 ('22.9월) | 교부액 ('22.9월) | 실집행액 ('22.9월) | 추진단계  |
|-----------|-------|-------------|--------------|---------------|---|
| 합계        | 1,000 | 350         | 200          | 14            |   |
| 횡성군       | 250   | 100         | 50           | 14            | -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내 설치<br>-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2.6.~'23.1.)                      |
| 구미시       | 250   | 150         | 50           | -             | -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내 설치<br>-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2.8.~'22.12.)                      |
| 강원도 (춘천시) | 250   | 50          | 50           | -             | - 소각시설이 위치한 환경공원 부지내 설치<br>- 예산 확보 후 타당성조사 추진 ('22.10~'23.3.)               |
| 인천 서구     | 250   | 50          | 50           | -             | - 수도권매립지 내 기타 잔여부지 확보 완료('22.4)<br>- 추경('22.9월) 이후 타당성조사 추진 ('22.10~'23.3.) |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2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1,400만원을 실집행한 횡성군을 제외하면 2022년 9월 기준 실집행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구

미시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춘천시(강원도)와 인천 서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① 구미시에 대해서는 공사비 일부(연부율 4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실제로 2022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설계 공모절차 및 설계 완료까지 약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설계가 완료된 이후 추진되는 공사 계약 발주 및 체결 일정(약 1~2개월) 등을 고려할 경우 2023년 10월이 되어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3년 예산안에 제시한 공사 연부율(40%) 및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② 2023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초('23.1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 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sup>5)</sup>

하지만 2022년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으로 이월되어 완료되는 상황인 바, 2023년 신규사업 또한 부지 확보 과정, 지방비 확보 절차를 비롯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3년 신규 사업(2개소)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예산(수정계획안 기준 개소당 5,000만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따라서 환경부가 2022년 신규 추진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집행 부진상황을 고려할 경우,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한 계속사업 공사비 및 신규사업 설계비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규모 및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22.5) 결과, 목포시, 춘천시, 문경시, 순천시, 김해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모과정에서 어느 지자체가 선정될 것인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부지 확보계획을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6) 다만, 2022년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설계비가 삭감된 사업(춘천시, 인천 서구 2개소)은 2023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설계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3년 신규사업(2개소)에 반영된 설계비(개소당 2억원)를 2022년 계속사업에 대한 설계비로 조정하여 편성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 1

## 현황

국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4,285억 3,9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196억 5,300만원(21.8%) 감소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국세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737,987    | 548,192            | 548,192 | 428,539        | △119,653 | △21.8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9,255억 6,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6억 9,000만원(0.2%) 감소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국세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1,800,663  | 1,933,000          | 1,921,878 | 1,925,568      | △3,690 | △0.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한편, 국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2023년도 국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신규 세부사업은 없으며 총 지출 기준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0.4%(전년 추경대비 0.2%) 감소하였고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34개 세부사업 중 과반인 20개 세부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다.

2023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고 도입 유예에 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 추이를 살펴보고 유예가 확정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사업 예산안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은 모든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매월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고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유형화되어 일선에 공유되면 청원심의회 개최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원심의회 운영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세청은 2023년 재건축청사 착공이 예정되어 임시청사 신규이전 비용이 편성된 관서의 공사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공사착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연내 착공 및 임시청사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국세청의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임시청사 이전비용 등이 있다.

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고 포상금 예산이 증액되었다.

②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은 국세 관서의 청사 이전(개청포함) 시 수반되는 이전비 및 청사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경비에 편성된 임시청사 임차료 등을 사업비로 이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9개) |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 1,664              | 1,664  | 3,156          | 1,492  | 89.7    |
|              | 확정채무 지급               | 3,656              | 3,656  | 3,716          | 60     | 1.6     |
|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 2,727              | 2,727  | 2,873          | 146    | 5.4     |
|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 2,663              | 2,663  | 2,798          | 135    | 5.1     |
|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br>(정보화) | 47,739             | 47,739 | 55,226         | 7,487  | 15.7    |
|              | 세무환경개선                | 8,589              | 8,589  | 8,789          | 200    | 2.3     |
|              | 행정지원인력 운영             | 35,769             | 35,769 | 38,063         | 2,294  | 6.4     |
|              | 임시청사 이전비용             | 5,247              | 5,247  | 36,375         | 31,128 | 593.3   |
|              | 홈택스상담센터운영             | 8,066              | 8,066  | 8,873          | 807    | 10.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1

## 세제 도입·시행 관련 법률의 개정 추이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 필요

### 가. 현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sup>1)</sup> 사업은 금융투자소득세 세목 신설·시행에 따라 과세시행 홍보, 성실납세 지원, 종사직원 직무능력 향상, 예정신고 안내 등 과세집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00만원 감액된 4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sup>2)</sup> 사업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 및 그와 연계된 국세행정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1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된다.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에 6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2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35-300

2) 코드: 일반회계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및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 -          | 440                | 440    | 409            | △31     | △7.0    |
|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 37,178     | 62,899             | 62,899 | 45,298         | △17,601 | △28.0   |
| 금융투자소득세<br>전산시스템 개발 | 459        | 22,376             | 22,376 | 605            | △21,771 | △97.3   |
|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 -          | -                  | -      | 265            | 265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 나. 분석의견

세제 도입·시행과 연계된 사업 예산안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안에 대한 개정 심사 추이 및 논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고 도입 유예에 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의 개정 추이를 살펴보고 유예가 확정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사업 예산안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금융세제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된 종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2천만원 초과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종합과세되었다. 한편,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기본세율 0.45%)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열거주의 과세로 인한 과세공백 발생, 투자유형·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 펀드 소득의 불완전 과세 및 다른 금융상품과의 손익통산 불가능 문제 등으로 인해 2021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sup>3)</sup>으로부터 실현된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류 과세하는 체계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을 통산·과세하며 직전 5년간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통화긴축, 물가상승 등 주식시장의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하였고 개인투자자의 보호장치 마련 등을 통해 투자자의 조세 수용성 제고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하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 9. 1. 국회에 제출되었다.

만약 세제 도입이 유예되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홍보 등 관련 예산이 2023년 내 추진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법률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유예가 확정될 경우 동 예산 편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2024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편성된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ISP 예산은 디지털세 관련 법률의 심사·내용 추이를 반영하여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다국적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매출 및 수익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 문제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원천지국이 이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이다. 우리나라 등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필라1)과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방식(필라2)이 2021년 10월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GloBE)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 9. 1. 국회에 제출하였다.<sup>4)</sup> 또한,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전산시

3) 원금 손실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투자계약증권)과 파생상품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7157)

스텝 구축을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ISP 수립을 위한 예산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일부 국가<sup>5)</sup>에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고 그로 인해 국제적인 시행시기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논의내용과 연동하여 제도 및 시행시기에 관한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ISP 사업 예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내용 및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EU의 경우 헝가리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자국 세법 반영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청원심의회 개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가. 현 황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자지원<sup>1)</sup> 사업은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와 존경을 받는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납세보호위원회 및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700만원 감액된 1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자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납세자권익보호 및<br>성실납세지원 | 833        | 1,500              | 1,500 | 1,263          | △237 | △15.8   |
|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562        | 515                | 515   | 562            | 47   | 9.1     |
| 세금포인트제도홍보           | 11         | 11                 | 11    | 100            | 89   | 809.1   |
| 성실납세 지원             | 115        | 115                | 115   | 115            | 0    | 0       |
| 모범납세자우대제도 운영        | 70         | 70                 | 70    | 70             | 0    | 0       |
|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67         | 56                 | 56    | 67             | 11   | 19.6    |
|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8          | 8                  | 8     | 8              | 0    | 0       |
| 납세협력비용 측정           | -          | 725                | 725   | -              | △725 | 순감      |
| 청원심의회 운영            | -          | -                  | -     | 341            | 341  | 순증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3133-300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5.8%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일시적으로 편성된 납세협력비용 측정 예산을 제외하면 2022년도 예산 7억 7,500만원에서 4억 8,800만원(63.0%)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사유를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세금 포인트제도 홍보예산이 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청원심의회 운영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 및 공개청원방식 도입, 청원 조사·심의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청원법」이 2020년 12월 전부개정되었으며, 온라인청원시스템 및 공개청원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는 ‘청원심의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기관은 청원심의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2022년 9월말 현재 청원심의회 근거규정 마련을 추진 중이며,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3억 4,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개 본청, 7개의 지방청 및 133개의 세무서마다 청원심의회를 설치하고 매월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예산을 계상하였다.<sup>3)</sup>

[2023년도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 내역사업명    | 비목             | 2023예산안 | 산출내역   |
|----------|----------------|---------|--|
| 청원심의회 운영 | 일반수용비 (210-01) | 34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위원회 수당 :<br/>2명×200천원×12회=5,000천원</li> <li>· 지방청 위원회 수당 :<br/>2명×100천원×84회=16,800천원</li> <li>· 세무서 위원회 수당 :<br/>2명×100천원×1,596회=319,200천원</li> </ul>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3) 본청: 1개 × 12회 = 12회

지방청: 7개 × 12회 = 84회

세무서: 133개 × 12회 = 1,596회

##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모든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매월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고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유형화되어 일선에 공유되면 청원심의회 개최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원심의회 운영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속해있어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도 청원심의회를 설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공개청원제도가 실시되는바 도입 초기부터 매월 모든 지방청·세무서에서 청원심의회를 개최함을 상정하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

또한, 「청원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sup>4)</sup>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의 경우 사례가 축적되어 유형화하게 되면 청원사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여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기관이 판단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 기관의 경우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별도로 규칙 등을 이미 제정하였으나<sup>5)</sup> 2023년도 예산안에 청원심의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미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2023년도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 사업 예산안에 청원심의회 관련 예산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무청의 경우 「병무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

### 4)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5) 「법원청원규칙」(대법원규칙, 2022.1.28. 제정),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2021.12.23. 제정),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2022.4.15. 제정)

정」을 2022년 4월에 제정하고 2023년도 예산안 중 병무행정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청원심의회 개최 관련 예산편성]

(단위: 천원)

| 부처명         | 세부사업명              | 2023예산안 | 산출내역   |
|-------------|--------------------|---------|--|
| 식품의약<br>안전처 | 온라인 식의약<br>안전 관리운영 | 29,000  | ◦전문가 자문 수당: 200,000원×4명×30회<br>◦위해평가 전문가리뷰: 200,000원×5명×5회 |
| 병무청         | 병무행정운영             | 14,000  | -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모든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매일 청원심의회가 개최된다는 전제는 다소 과도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고 운영사례가 축적되어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유형화되면 청원심의회 개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심의회 운영 예산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유형화되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청원심의회 심의사례를 축적하고 유형화하여 관련 내용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sup>1)</sup> 사업은 국세상담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국세행정 전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억 8,700만원 증가한 55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 내역사업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국세 관련 법령·판례 및 국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억 3,500만원 증액된 82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 42,690     | 47,739             | 47,739 | 55,226         | 7,487 | 15.7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173        | 358                | 358    | 8,293          | 7,935 | 2,216.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동 시스템의 고도화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8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잦은 세법개정으로 세법해석 질의가 급증하는 등 법령정보 수요는 증가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 2006년 개통한 후 15년간 전면개편된 적이 없었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AI 등 최신기술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비 29억 8,700만원, H/W 취득비 30억 3,900만원, S/W 취득비 17억 5,600만원 등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133-50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예산안 | 세부 내역  |
|-------|---------|--|
| 일반연구비 | 3,313   | 인공지능 기반 검색엔진 개발, 시스템 재구축,<br>대내·외 연계체계 구축 등 개발비 2,987<br>감리비 326 |
| 자산취득비 | 4,795   | H/W 취득 3,039<br>S/W 취득 1,756                                     |
| 계     | 8,108   | -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추진 로드맵]



자료: 국세청

## 나. 분석의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3년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분석을 거치지 않았고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기간도 짧아 일반 정보화 사업보다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절차 및 검토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 변경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sup>2)</s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sup>3)</sup>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검토에 있어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스템은 2022년도 5월에 수립된 2023년도 실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 사업 ISP가 2022년 4~7월에 수행되었는데, 국세청은 2022년 7월 이후에 기획재정부 및 NIA의 검토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요구 이전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2022년 7월 이후 검토하여 9월에 동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절차 및 검토기간이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보다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나, 발주 과정에서 계약이 유찰되는 경우 차년도로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단년도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며, 2023년 초에 발주하여 12월 말 베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추진 세부일정(안)]

| 구 분                     | 추진내용   | 2023년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시스템<br>구축               | 분석   | ■     |     |     |     |
|                         | 설계   | ■     | ■   | ■   |     |
|                         | 개발   |       | ■   | ■   | ■   |
|                         | 인프라 도입/구축  |       |     | ■   | ■   |
|                         | 기능 및 단위 테스트  |       | ■   | ■   | ■   |
|                         | 성능테스트  |       |     |     | ■   |
|                         | 통합·집중·인수 테스트   |       |     |     | ■   |
| 시스템<br>시범<br>운영 및<br>교육 | 시범·시범운영 및<br>교육(사용자, 관리자)  |       |     |     | ■   |
|                         | <b>개통</b>  |       |     |     |     |
| 사업<br>완료<br>(준공)        | 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도입/구축 : 실효적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단위 테스트 이전에 구축완료 (인프라 담당부서를 통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사전 구축일정 협의 필요)</li> <li>•시범 운영 및 오픈 : 통합 테스트 후 시범운영과 함께 교육을 실시(1개월) → 안정적인 시스템 개통(2023.12.1.)에 대비</li> </ul> |       |     |     |     |

자료: 국세청

그러나 2023년도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 공고기간이 일반적으로 1개월이며 유찰될 경우 재공고기간(약 10일)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최대 2회 재공고될 수 있다는 점, 기술협상 및 사업자 선정에도 1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약과정에서 일부 변수가 발생하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종료가 차년도로 넘어가 동 사업 예산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고도화 사업 추진일정이 12개월이므로 유찰 등으로 인해 사업 종료시기가 차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국세청은 동 시스템 고도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임시청사이전비용<sup>1)</sup> 사업은 국세 관서의 청사 이전·개청 시 수반되는 이전비 및 청사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1억 2,500만원 증액된 363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임시청사이전비용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임시청사이전비용 | 5,897      | 5,247              | 5,247 | 36,375         | 31,125 | 593.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세청

동 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기존 각 지방청 기본경비에 계상되어 있던 청사 임차료, 관리용역비가 동 사업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 나. 분석의견

국세청은 2023년 재건축청사 착공이 예정되어 임시청사 신규이전 비용이 편성된 관서의 공사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공사착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 상 국세청 청사의 신축·재건축이 추진 중인 관서는 영등포세무서, 북광주·창원세무서, 광주·금천·중부산세무서 등이 있다. 이 중 현 청사 재건축 대상으로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이어서 임시청사로 이전했거나 2023년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관서는 총 5개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138-303

[국세청 청사 신축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관서명      | 사업기간      | 2022   |                                | 2023<br>예산안 |
|---------------------------------|----------|-----------|--------|--------------------------------|-------------|
|                                 |          |           | 수정     | 집행 <sup>2)</sup><br>(2022.7월말) |             |
| 국세청<br>청사시설<br>취득 <sup>1)</sup> | 영등포세무서   | 2017-2022 | 8,029  | 1,876                          | 12,139      |
|                                 | 우편물자동화센터 | 2020-2024 | 4,713  | -                              | 4,550       |
|                                 | 서인천세무서   | 2018-2022 | 14,531 | 6,587                          | -           |
|                                 | 동래세무서    | 2018-2022 | 12,544 | 5,857                          | -           |
|                                 | 구로세무서    | 2019-2023 | 1,424  | -                              | 2,045       |
|                                 | 북광주세무서   | 2019-2023 | 2,641  | -                              | 11,000      |
|                                 | 창원세무서    | 2019-2023 | 3,325  | -                              | 8,616       |
|                                 | 은평세무서    | 2020-2024 | 136    | -                              | 765         |
|                                 | 화성세무서    | 2020-2024 | 284    | -                              | 873         |
|                                 | 동고양세무서   | 2021-2025 | 347    | -                              | 756         |
|                                 | 금천세무서    | 2021-2025 | 416    | -                              | 910         |
|                                 | 광주세무서    | 2021-2025 | 414    | 1                              | 906         |
|                                 | 중부산세무서   | 2021-2025 | 307    | -                              | 666         |
|                                 | 동대구세무서   | 2022-2026 | 568    | -                              | 384         |
| 국세청<br>인천지방<br>국세청<br>청사 신축     | 인천지방국세청  | 2021-2026 | 12,793 | 11,152                         | 1,789       |
| 국세청<br>송파세무서<br>청사<br>재건축       | 송파세무서    | 2022-2026 | 847    | -                              | 637         |
| 국세청<br>잠실세무서<br>청사<br>재건축       | 잠실세무서    | 2022-2026 | 816    | -                              | 606         |

주: 1) 영등포 어린이집 신축은 제외

2) 집행은 전년도 이월액 제외

1. 2023년도 신규 편성 사업은 제외

2.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년 변경 요구 전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

[관서건물 재건축에 따라 임차 중 또는 임차예정인 관서]

(단위: 백만원)

| 관서명    | 사업기간 <sup>1)</sup>       | 2022.9월말<br>진행단계 | 준공시기<br>(예상) | 2023 임시청사 관련비용 |       |           |     |
|--------|--------------------------|------------------|--------------|----------------|-------|-----------|-----|
|        |                          |                  |              | 구분             | 임차료   | 일반<br>수용비 | 공사비 |
| 북광주세무서 | 2019-2023<br>(2019-2024) | 발주 · 계약          | 2024.12.     | 계속             | 758   | -         | -   |
| 창원세무서  | 2019-2023<br>(2019-2025) | 실시설계 완료          | 2024.12.     | 계속             | 1,206 | -         | -   |
| 중부산세무서 | 2021-2025                | 기본(중간)<br>설계중    | 2025. 6.     | 신규             | 330   | 35        | 185 |
| 금천세무서  | 2021-2025                | 기본(중간)<br>설계중    | 2025. 6      | 신규             | 390   | 53        | 287 |
| 광주세무서  | 2021-2025                | 기본(중간)<br>설계중    | 2025. 6      | 신규             | 180   | 51        | 272 |

주: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2022년 변경 요구 전을 기준으로 하되, 괄호안은 변경된 사업기간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중부산·금천·광주세무서의 경우 국세청은 2022년 9월 기준 기본설계 중으로 2023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이며 그에 따라 2023년 10월 착공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위해 일반수용비·공사비와 3개월분 임차료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공사계획은 2021·2022년 기본·실시계획 수립, 2023~2025년 공사 후 2025년 준공이었다. 그러나 세 관서 모두 설계용역이 2021년 10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등 설계단계부터 일부 지연됨에 따라 공사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중간)설계 후 산출된 예상공사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등과 재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일정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례로, 영등포세무서의 경우 2017년 8월 설계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으나 공사비용 문제로 신축공사는 2021년에 추진되어 2023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창원세무서 역시 2019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비용 협의 등으로 인해 2022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증부산·금천·광주세무서의 설계용역 역시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은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공사착수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2023년 내 재건축 착공 및 임시청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 1

## 현황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946억 2,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70억 5,600만원(151.9%) 증가하였다.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38,602     | 37,568             | 37,568 | 94,624         | 57,056 | 151.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관세청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6,382억 8,1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66억 7,300만원(4.4%) 증가하였다.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563,072    | 614,134            | 611,608 | 638,281        | 26,673 | 4.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관세청

한편,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2023년도 관세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3.9% 증액 수준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② 수출입통관 프로그램은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19~'23) 사업의 잔여사업비, 임차료 등으로 증액되었고(2022년 441억원 → 2023년 547억원), ③ 관세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및 중대재해방지 예산이 신규 편성되면서 증액되었고(2022년 782억원 → 2023년 861억원), ④ 부산세관 청사개선, 관세행정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 신설되어 세부사업 수가 28개에서 30개로 증가하였다.

2023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만감시용 드론의 경우 기술적 한계와 잦은 고장 등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적발실적 역시 전무한 상황이므로, 운용대수 감축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항 통합검사장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검사장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 근로자의 투입 시점이 2023년 9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므로, 6개월치로 편성된 인건비 중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 3

##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관세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22억 3,600만원 규모이다.

부산세관 청사개선 사업은 1970년에 건축된 노후 청사의 구조·시설보강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청사시설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은 107억원 9,400만원이다.

관세행정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안전물품·장비를 구매하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청사 등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4억 4,200만원이다.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일반회계<br>(2개) | 부산세관 청사개선    | 10,794 |
|              | 관세행정 안전관리 지원 | 1,442  |
| 합 계          |              | 12,236 |

자료: 관세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지원(ODA), 서울본부 기본경비 등이 있다.

①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은 컨테이너검색기 잔여사업비, 청사 임차료 등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은 관세당국 간 협력회의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 대상 국가가 2개국에서 4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서울본부 기본경비는 대구·광주본부 소속기관 일부가 서울본부 관할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관하여 증액되었다.

[관세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4개)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br>장비도입    | 14,372             | 14,372 | 27,414         | 13,042 | 90.7    |
|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 308                | 308    | 1,187          | 879    | 285.4   |
|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br>지원(ODA) | 5,307              | 5,307  | 8,046          | 2,739  | 51.6    |
|              | 서울본부 기본경비               | 2,896              | 2,896  | 3,766          | 870    | 30.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관세청

1

드론 운용대수 감축을 통한 관련 비용 절감 필요

가. 현 황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sup>1)</sup>은 컨테이너검색기, X-Ray 검색기, 드론 등 전국 공항만에 설치된 통관감시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10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 15,225     | 10,155             | 10,155 | 10,104         | △51  | △0.5    |
| 컨테이너검색기<br>운영관리  | 3,668      | 3,811              | 3,811  | 3,071          | △740 | △19.4   |
| 기타통관감시장비<br>운영관리 | 11,557     | 6,344              | 6,344  | 7,033          | 689  | 10.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역사업인 기타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사업에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X-Ray 검색기 유지보수, 차량형 검색기 유지보수, 항만 CCTV 유지보수, 드론 유지보수 등 각종 감시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이중 드론 유지보수 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3,800만원 증액된 1억 6,926만원으로, 부산세관 드론(10대)과 인천세관 드론(4대) 총 14대의 드론에 대한 12개월치 유지보수 비용과 통신료 및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43-301

[드론 유지보수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년도 예산 | 2023년도 예산안 |
|--------------|-----------|------------|
| 드론 유지보수 비용   | 52        | 90         |
| 드론 통신료 및 보험료 | 79        | 79         |
| 합 계          | 131       | 169        |

자료: 관세청

[2023년도 드론 유지보수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 예산액          | 산출내역  |
|--------------|---|
| 169,26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유지보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세관(10대): 5,500,000 × 12월 = 66,000,000원</li> <li>- 인천세관(4대): 2,000,000 × 12월 = 24,000,000원</li> </ul> </li> <li>◦ 드론 통신료 및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료: 19,200,000원</li> <li>- 보험료: 60,060,000원</li> </ul> </li> </ul> |

자료: 관세청

나. 분석의견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감시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적발실적 역시 도입 이후 전무한 상황이므로, 드론 운용대수를 감축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감시역량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항만 감시용 드론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부산세관 10대, 인천세관 4대의 드론을 도입하였으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2022년부터는 운용 중인 드론 14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동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관세청 드론 도입 현황]

| 구분   | 운용세관 | 도입목적   | 기종       | 도입대수 | 집행액        |
|------|------|--------|----------|------|------------|
| 2019 | 부산세관 | 항만 감시용 | 회전의 헥사콥터 | 10대  | 5억 9,700만원 |
| 2020 | 인천세관 | 항만 감시용 | 회전의 옥토크터 | 4대   | 3억 9,700만원 |

자료: 관세청

그런데, 관세청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드론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드론 한대당 연간 운용 횟수는 35.7회, 연간 운용 시간은 8시간 29분에 불과하며, 2022년의 경우에도 8월말 기준 드론 한대당 연간 22.1회, 5시간 11분을 운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신규로 도입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 첫 해인 2020년에 비해서 개선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감시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드론 운용을 통한 적발실적은 3년 내내 전무한 상황이다.

[관세청 드론 운용 및 적발 실적]

| 구분     |      | 운용실적  |       |           | 위법행위<br>적발실적(건) |
|--------|------|-------|-------|-----------|-----------------|
|        |      | 일수(일) | 횟수(회) | 시간        |                 |
| 2020   | 부산세관 | 62    | 153   | 26시간 58분  | -               |
|        | 인천세관 | -     | -     | -         | -               |
|        | 합계   | 62    | 153   | 26시간 58분  | -               |
| 2021   | 부산세관 | 103   | 331   | 73시간 3분   | -               |
|        | 인천세관 | 45    | 169   | 45시간 42분  | -               |
|        | 합계   | 148   | 500   | 118시간 45분 | -               |
| 2022.8 | 부산세관 | 58    | 211   | 41시간 18분  | -               |
|        | 인천세관 | 34    | 99    | 31시간 15분  | -               |
|        | 합계   | 92    | 310   | 72시간 33분  | -               |

자료: 관세청

[드론 대당 운용횟수 및 운용시간]

| 구분         | 대당 운용횟수(회) |        | 대당 운용시간  |         |
|------------|------------|--------|----------|---------|
|            | 2021       | 2022.8 | 2021     | 2022.8  |
| 부산세관 (10대) | 33.1       | 21.1   | 7시간 22분  | 4시간 8분  |
| 인천세관 (4대)  | 42.6       | 24.8   | 11시간 26분 | 7시간 49분 |
| 전 체 (14대)  | 35.7       | 22.1   | 8시간 29분  | 5시간 11분 |

자료: 관세청

드론 운용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 운용중인 드론의 경우 기술적 성능이 미흡하거나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드론으로는 차질 없는 감시업무 수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건의 고장 및 작동불량 등이 발생했으며 고장 내역의 대부분이 기체결함(센서 불량, 균형 불량)에 의한 것으로 고장 발생 시 정상적인 항만감시업무 수행이 불가할 뿐 아니라, 약 14kg의 기체 무게(부산세관 운용 드론) 및 고속으로 운행하는 드론의 특성 상 항만 내 시설물, 차량, 인명 등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드론 고장 및 작동불량 발생 내역]

| 구분             | 발생일자      | 세관 | 고장 등 내역                              | 수리비용   | 비고     |
|----------------|-----------|----|--------------------------------------|--------|--------|
| 2020년<br>(5건)  | '20.04.03 | 부산 | 비정상 지자계 값 발생(전기체 리콜)                 | 무상     |        |
|                | '20.07.07 | 부산 | 비정상 지자계 값 발생                         | 무상     |        |
|                | '20.08.14 | 부산 | 프로펠러 부품재질 불량으로 고정볼트 파손(전기체 리콜)       | 무상     |        |
|                | '20.02.21 | 부산 | 모터피복, 카메라집별 등 납품초기 불량                | 무상     |        |
|                | '20.03.01 | 부산 | CNV카메라 집별 불량                         | 무상     |        |
| 2021년<br>(13건) | '21.04.27 | 부산 | 위치오차(HDOP)오류 비행전 보정 미실시              | 무상     | 예비품 사용 |
|                | '21.05.22 | 부산 | 조종기와 기체간 통신불량으로 자동복귀 중 KILL S/W작동 추락 | 보험처리   | 360만원  |
|                | '21.11.01 | 부산 | 배터리 전압 부족으로 해상 추락                    | 전손보험처리 | 불용처리   |
|                | '21.11.17 | 부산 | 착륙직후 전복 사고                           | 무상     |        |
|                | '21.12.22 | 부산 | 착륙직후 전복 사고                           | 무상     |        |
|                | '21.05.26 | 부산 | 컴퍼스 및 GPS 등 센서오류                     | 무상     |        |
|                | '21.05.31 | 부산 | 안테나 수신 불량                            | 무상     |        |
|                | '21.11.30 | 부산 | 집별 설정수정 등 불량                         | 무상     |        |
|                | '21.12.03 | 부산 | 안테나 수신기 불량                           | 무상     |        |
|                | '21.02.23 | 인천 | 프로펠러 부품불량                            | 무상     |        |
|                | '21.04.05 | 인천 | 영상 끊김 현상으로 영상케이블 불량 및 거치대 고정 불량      | 무상     |        |
|                | '21.06.28 | 인천 | 모터케이블 불량으로 해상 추락(전기체 리콜)             | 무상     | 수리중    |
|                | '21.12.16 | 인천 | 카메라제어모듈 불량                           | 무상     | 수리중    |
| '22.8월<br>(6건) | '22.01.06 | 부산 | 착륙직후 전복 사고                           | 무상     |        |
|                | '22.01.25 | 부산 | 비행중 GPS 이상으로 해상 추락                   | 무상     | 제작중    |
|                | '22.02.14 | 부산 | 착륙 직후 전복 사고                          | 무상     |        |
|                | '22.04.10 | 부산 | 비행중 GPS 이상으로 건물충돌                    | 하자신고   | 조달품질원  |
|                | '22.01.14 | 부산 | 안테나 부품 파손                            | 무상     |        |
|                | '22.02.18 | 부산 | 집별 균형 불량                             | 무상     | 수리중    |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이 현재의 드론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기술적 한계가 있고, 도입 이후 드론 운용을 통한 적발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14대의 드론을 모두 감시업무에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또한, 적발실적이 없어 운용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재정운용상의 효율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실제 운용 대수를 감축함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통합검사장 완공 지연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감액 필요

#### 가. 현 황

관세행정 인력지원 사업<sup>1)</sup>은 관세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고용하는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을 지원하는 인건비성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관세행정 인력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관세행정 인력지원   | 8,373      | 14,224             | 14,224 | 15,078         | 854 | 6.0     |
| 공무원근로자 운영지원 | 8,310      | 14,139             | 14,139 | 14,988         | 849 | 6.0     |
|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 63         | 85                 | 85     | 90             | 5   | 5.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역사업인 공무원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공무원근로자 382명의 임금과 추가로 고용하는 14명에 대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예산안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8억 4,900만원 증액된 14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7131-352

[2023년도 공무원근로자 운영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구분    | 산출내역                                | 예산액(백만원) |
|-------|-------------------------------------|----------|
| 상용임금  | 382명×2,652천원×12개월 + 14명×2,652천원×6개월 | 12,380   |
| 고용부담금 | 382명×517천원×12개월 + 14명×517천원×6개월     | 2,414    |
| 복리후생비 | 382명×500천원 + 14명×250천원×1회           | 194      |
| 합 계   |                                     | 14,988   |

자료: 관세청

## 나. 분석의견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에 근무하기 위한 공무원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6개월치 편성되었는데, 당초 2023년 7월로 예정된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업무 개시 시점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23년 9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므로, 해당 검사장에 투입될 공무원근로자 인건비 예산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무원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에 2023년 새롭게 고용할 예정인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6개월치 인건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11명의 근로자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항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해당 인원 중 7인은 전기·기계 설비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4인은 사무실 창고 등 시설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인천항 통합검사장은 관세청이 인천항 내항 재개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화객선 입항장소 변경, 송도 신항 물동량 증가 등 인천항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신축하는 시설로, 2019년 2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해상특송 자동분류기, 컨테이너 검색기 등의 검사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다.<sup>2)</sup>

그런데 인천항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 및 시설 구축이 안전설비 강화를 위한 공사 계획 변경,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자재 확보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면서, 당초 2023년 7월로 예정된 완공 시기가 2023년 9월로 연기되었다.

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일반회계 1131-303)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 사업 지연 현황]

| 완공 시기                | 지연 사유  |
|----------------------|--|
| 2023.7.<br>→ 2023.9. | - 안전설비 강화를 위한 공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45일)<br>-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자재 확보 지연(12일) |

자료: 관세청

이에 따라 인천항 통합검사장 개소와 공무원 인력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는 2023년 10월쯤 가능한 상황이므로, 6개월치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 중 절반 정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3)</sup>

참고로 관세청은 당초 부처 요구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공사 중단과 완공 연기를 예상할 수 없어 6개월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며, 감액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3) 3개월치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약 1억 600만원 감액이 가능하다.

## 가. 현황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sup>1)</sup>은 수출입 통관 검사 강화, 보세화물 신속 처리, 여행자 통관절차 및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9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수출입통관 촉진<br>및 안전관리 | 8,114      | 10,209             | 10,009 | 9,939          | △70 | △0.7    |
| 통관안전지원             | 1,971      | 1,108              | 1,108  | 1,119          | 11  | 1.0     |
| 보세화물관리             | 1,296      | 1,556              | 1,556  | 1,514          | △42 | △2.7    |
| 여행자통관지원            | 4,847      | 7,545              | 7,345  | 7,306          | △39 | △0.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역사업인 여행자 통관지원 사업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인쇄, 휴대폰을 활용한 통관절차 진행 등 여행자 통관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7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 나. 분석의견

**여행자 휴대폰 모바일 신고 전용 앱 개발이 지연되면서 모바일 신고대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 시점이 미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12개월치로 편성된 유지보수비 중 일부에 대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017년부터 추진한 여행자 휴대폰 모바일 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다른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기존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함에 따라 메뉴 접근이 어렵고 앱 구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2021년 예산에 ‘여행자 휴대폰 모바일 신고 전용 앱’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모바일 신고대 1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1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 모바일 전용 앱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중 일부(9,628만원)가 2022년으로 이월되었고, 신규 앱은 2022년 5월부터 정상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신규로 도입한 15대의 모바일 신고대 역시 2022년 5월부터 정상 가동되었다.<sup>2)</sup>

한편, 동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안에는 신규로 도입한 15대의 모바일 신고대에 대한 12개월치 유지보수비(6,400만원)가 반영되어 있는데, 해당 신고대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구축 후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지원된다. 따라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3년 6월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편성된 유지보수비 중 일부에 대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심사대 가동 및 무상 유지보수 기간]

| 구분    | 앱 개발 완료    | 모바일 심사대 가동 | 무상 유지보수 기간    |
|-------|------------|------------|---------------|
| 당초 계획 | 2021년 내    | 2022.1.1.  | ~ 2022.12.31. |
| 실제 운영 | 2023.5.24. | 2022.5.24. | ~ 2023.5.23.  |

자료: 관세청

2) 2022.1.1.부터 시험운영을 위한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아래에서 설명할 무상 유지보수기간과는 무관하다.





조달청



# I 예산안 개요

## 1 현 황

### 가. 총수입·총지출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202억 2,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3억 6,600만원(6.4%)이 증가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362,430    | 300,862            | 300,862 | 320,228        | 19,366 | 6.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629억 3,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07억 600만원(10.5%)이 감소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 조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209,131    | 294,665            | 293,640 | 262,934        | △30,706 | △10.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조달청

## 나. 세입·세출예산안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5,173억 6,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33억 8,000만원(4.7%) 증가하였다.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511,956    | 492,962            | 493,987 | 517,367        | 23,380 | 4.7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173억 6,7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33억 8,000만원(4.7%) 증가하였다.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조달특별회계 | 407,120    | 492,962            | 493,987 | 517,367        | 23,380 | 4.7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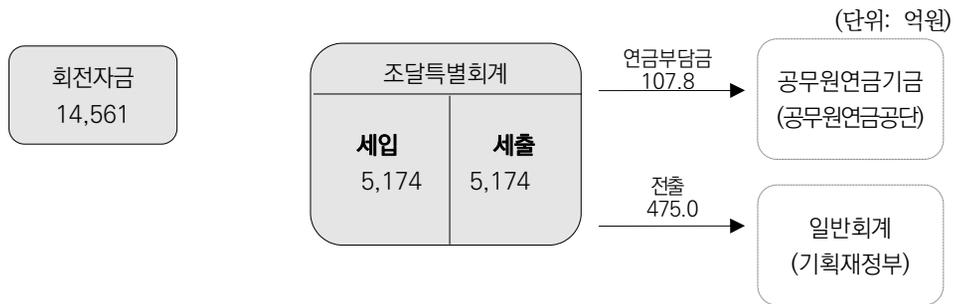
자료: 조달청

## 다.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달특별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47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07.8억원 전출이 발생한다.

[2023년도 조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2023년도 조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기술개발(R&D)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다(17억 1,600만원). ② 국민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혁신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장비를 보급함으로써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사업 구매예산이 증액되었다(2022년 465억원→2023년 483억원). ③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필수 원자재인 알루미늄과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인 니켈의 위기 시 대비용 안전재고를 우선 확충하기 위해 회전자금 전출금 5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달청은 비축물자 사업수입 과목의 예산 추계 과정에서 직전 3년간 방출실적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2023년 중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회소금속 일부가 유상 이관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차익 31.6억원을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차익만큼을 자본계정으로 전출 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추가 계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달청은 2022년 본예산에서 긴급수급조절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요소 및 요소수 구매예산 381억원 중 「비축대상물자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 물자 구매에 활용될 구체적 계획이 없는 19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은 교육과정 개편 및 예산액 대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 수가 목표 대비 미달되었으므로, 조달청은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채용상담회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달청은 배상금 예산을 연례적으로 전용을 통해 증액 집행하고 있는데,

배상금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51억 9,900만원 규모이다.

조달특별회계 사업인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은 공공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영역을 집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제품을 개발한 후 현장으로의 확산을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 사업은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 발표로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부지가 신규 주택공급 택지에 포함됨에 따라 신 청사(수서역세권 부지) 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34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                    | 예산안   |
|----------------|--------------------------|-------|
| 조달특별회계<br>(2개) |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 1,716 |
|                |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신축            | 3,483 |
| 합 계            |                          | 5,199 |

자료: 조달청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청사 이전 지원(손익)(13억 700만원),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92억 2,100만원) 등 2개 사업이다.

청사 이전 지원(손익) 사업은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 발표로 서울지방조달청 청사 부지가 신규 주택공급 택지에 포함됨에 따라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청사에서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22년 12월 임시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감정평가비와 임차료, 이사비 등을 반영하였으나 사업계획이 2023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은 불용하고 2023년도 예산에서 12억 600만원(1,194.1%) 증액 반영되었다.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서 2022년에 설계비(10억 7,700만원) 반영 후 2023년에 신축공사, 감리 예산 등을 반영함에 따라 81억 4,400만원(756.2%)이 증액되었다.

[조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조달<br>특별회계<br>(2개) | 청사 이전 지원(손익)              | 593                | 101   | 1,307          | 1,206 | 1,194.1 |
|                    |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br>비축창고 신축 | 1,077              | 1,077 | 9,221          | 8,144 | 756.2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조달청

## 1

##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확대 필요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조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조달특별회계 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각 계정의 세출을 충당한다.

2023년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구조를 살펴보면, 손익계정의 세입은 3,518억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 지출과 연금부담금을 제외한 1,462억원이 자본계정 전출금으로 계상되고, 자본계정의 세입은 손익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한 1,656억원으로 이 중 자본적 지출을 제외하면 974억 9,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잉여금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내에 마련된 회전자금으로 전출되거나 동법 제21조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되는데,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회전자금으로 500억원, 일반회계로 474억 9,700만원만큼 전출될 예정이다.

## 1-1. 비축물자 사업수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 필요

## 가. 현 황

비축물자 사업수입 과목<sup>1)</sup>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른 비축물자(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용 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등)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과 외상 및 대여 판매분에 대한 이자 수입 등의 세입으로, 손익계정에 포함된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억 9,200만원 증액된 7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45-456

[2023년도 비축물자 사업수입 사업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비축물자 사업수입(손익) | 39,994     | 2,032              | 2,032   | 7,324          | 5,292   | 260.4   |
| 자본계정 전출(손익)   | 118,000    | 127,569            | 128,594 | 146,154        | 17,560  | 13.7    |
| 일반회계 전출(자본)   | 70,000     | 60,572             | 61,597  | 47,497         | △14,100 | △22.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비축물자사업수입 과목의 2023년 예산액 73억 2,400만원은 2019~2021년 원자재방출규모의 평균값(37억 6,800만원)과 2019~2021년 원자재 방출에 따른 평균수익률(1.9437%)을 곱함으로써 산출되었는데, 이는 2022년 예산액 산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비축물자 사업수입 예산액 산출 방식]

|   |
|---|
| 2022년도 예산액 : 2018~2020년 원자재 방출규모 평균값(2,063억원) ×<br>2018~2020년 원자재 판매에 따른 평균수익률(0.985%) = 20억 3,200만원  |
| 2023년도 예산액 : 2019~2021년 원자재 방출규모 평균값(3,768억원) ×<br>2019~2021년 원자재 판매에 따른 평균수익률(1.9437%) = 73억 2,400만원 |

자료: 조달청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비축물자 사업수입 과목의 예산 추계 과정에서 직전 3년간 방출실적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2023년 중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희소금속 일부가 유상 이관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차익 31.6억원을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차익만큼을 자본계정으로 전출 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계상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비축물자사업수입 과목의 2023년 예산액 산출 과정에서는 2019~2021년 방출 실적만이 고려되었을 뿐, 2022년 이후 비축물자의 판매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세입예산은 고려되지 않았다.

조달청이 보유 중인 비축물자 중 희소금속과 관련하여, 희소금속의 유상 이관을 진행 중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희소금속 유상 이관 대금이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유상 이관에 따른 차익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될 예정이므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해당 차익을 추계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출자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의 출자금 예산 중 89억 6,600만원이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중 코발트금속 126톤의 유상 이관 대금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경우 코발트금속에 대해서는 유상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2)</sup>.

그런데 2023년 예산안 기준 코발트금속의 유상 이관 단가는 약 7,116만원<sup>3)</sup>이므로 출자금 범위 내에서 코발트금속을 전량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구매 당시 원가 4,605만원에 비해 톤당 최대 2,511만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총 차익이 최대 31.6억<sup>4)</sup>(=톤당 최대 차익 2,511만원 × 최대 판매 규모 126톤)까지 발생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실적만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추계의 정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한편 코발트 판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축물자사업수입 과목이 속한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세입도 그만큼 증가하는데, 이를 자본계정으로 전출 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운용 폭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2) 조달청이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보유 중인 비축물자에는 희소금속 9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전 관리 공동기준(2020. 6.)에 따라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광물자원공사)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조 2,639억원만큼 초과하고 순자산이 △2조 2,18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단 자체 재원으로 희소금속을 유상 이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해당 수치는 2021. 9. 30. 기준 국제평가금액이며, 향후 실제 유상 이관 단가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협의를 통해 결정

4) 코발트 판매에 따른 최대 차익(31.6억) = 코발트 최대 판매 규모(126톤) × 톤당 최대 차익(2,511만원)

## 1-2. 당초 예산편성 목적인 요소수 구매 외 사용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 가. 현황

조달청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회전자금을 보유 중이다.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내에 마련된 회전자금으로 전출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비철금속의 안전재고 확보를 위하여 500억원만큼 전출될 예정이다.

[2023년도 회전자금 전출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회전자금 전출(자본) | -          | -                  | -      | 50,000         | 50,000  | 순증      |
| 일반회계 전출(자본) | 70,000     | 60,572             | 61,597 | 47,497         | △14,100 | △22.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조달청

2022년 8월말 기준 회전자금의 규모는 1조 4,561억원으로, 이 중 1,051억원이 수요물자계정으로 운영되고 1조 3,510억원이 비축물자계정으로 운영된다. 한편, 회전자금 시재금 중 479억원은 요소수 등 긴급 공적물량 구매 및 지원 목적으로 증액되었으나 2022년 10월 현재까지도 미운용 상태에 있다.

[조달청 회전자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금액                           |        |
|------|---------|------------------------------|--------|
| 수요물자 |         | 1,051                        |        |
| 비축물자 | 재고금액    | 비철금속                         | 10,493 |
|      |         | 희소금속                         | 723    |
|      |         | 활성탄                          | 5      |
|      |         | 마스크                          | 18     |
|      |         | 재고금액 소계                      | 11,239 |
|      | 기타      | 외상매출금                        | 152    |
|      |         | 선물자금                         | 403    |
|      |         | 기타미수금 등                      | 168    |
|      |         | 시재금<br>(요소수 관련 증액분 479억원 포함) | 1,548  |
|      | 비축물자 소계 |                              | 13,510 |
| 합 계  |         | 14,561                       |        |

주: 2022년 8월 말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2022년 본예산에서 긴급수급조절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요소 및 요소수 구매예산 381억원 중 「비축대상물자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활용될 구체적 계획이 없는 19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비축물자계정으로 운용 중인 회전자금은 2021년 대비 481억원 증액<sup>1)</sup> 되었는데, 증액 취지는 2021년 10월부터 요소 수입 급감으로 발생한 요소수 생산 차질 문제 해소를 위한 요소 및 요소수 긴급 정부수요 물량 공급과(381억원), 요소 및 요소수 외 긴급수급조절물자가 추가되는 경우 긴급 공적 구매(100억원)였다.

1) 2022년 본예산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구매지원(1237-435) 사업의 기타전출금(610-05)으로 편성 후 회전자금으로 전출하였다.

[2022년 회전자금 증액분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 금액     |
|-------------|-----------------------------|--------|
| 요소 및 요소수    | 요소 공적 구매 후 염가 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 | 23,435 |
|             | 요소수 공적 구매 후 방출에 따른 손실금 보전   | 226    |
|             | 요소 및 요소수 구매 지원을 위한 제경비      | 14,405 |
|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 요소수 외 긴급수급조절물자 추가 시 긴급 공적구매 | 10,000 |
| 합 계         |                             | 48,066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후 조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 관련 자금 381억원 중 2억원을 차량용 요소수를 구매하는 계약에 활용하였으며, 남은 자금 약 379억원은 별도 집행 없이 시재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한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22년 8월말 기준 요소수 가격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 구매 목적의 운용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요소수 사태 이후 요소수 가격 추이]

(단위: 원/리터)

| 2021년 | 11월<br>2주 | 11월<br>3주 | 11월<br>4주 | 12월<br>1주 | 12월<br>2주 | 12월<br>3주 | 12월<br>4주 | 12월<br>5주 |
|-------|-----------|-----------|-----------|-----------|-----------|-----------|-----------|-----------|
| 평균 단가 | 2,175     | 2,539     | 2,496     | 2,401     | 2,276     | 2,076     | 1,993     | 1,885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평균 단가 | 1,905 | 1,891 | 1,770 | 1,800 | 1,783 | 1,751 | 1,749 | 1,731 |

자료: 환경부

그런데 조달청은 요소 및 요소수 관련 목적으로 증액된 자금 381억원 중 차량용 요소수 구매 계약에 활용된 2억원을 제외한 379억원에 대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120억원), 차량용 요소수(60억원), 염화칼슘(20억원) 등의 비축으로 약 200억원, 비축물량 확대 및 추가 비축 품목 발굴로 약 179억원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2022. 7. 1.)하였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2), 동법 시행령 제3조 본문3) 및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sup>4)</sup>에 따라 지정된 긴급수급조절 물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2022년 10월 현재 법령의 규정 및 고시 등에 따라 긴급 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물자는 마스크, 요소 및 요소수, 활성탄뿐이며, 조달청이 구매 계획을 수립한 염화칼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축물량 확대 및 추가 비축 품목 발굴(179억원) 등의 경우 예산안 편성 이후 2022년 10월 현재까지도 비축물량 확대 및 추가 비축 품목 발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요소 및 요소수 구매예산 381억원 중 긴급수급조절물자가 아닌 염화칼슘 구매에 활용될 예정이거나 구체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금액(총 19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 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4)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에서는 비축물자의 범위를 알루미늄류,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 방산물자용 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가. 현 황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은 경쟁력과 실무역량을 갖춘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양성과정을 수료한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sup>1)</sup>의 내내역사업이다.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의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정부조달 국제협력 구축                | 2,632      | 3,141              | 2,941 | 2,614          | △327 | △12.5   |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1,861      | 2,423              | 2,359 | 1,899          | △460 | △19.5   |
|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 9          | 217                | 217   | 217            | 0    | 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19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짧은 교육 기간(1주), 이론 위주 교육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이 요구하는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희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조달특별회계 1233-331

를 개최 후,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시간을 늘리고 이론교육과 별개로 모의훈련을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2년 예산은 2021년 예산(2,000만원) 대비 약 985% 증가한 2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1년 대비 2022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개편 내용]

| 구분     | 2019년~2021년 | 2022년~           |
|--------|-------------|------------------|
| 교육시간   | 1주(29.5시간)  | 4주(120시간)        |
| 교육방식   | 비대면         | 대면(3주) + 비대면(1주) |
| 교육내용   | 이론 중심       | 이론 및 모의훈련        |
| 교육인원   | 40명         | 60명              |
| 교육생 모집 | 34개 대학      | 전국대학(382개)       |
| 교육대상   | 재학생 위주      |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자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조달청은 2021년까지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교육과정 개편 및 예산 증액 등을 거치면서 2022년부터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최근 4년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의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 |     | 2020 |     | 2021 |     | 2022.8월말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일반수용비 | 5    | 17  | 5    | 10  | 5    | 9   |          |     |
| 임차비   | 11   |     | 11   |     | 11   |     |          |     |
| 국내여비  | 1    | 1   | 1    | 2   | 1    |     | 1        | 1   |
| 일반용역비 |      |     |      |     |      |     | 213      | 132 |
| 사업추진비 | 3    | 1   | 3    |     | 3    |     | 3        | 3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교육과정 개편 및 예산액 대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 수가 목표 대비 미달되었으므로, 조달청은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채용 상담회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진행되었는데, 교육과정 개편 및 예산 증액 이전 3년간은 교육신청자 수, 교육수료자 수, 채용인원 수, 참여기업 수 등 전반적인 성과가 저조하였다. 2022년의 경우 이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참여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전년 대비 채용인원(3명→14명), 교육신청자(41명→160명), 참여기업 수(11개사→26개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의 경우 사업 계획 당시 설정했던 목표치(30명)의 절반 이하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sup>2)</sup>.

[최근 4년간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 양성·채용 상담회 실적]

(단위: 원, 명, 개월)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10.14 |
|------------------|---------|---------|---------|------------|
| 예산액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억 1,700만원 |
| 교육신청자            | 48명     | 55명     | 41명     | 160명       |
| 교육수료자            | 45명     | 49명     | 40명     | 57명        |
| 채용인원             | 8명      | 4명      | 3명      | 14명        |
| 참여기업 수           | 18개사    | 14개사    | 11개사    | 26개사       |
| 채용인원의<br>평균 근무월수 | 8.87개월  | 5.75개월  | 8.3개월   | -          |

주: 2022년은 교육과정이 8.19(금)에 종료되어 채용인원의 평균 근무월수가 계산되지 않았음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2022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위탁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서는 교육생 편성 한도를 60명으로, 채용목표를 3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달청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교육 커리큘럼, 채용상담회,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교육 커리큘럼의 경우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방식 및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으나 교육 이후 채용상담회 및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채용상담회에서 취업희망자와 채용희망기업이 매칭되고 사후관리 과정에서 추가 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청이 설정한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채용상담회 및 사후관리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조달청은 매년 소송 패소에 대비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배상금을 기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sup>1)</sup>에 편성하고 있다. 2023년도 배상금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배상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기관운영 기본경비   | 6,797      | 7,505              | 7,500 | 7,629          | 129 | 1.7     |
| 배상금(310-02) | 130        | 40                 | 40    | 50             | 10  | 25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256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871건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75건에 대해 패소하여 총 4억 2,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편성된 배상금 예산액은 총 1억 5,000만원에 불과하여, 차액 2억 7,6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집행하였다.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진행한 소송 및 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8. |
|--------------|--------|---------|--------|--------|---------|
| 소송제기 건수      | 318    | 301     | 249    | 243    | 145     |
| 확정판결 건수(A)   | 307    | 274     | 173    | 96     | 21      |
| 패소 건수(B)     | 68     | 64      | 24     | 17     | 2       |
| 전부 패소        | 46     | 42      | 16     | 13     | 0       |
| 일부 패소        | 22     | 22      | 8      | 4      | 2       |
| 패소 비율(B/A)   | 22.1   | 23.4    | 13.9   | 17.7   | 9.5     |
| 소송가액(C)      | 99,979 | 100,688 | 54,747 | 38,650 | 1,405   |
| 패소 소송가액(D)   | 31,776 | 32,094  | 21,349 | 15,320 | 194     |
| 패소금액 비율(D/C) | 31.8   | 31.9    | 39.0   | 39.6   | 13.8    |
| 배상금 지급액(E)   | 64     | 57      | 128    | 129    | 48      |
| 배상금 예산액(F)   | 0      | 30      | 40     | 40     | 40      |
| 전용 금액(E-F)   | 64     | 27      | 88     | 89     | 8       |

주: 소송접수일 기준  
자료: 조달청

## 나. 분석의견

조달청은 배상금 예산을 연례적으로 전용을 통해 증액 집행하고 있는데, 배상금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최근 5년간 배상금 예산 집행 및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배상금 예산액의 규모가 과소편성되어 있어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의 부족분을 전용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에도 8월 말 기준 이미 배상금 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으며, 9월 이후 추가 배상금 지급 소요가 발생할 경우 2022년 전용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9~2022.8월말 기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에서                     |                         | 금액                     | ~으로                          |                 | 전용 사유           |                         |                 |                                    |
|------|-------------------------|-------------------------|------------------------|------------------------------|-----------------|-----------------|-------------------------|-----------------|------------------------------------|
|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 세부사업명                        | 목-세목            |                 |                         |                 |                                    |
| 2019 | 기관운영 인건비<br>(7101-101)  | 110-01<br>(보수)          | 4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310-02<br>(배상금) | 지연손해금<br>부족액 총당 |                         |                 |                                    |
|      |                         |                         | 11                     | 지방조달행정<br>기본경비<br>(7111-271) |                 | 소송비용<br>부족액 총당  |                         |                 |                                    |
|      |                         |                         | 4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소송비용<br>부족액 총당  |                         |                 |                                    |
|      |                         |                         | 2                      | 지방조달행정<br>기본경비<br>(7111-271) |                 | 소송비용<br>부족액 총당  |                         |                 |                                    |
|      |                         |                         | 6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배상금 부족액         |                         |                 |                                    |
| 2020 |                         |                         | 기관운영 인건비<br>(7101-101) | 110-01<br>(보수)               |                 | 88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310-02<br>(배상금) | 소송패소에<br>따른 배상금<br>(지연손해금 등)<br>총당 |
|      |                         |                         |                        |                              |                 | 2021            | 4                       |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9    |                         |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소송 배상금<br>부족금 총당                   |
| 44   |                         |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소송 배상금<br>부족금 총당                   |
| 9    |                         |                         |                        |                              |                 |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소송 배상금<br>부족금 총당                   |
| 10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소송 배상금<br>부족금 총당        |                        |                              |                 |                 |                         |                 |                                    |
| 13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소송 배상금<br>부족금 총당        |                        |                              |                 |                 |                         |                 |                                    |
| 2022 | 3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 소송비용<br>부족액 총당  |                 |                         |                 |                                    |
|      | 5                       | 기관운영 기본경비<br>(7111-251) |                        |                              | 소송비용<br>부족액 총당  |                 |                         |                 |                                    |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예산이 연례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 취지와 상이한 내용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배상금 예산액 충당을 위한 전용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추후 연내 예상치 못한 사유로 기관운영 인건비의 추가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달청은 배상금 예산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전용 등을 통해 배상금 예산액을 증액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조달청에서 진행한 소송 및 배상금 지급 현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건의 비중을 살펴보면, 소송제기 건수 및 확정판결 건수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건이 매년 약 35%~4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지급한 배상금 예산의 약 57% 가량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조달청 소송 및 배상금 지급 현황 중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건의 비중]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8. |
|-----------------|--------|--------|--------|--------|---------|
| 소송제기 건수         | 318    | 301    | 249    | 243    | 145     |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건수  | 131    | 114    | 89     | 102    | 50      |
| (비중)            | (41.2) | (37.9) | (35.7) | (42.0) | (34.5)  |
| 확정판결 건수         | 307    | 274    | 173    | 96     | 21      |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건수  | 130    | 105    | 60     | 37     | 8       |
| (비중)            | (42.3) | (38.3) | (34.7) | (38.5) | (38.1)  |
| 패소 건수           | 68     | 64     | 24     | 17     | 6       |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건수  | 24     | 24     | 4      | 4      | 3       |
| (비중)            | (35.3) | (37.5) | (16.7) | (23.5) | (50.0)  |
| 배상금 지급액         | 64     | 57     | 128    | 129    | 48      |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지급액 | 40     | 28.4   | 63.4   | 76     | 35      |
| (비중)            | (61.5) | (49.9) | (49.5) | (58.9) | (72.9)  |

주: 소송접수일 기준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과거 패소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으로 위법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 등의 손실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통계청



## 1

## 현황

통계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통계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4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억 4,600만원(27.4%) 증가하였다.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4,908      | 3,454              | 3,454 | 4,400          | 946 | 27.4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937억 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8억 8,100만원(3.7%) 증가하였다.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 | 394,358    | 379,823            | 377,832 | 393,704        | 13,881 | 3.7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통계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통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과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분류 제·개정예산이 반영되었고(2022년 25억 1,000만원 → 2023년 43억 100만원), ② 시의성 있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비대면조사 운영 사업 예산(2022년 12억 6,700만원 → 2023년 18억 1,700만원), ③ 통계 생산·분석·서비스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및 원사이트 토털 통계정보서비스를 위한 통계정보플랫폼 통합 ISP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2022년 1억 5,000만원 → 2023년 14억 4,200만원), ④ 차기 총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2022년 60억 9,400만원 → 2023년 114억 5,000만원).

2023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이 저조하므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 면제 정책의 중단을 검토하는 한편 실비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이용료 부과 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데이터의 경우 구매 금액에 비하여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통계청은 향후 민간데이터 구매 과정에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우선 구매하는 한편 민간데이터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비롯한 민간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수입 대체경비를 여러 차례 과소 계상하였는데, 2023년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 결과와 각 부처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고려할 때 2023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입 대체경비 예산도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가통계정책추진, 총조사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통계조사지원 사업 등이 있다.

①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은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보건분류를 제·개정하고 아태 지역의 범좌통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②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다음 주기 총조사를 위한 차세대 Census 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고, ③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사업은 통계생산·분석·서비스 전 단계를 망라하는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및 웹사이트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었다. ④ 통계조사지원 사업은 기존에 답례품이 없었던 농림어업조사 등 통계조사 4종에 대한 조사답례품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통계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사업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 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일반회계<br>(4개) | 국가통계정책추진            | 6,416              | 6,416  | 8,532          | 2,116 | 33.0    |
|              |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6,094              | 6,094  | 11,450         | 5,356 | 87.9    |
|              |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정보화) | 4,355              | 4,355  | 5,522          | 1,167 | 26.8    |
|              | 통계조사지원              | 22,241             | 21,466 | 25,998         | 3,757 | 16.9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통계청

## 가. 현황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의 지역에 통계데이터의 개방·활용 확산 플랫폼인 '통계데이터센터(SDC)'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자료를 대폭 개방하고 부가가치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sup>1)</sup>의 내역사업이다.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11.0%) 증액된 3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통계데이터 분석 및<br>활용지원(정보화) | 9,295      | 10,977             | 10,977 | 11,920         | 943 | 8.6     |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 2,531      | 2,996              | 2,996  | 3,326          | 330 | 11.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은 지역거점센터 추가 구축, 온라인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상반기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이용자수(사람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85.7% 증가하였고, 이용건수(과제 기준)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64.6%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건수(승인 기준)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29.1%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2032-308

[연도별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단위: 건, %)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증가율<br>{(B-A)/A} |        |
|------|-------|-------|-------|-------|--------|------------------|--------|
|      |       |       |       |       | 상반기(A) |                  | 상반기(B) |
| 이용자수 | 사람 기준 | 522   | 750   | 1,004 | 294    | 1,134            | 285.7  |
|      | 일 기준  | 1,367 | 1,630 | 2,333 | 882    | 1,578            | 78.9   |
| 이용건수 | 승인 기준 | 382   | 753   | 1,123 | 458    | 990              | 116.2  |
|      | 온라인   | 30    | 148   | 251   | 103    | 442              | 329.1  |
|      | 과제 기준 | 235   | 324   | 433   | 192    | 700              | 264.6  |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행정자료의 경우 12종(2019년)→14종(2020년)→15종(2021년~2023년)으로, 민간 데이터의 경우 26종(2019년)→33종(2020년)→35종(2021년~2022년)→37종(2023년)으로 데이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 및 민간자료 데이터 목록]

| 구분                | 이용 가능한 데이터 목록(2022. 9. 30. 기준)  |   |  |  |
|-------------------|---|---|--|--|
| 행정<br>자료<br>(15종) | · 기업통계등록부DB<br>(사업등록번호 기준)<br>· 사업장 기초DB<br>(법인)<br>· 인구가구통계등록부<br>(인구)<br>· 농업DB                       | · 기업통계등록부DB<br>(대표자 기준)<br>· 사업장 기초DB<br>(4대보험)<br>· 인구가구통계등록부<br>(가구)<br>· 임업DB                        | · 기업통계등록부DB분기<br>(사업등록번호 기준)<br>· 종사자·기업체<br>연계 DB<br>· 주택통계등록부<br>· 어업DB            | · 기업통계등록부DB분기<br>(대표자 기준)<br>· 인구동태코호트DB<br>· 아동가구통계등록부                                |
| 민간<br>자료<br>(35종) | · 성·연령별 유동인구<br>· 성·연령별 주거인구<br><br>· 가구소득  | · 시간대별 유동인구<br>· 성·연령별 직장인구<br><br>· 성·연령별 카드매출1  | · 요일별 유동인구<br>·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br><br>· 업종별 카드매출                                       | · 성·연령별 유입인구<br>· 코로나19 방문인구정보<br>(유입지null)<br>· 성·연령별 카드매출2<br>(국내)<br>· 신용통계정보(카드소비) |
|                   | · 성·연령별 카드매출2<br>(해외)<br>· 인구가동정보(전입)<br>· 영업 중 업소<br><br>· 표준공시지가<br><br>· 기초정보<br>인구집중유발시설<br>· 법정동코드 | · 신용통계정보(대출)<br><br>· 인구가동정보(전출)<br>· 온라인가격 정보<br><br>· 주택<br>(단독/다세대/기타)<br>· 도로별 차량통행량<br><br>· 소지역정보 | · 인구가동정보(통근)<br>· 모바일상품권<br>거래 정보<br>· 공동주택정보<br><br>· 시·군·구별<br>차량등록대수<br>· SNS 데이터 | · 1000대 상권정보<br>· 구매상품 정보<br>(오프라인)<br>· 건축물정보<br><br>· 행정동코드                          |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이 저조하므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 면제 정책의 중단을 검토하는 한편 실비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이용료 부과 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계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5항2)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 부과 체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방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 또는 할인된다. 온라인 이용의 경우 이용자 신청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를 별도로 작업하여 제공하므로, 온라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서비스 이용료는 작업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면제 및 할인은 없다.

### 2)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 ~ 2. (생략)

「통계법 시행령」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료 부과 기준]

| 이용 방식 | 이용료 (만원)  | 면제 및 할인 |  |
|-------|---|---------|--|
| 오프라인  | 5(1일)<br>22.5(1주)<br>42.5(2주)<br>60(3주)<br>75(4주) | 면제      | 정부기관<br>통계자료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br>통계데이터센터 설치 지원 기관<br>통계청장이 비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       |   | 할인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 설치 지원기관(90% 할인)<br>대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석사) (70% 할인)                           |
| 온라인   | 9,381(1일)   | 없음      |  |

자료: 통계청

그런데 이와 같이 마련된 서비스 이용료 부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액 규모에 비해 매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년 4월부터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2020. 12.)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증가가 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증가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액 및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7월 말 |
|--------|-------|-------|-------|------------|
| 예산 집행액 | 4,593 | 3,007 | 2,531 | 1,104      |
| 수익     | 10    | 18    | 11    | 0.3        |

자료: 통계청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장기간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세입예산<sup>3)</sup>의 추계 과정에서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따른 수입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

3)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에 따른 수입은 기타잡수입(13관) (코드: 일반회계 69-691) 과목에 계상되어야 한다.

법령의 내용과 통계청이 표방한 실비부담원칙 등을 고려하면, 통계청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이용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별도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실적 증대와 센터 이용 수익 증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이용료 부과 체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도 있다.

**둘째, 통계데이터센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데이터의 경우 구매 금액에 비하여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통계청은 향후 민간데이터 구매 과정에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우선 구매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비롯한 민간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행정자료의 경우 구매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민간데이터 중 웹을 통해 수집하거나 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구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상으로 구매하는 일부 민간데이터의 경우 2022년 기준 구매 금액에 비하여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매상품 정보’ 데이터의 경우 구매 금액(1억 9,470만원)에 비해 2021년 이용 실적(13건) 및 2022년 8월 말까지의 이용 실적(10건)이 가장 저조하였다.

[2022년 8월 말 기준 민간데이터 구매금액 및 제공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 데이터명          | 출처  | 구매<br>금액<br>(1년<br>단위) | 2022년 월별 제공실적 |    |    |    |    |    |    |    |    |    | '21년<br>실적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계  |    |            |
| 통신 | 성·연령별<br>유동인구 | SKT | 220                    | 0             | 0  | 2  | 2  | 1  | 8  | 14 | 4  | 31 | 42 |            |
|    | 시간대별<br>유동인구  |     |                        | 0             | 0  | 2  | 1  | 3  | 7  | 8  | 2  | 23 | 28 |            |
|    | 요일별<br>유동인구   |     |                        | 0             | 0  | 1  | 0  | 1  | 3  | 6  | 0  | 11 | 22 |            |
|    | 성·연령별<br>주거인구 |     |                        | 0             | 0  | 0  | 1  | 3  | 8  | 11 | 0  | 23 | 12 |            |
|    | 성·연령별<br>직장인구 |     |                        | 0             | 0  | 0  | 1  | 3  | 4  | 8  | 0  | 16 | 12 |            |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 데이터명                | 출처        | 구매<br>금액<br>(1년<br>단위) | 2022년 월별 제공실적 |    |    |    |    |    |     |    |     |     | '21년<br>실적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계   |     |            |
| 카드       | 성연령별<br>카드매출2(국내)   | BC        | 70                     | 1             | 0  | 1  | 1  | 4  | 4  | 16  | 5  | 32  | 44  |            |
|          | 성연령별<br>카드매출2(해외)   |           |                        | 0             | 0  | 0  | 0  | 0  | 1  | 5   | 0  | 6   | 4   |            |
| 신용<br>정보 | 신용통계정보<br>(대출 및 연체) | KCB       | 51                     | 1             | 0  | 0  | 1  | 1  | 3  | 5   | 1  | 12  | 11  |            |
|          | 신용통계정보<br>(소득)      |           |                        | 1             | 0  | 0  | 3  | 1  | 9  | 9   | 43 | 66  | 25  |            |
|          | 신용통계정보<br>(카드소비)    |           |                        | 1             | 0  | 0  | 2  | 1  | 6  | 10  | 1  | 21  | 24  |            |
|          | 인구이동정보<br>(전입)      |           | 37                     | 0             | 0  | 0  | 2  | 2  | 5  | 7   | 2  | 18  | 9   |            |
|          | 인구이동정보<br>(전출)      |           |                        | 0             | 0  | 0  | 2  | 2  | 5  | 5   | 2  | 16  | 9   |            |
|          | 인구이동정보<br>(통근)      |           |                        | 0             | 0  | 0  | 2  | 1  | 5  | 6   | 1  | 15  | 10  |            |
| 유통       | 구매상품 정보             | 롯데<br>멤버스 | 195                    | 0             | 0  | 0  | 0  | 0  | 4  | 5   | 1  | 10  | 13  |            |
| 총계       |                     |           | 573                    | 4             | 0  | 6  | 18 | 23 | 72 | 115 | 62 | 300 | 265 |            |

자료: 통계청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저조한 제공 실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제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계속 구매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데이터 구매 금액 대비 이용 실적이 데이터마다 상이할 수 있음에도 활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민간데이터 제공 범위의 양적 확대만을 도모하는 경우, 데이터 구매에 투입된 예산액 대비 낮은 성과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향후 민간데이터 구매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의 이용 실적을 비롯한 잠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우선 구매하는 한편, 데이터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민간데이터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비롯한 민간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통계청은 자체 통계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대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를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14관)<sup>1)</sup>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액된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1<br>결산 | 2022 <sup>1)</sup> |       | 2023<br>예산안(B)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 B-A  | (B-A)/A |
| 기타잡수입<br>(수입대체경비, 14관) | 2,983      | 1,866              | 1,866 | 1,469          | △397 | △21.3   |
| 통계생산대행<br>수입대체경비       | 1,860      | 805                | 805   | 781            | △24  | △3.0    |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통계청

한편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53조<sup>2)</sup>에 따라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되는 경비 등에 초과지출할 수 있고, 수입대체경비를 초과지출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sup>3)</sup>에 따라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69-691

2)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 나. 분석의견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를 여러 차례 과소 계상하였는데, 2023년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 결과와 각 부처의 2023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고려할 때 2023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예산도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예·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최근 5년 중 4년 동안 결산 당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였다.

[최근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예산(A)   | 900   | 400   | 900   | 2,248 | 808   |
| 결산(B)   | 1,012 | 3,095 | 1,441 | 1,674 | 1,860 |
| 차이(B-A) | 112   | 2,695 | 541   | △574  | 1,052 |

주: 2020년의 경우 국회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예산액이 조정되었음(9억원 → 22억 4,800만원)

자료: 통계청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인데, 예산을 초과하는 수입의 지출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이나 규모 관련 국회의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경비 예산액을 실제 수입 예상에 비해 과소 계상하는 경우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재량지출의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중 예산액 초과분에 대한 재량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지출 연도 | 지출 금액 | 재량지출 내역   |
|-------|-------|---|
| 2017  | 112   | 종자업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시험조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
| 2018  | 2,695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산후조리실태조사,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이민자체류실태 및 외국인고용조사 |
| 2019  | 541   | 인권실태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 이민자체류실태 및 외국인고용조사, 가족실태조사 시험조사                          |
| 2020  | -     | -   |
| 2021  | 1,052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산후조리실태조사, 양성평등실태조사, 국제성인역량조사 예비조사                         |

주: 국제성인역량조사 예비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조사일정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  
자료: 통계청

이에 국회는 2017회계연도 및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통계청에 대하여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를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시하여 통계생산대행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수입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수입대체경비 수입의 연례적 과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 결과와 각 부처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의 통계생산대행 예산액 합은 24억 4,500만원으로 2023년 통계청의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7억 8,100만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2023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또한 실제 수납액에 비해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에서 제출된 이후 실제 예산안에 반영된 통계 현황]  
(단위: 백만원)

| 제출기관       | 통계명             | 수요 제출 시기 | 소요예산  |
|------------|-----------------|----------|-------|
|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2022. 2. | 240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활용 통계조사 | 2022. 2. | 500   |
| 보건복지부      | 치매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 2022. 8. | 1,605 |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022. 8. | 100   |

주: 2022. 9. 23. 기준  
자료: 통계청

특히 보건복지부의 ‘치매실태조사 및 역학조사’의 경우 2022. 5. 3.부터 약 7개월간 사전 연구(1억원)가 진행 중인데, 해당 연구는 향후 치매 실태조사(2023년) 및 치매 역학조사(2024년)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전 연구 종료 이후 2023년에 치매 실태조사가 시행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통계조사’의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계속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는 등(승인번호 179001, 승인일자 2022. 9. 8.) 2023년에 통계조사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실시 여부가 연말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수요조사 결과를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2023년에 통계생산대행이 실시되는 경우 최대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재량지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은 통계생산대행 수요조사 및 각 부처의 관련 예산 편성액 규모를 고려하여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14관) 및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를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089-1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